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2012. 10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머 리 말

보험시장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관계로 자칫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전개되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진입과 퇴출, 상품가격,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는 정부의 핵심규제으로써 보험시장의 경쟁 및 효율성, 소비자후생에 직결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보험산업은 1997년 경제적 수요조사에 의해 인가여부를 결정하던 ENT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기준도 마련되어 경쟁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에서는 비경쟁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등 시장의 문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보험시장에서 적시적인 진입 및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후생이 하락하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연구를 통한 관련 법규 등의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현황을 시장구조, 행동, 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주요국 규제와 비교한 결과, 진입형태 및 요건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발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2년 9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 목차

요 약 / 1

I. 서론 / 13

1. 연구의 목적 / 13
2. 선행연구 / 14
3. 연구범위 및 방법 / 16

II. 보험산업 진입 · 퇴출규제의 의의와 현황 / 19

1. 보험산업의 진입 · 퇴출규제 의의 / 19
2. 보험산업의 진입 · 퇴출 현황 / 22
3. 보험시장 현황: 구조, 행동, 성과 / 30
4. 소결 / 47

III.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 · 퇴출 주요 규제 / 50

1. 진입규제 주요 내용 / 50
2. 퇴출규제 주요 내용 / 59

IV. 주요국의 진입 · 퇴출 주요 규제 / 69

1. 미국(뉴욕주) / 69
2. 일본 / 92
3. 독일 / 107

V. 국내 진입 · 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 / 125

1. 진입 · 퇴출규제의 개선 기본원칙 / 125
2. 진입규제의 개선 시사점 / 135
3. 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 / 148

VI. 결 론 / 153

| 참고문헌 | / 155

■ 목차

| 부록 | / 159

부록 1.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변천 추이 / 159

부록 2. IAIS 보험핵심원칙(진입 및 퇴출) / 161

■ 표 차례

- 〈표 II-1〉 외국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 23
- 〈표 II-2〉 합작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 23
- 〈표 II-3〉 국내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 24
- 〈표 II-4〉 퇴출 생명보험회사 현황 / 25
- 〈표 II-5〉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 26
- 〈표 II-6〉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현황 / 27
- 〈표 II-7〉 퇴출 손해보험회사 현황 / 28
- 〈표 II-8〉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 30
- 〈표 II-9〉 시장구조 변화: 생명보험 / 33
- 〈표 II-10〉 생명보험의 점유비 및 HHI지수 변화 / 34
- 〈표 II-11〉 생명보험 종목별 집중도 추이 / 35
- 〈표 II-12〉 손해보험의 점유비 및 HHI지수 변화 / 37
- 〈표 II-13〉 온라인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 38
- 〈표 II-14〉 손해보험 종목별 집중도 추이 / 39
- 〈표 II-15〉 기초 통계량 / 40
- 〈표 II-16〉 생명보험의 Panzar-Rosse H 지수 추정 결과 / 42
- 〈표 II-17〉 ROA 검증 결과 / 43
- 〈표 II-18〉 시장성과 지표의 변화: 생명보험 / 45
- 〈표 III-1〉 보험종목별 요구 자본금 / 55
- 〈표 III-2〉 보험회사 퇴출의 구분 / 60
- 〈표 III-3〉 보험회사의 해산과 합병 절차 / 64
- 〈표 III-4〉 보험계약 이전 절차 / 65
- 〈표 III-5〉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단계 및 내용 / 67
- 〈표 IV-1〉 미국 보험회사 수 및 보험료 / 69
- 〈표 IV-2〉 미국 생명보험산업 집중도 / 70
- 〈표 IV-3〉 사업참여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요건 / 76
- 〈표 IV-4〉 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 80

■ 표 차례

- 〈표 IV-5〉 생명보험회사(상호회사)의 초기잉여금 및 최저잉여금 요건 / 80
- 〈표 IV-6〉 손해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 82
- 〈표 IV-7〉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의 인가 요건 / 83
- 〈표 IV-8〉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의 잉여금 요건 / 84
- 〈표 IV-9〉 미국 보험회사의 갱생·청산 원인 / 86
- 〈표 IV-10〉 미국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 87
- 〈표 IV-11〉 뉴욕주 보험계약자보호제도 / 91
- 〈표 IV-12〉 일본 보험산업의 집중도 추이 / 92
- 〈표 IV-1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현황 / 93
- 〈표 IV-14〉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현황 / 94
- 〈표 IV-15〉 일본 보험회사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 99
- 〈표 IV-16〉 일본의 적기시정조치 내용 / 103
- 〈표 IV-17〉 일본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조건 변경 현황 / 106
- 〈표 IV-18〉 일본 보험계약자보호제도 / 107
- 〈표 IV-19〉 독일 보험회사 현황 / 108
- 〈표 IV-20〉 독일 보험산업의 집중도 추이 / 109
- 〈표 IV-21〉 독일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별 현황 / 112
- 〈표 IV-22〉 EU 보험종목별 최저보증기금 / 117
- 〈표 IV-23〉 독일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 123
- 〈표 IV-24〉 독일 보험계약자보증제도 / 124
- 〈표 V-1〉 기업활동용이도 순위 국제 비교 / 129
- 〈표 V-2〉 2010년 보험업 영위 현황 / 132
- 〈표 V-3〉 보험산업 집중도의 주요국과 비교 / 134
- 〈표 V-4〉 외국사 시장점유율 추이 / 136
- 〈표 V-5〉 국내 보험회사 수의 국제 비교 / 137
- 〈표 V-6〉 ICP 4(진입 허가기준)과 국내기준의 비교 / 138
- 〈표 V-7〉 보험업의 구분과 종목구분의 국제 비교 / 140

■ 표 차례

〈표 V-8〉 주요국과 국내의 보험회사 진입 형태 비교 / 141

〈표 V-9〉 진입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 비교 / 144

〈표 V-10〉 주요국의 자본금요건 비교 / 146

〈표 V-11〉 ICP 퇴출규제 기준과 비교 / 149

■ 그림 차례

- 〈그림 II-1〉 보험시장의 구조, 행동, 성과 / 32
- 〈그림 II-2〉 생명보험 상품별 HHI 지수 추이 / 36
- 〈그림 II-3〉 손해보험 상품별 HHI 지수 추이 / 38
- 〈그림 II-4〉 보험회사 그룹별 평균 ROE 비교 / 46
- 〈그림 III-1〉 보험업 허가절차 / 53
- 〈그림 III-2〉 해산, 합병 등의 인가절차 / 62
- 〈그림 IV-1〉 일본 파산보험회사의 처리절차 / 105

A Study on the Entry and Exit in the Korean Insurance Market

This report evaluates entry and exit regulation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and provides reform proposals,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reference. Since entry and exit regulations affect the market structure, market conduct, and market performance of the industry, such regulations play a crucial role in ensuring competition amongst the insurers, improving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thereby, increasing the social welfare.

Despite several deregulation measures, such as elimination of the ENT(Economic Needs Test), introduction of individual insurance -line licensing, and the introduction of exit criteria, entry and exit are rarely observed, while anti-competitive practices are often observed in the Korean insurance market.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entry and exit in the Korean insurance market since 1980s, and analyse the current market in the context of market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While both the life insurance market and the non-life insurance market are moderately concentrated, there exists wide disparities in the profitability across company groups: big,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etc. Also, we compare the regulations on entry and exit of the Korean insurance market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develop the insurance industry, and make the current regulation more compatible to the global standard, we suggest several regulatory reform proposals.

Regarding entry regulations, first, for clarificatory purpose, the types of insurance businesses need to be modified. Second, more types of companies other than stock companies, mutual companies, and foreign insurers, such as captives and small sized companies, should be included. Third, application documents required for license should be simplified. Fourth, the capital requirements for license need to be reduced. Lastly, room for discretionary decisions of regulators should be minimized.

As regards exit regulations, first, the transfer of contracts criteria needs to be clarified. Second, the priorities for disposal of assets should be well defined. Third, the transparency of the exit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요약

I. 서론

-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규제는 보험시장의 유효경쟁 촉진, 소비자후생 제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진입 및 퇴출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 행동, 성과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됨.
 - 1980년대 후반부터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진입으로 많은 부실보험 회사가 발생해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된 바 있음.
 - 그러나 국내보험시장의 감독규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되어 가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음.

- 본 연구는 보험시장이 글로벌 보험규제감독의 틀 하에서 경쟁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국내의 진입 및 퇴출규제를 평가하고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II. 보험산업 진입 · 퇴출규제의 의의와 시장 현황

1. 보험산업의 진입·퇴출규제 의의

- 보험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진입규제는 과도한 진입으로 인해 지나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함.
 - 진입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할 경우 독과점시장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진입이 너무 쉬운 경우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대두됨.

- 퇴출규제의 목적은 경쟁력 없는 시장참여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효율성 저하와 자본배분 비효율을 막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임.
 -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분별한 퇴출 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보험산업의 진입·퇴출 현황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정책 및 감독 변화에 따른 급격한 진입 및 퇴출이 발생함.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사이 외국사 및 지방보험회사를 포함해 많은 수의 회사들의 진입이 허용됨.
 -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IMF 구제금융 시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다수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었음.
 - 이후 생명보험시장으로의 진입은 퇴출되는 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최근 연금 등에 특화한 보험회사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2001년 보험가격자유화에 이어 종목별 납입자본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의 재보험회사와 특화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음.

- 한편 2003년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인하되어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함.

3. 보험시장 현황: 구조, 행동, 성과

가. 시장구조

- 생명보험시장 내에는 FY2011 초 기준으로 23개 회사가 있으며, CR3는 52.3%, FY2010 기준 HHI는 1,186로 나타나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시장 내에는 FY2011 초 기준으로 30개 회사가 있으며, CR4는 약 70%, FY2010 기준 HHI는 1,471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으며 집중정도가 생명보험에 비해 다소 큼.
- 가장 진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2003년 이후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어 FY2010 기준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음.

나. 기업행동

-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정도를 Panzar-Rosse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H 지수가 0.72~0.84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독점적 경쟁 상태라고 판단됨.
- 한편 손해보험시장의 기업행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시장인 것으로,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추정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다. 시장성과

- 진입과 퇴출규제가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회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화된 회사의 행동은 보험시장의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시장진입이 활발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일시에 많은 보험사가 진입하여 무리한 경쟁이 촉발되어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이 악화되고 실효해약률도 높은 수준을 보임.
- 한편 회사그룹별로 수익성(ROE)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에서 대형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신규진입회사 또는 소형보험회사는 목표수익달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퇴출 주요 규제

1. 진입규제 주요 내용

- 보험업은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함. 또한 보험회사의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형태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함.
-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정관,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보험회사의 진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외부 아웃소싱 가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험업 개시를 위해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이 필요하며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할 수 있음.
-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개시할 수 있음.

2. 퇴출규제 주요 내용

- 보험회사의 퇴출은 자발적 퇴출과 비자발적 퇴출로 구분하여 관련된 법규가 적용됨.
- 자발적 퇴출에는 주총결의, 임의합병, 계약이전, 영업양도가 있고, 비자발적 퇴출에는 파산, 허가취소, 법원판결, 계약이전, 강제합병 등이 있음.
- 보험회사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여력과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판단하여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 적기시정조치가 이루어짐.
- 비자발적인 퇴출인 경우에 계약자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및 손해보험의 제3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IV. 주요국의 진입·퇴출 주요 규제

1. 진입규제

■ 보험산업 진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독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진입의 형태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공영보험사(독일)로 되어 있음.

○ 이에 추가하여 부보리스크가 다양화됨에 따라 공제(일본 소액단기보험업), 캡티브, 보험교환소 등의 진입형태를 허용하고 있음.

■ 진입방법은 미국 뉴욕주와 독일은 보험종목별로 진입이 가능하나 일본은 단일업으로만 진입하며, 자본금요건, 대주주적격요건 등이 필요함.

○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공통적으로 요구하나 기초서류는 일본만 요구하고 있음.

〈요약 표 1〉 주요국의 진입규제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	일본
법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상호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상호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상호회사 공영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상호회사
특수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보증 상호교환보험사 공제, 캡티브 보험교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단기보험업 (공제)
종목	• 21개 종목	• 31개 종목	• 25개 종목	• 손해, 생명보험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3년추정재무제표 포함) 종목별 사업방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3년 추정재무제표) 기초서류(사망, 대체형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기초서류 전체 첨부서류 다수
자본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최대 300억 원 상호회사: 주식회사 동일 통신판매 전문회사: 주식, 상호회사의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자본금 250만 달러, 잉여금 425만 달러(전종목) - 손보: 자본금 1,160만 달러, 잉여금 630만 달러(전종목) 상호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자본금 65만 달러, 잉여금 20만 달러 - 손보: 자본금 935만 달러, 잉여금 60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300만 유로 - 손보: 300만 유로 (전종목) 상호회사: 주식회사의 1/4 특수회사: 주식회사의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10억 엔 이상 상호회사: 10억 엔 이상 소액단기보험업: 0.1억 엔

2. 퇴출규제

■ 보험업의 퇴출은 자발적인 퇴출과 비자발적인 퇴출로 구분하며 모두 감독당국의 허가절차를 필요로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구비하고 있음.

- 일본의 비자발적 퇴출인 경우 계약이전시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국내와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해당국가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함.

〈요약 표 2〉 주요국의 퇴출규제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	일본
퇴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 비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 비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 비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 비자발적
적기시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비율 • 50~100%: 경영개선권고 • 0~50%: 경영개선요구 • 0% 미만: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BC 비율 • 150~200%: 자율조치 • 100~150%: 규제조치 • 70~100%: 감독당국통제 • 70% 미만: 강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요구자본량 > 자기자본, 재무개선 계획 제출 • 2단계: 요구자본량 > 최저보증기금, 단기재무계획서 제출 • 3단계: 자기자본 < 최저보증기금 또는 지급여력 부족시, 3개년 간 재무복구 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비율 • 200% 이상: 안정 • 100~200%: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0~100%: 지급능력충실에 관련한 계획 제출 등 • 0% 미만: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 정지
계약자 보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험제도 • 손해보험 제3자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보증기금 • 화재특종기금 • 차량배상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금 • 건강보험계약자 보호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금 •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금

V. 국내 진입·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

1. 진입·퇴출규제의 개선 기본원칙

- IAIS가 제시하는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에 비추어 보험 산업 감독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원칙으로는 ICP 4. Licensing, ICP 5. Suitability of Person, ICP 12. Wind up and Exit from the Market 등이 있음.

■ 상법개정 및 금융정책 등 국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5년부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 상법을 개선, 시행하여 창업용이도가 2008년 세계 110위에서 2011년 24위로 개선함.
-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기존의 “제한적 허용”에서 진입요건에 부합 시 “원칙적 자유로운 허용”으로 전환하며, 진입규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진입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규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아울러 퇴출규제는 부실 금융회사가 발생하는 경우 퇴출요건을 충실히 적용하여 부실규모를 축소할 것임을 밝힘.

■ 보험업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에 대해 감독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며, 이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공제 등 유사보험시장이 공존하고 있음.
-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필요 자본금 규모를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영위가 가능한 다양한 회사형태도 고려되어야 함.

■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에 적절한 기업의 수와 규모를 변화시키고, 보험회사들이 공급하는 상품이 차별성을 갖도록 다양한 가격 및 상품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2. 진입규제의 개선 시사점

-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독점적 경쟁양태가 지속되고 있고, 가격결정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담합행동이 나타남에 따라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편익이 감소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보험종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보험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불필요한 상품과 업의 정의는 삭제하고 개별보험종목을 인가단위로 열거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리스크 전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의 보험회사인 캡티브, 소규모 보험회사 등 다양한 진입을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로써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만을 허용하고 있음.
- 진입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나 유럽처럼 진입허가 제출서류를 사업인가신청서나 정관 등으로 제한하고, 종목별 사업방법서는 제외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자본금요건을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감독체제에 부합하지 못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 및 금융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존재함.
- 허가요건의 객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보험업 진입허가요건의 명확성을 평가하면 자본금요건과 대주주요건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요건과

- 인적·물적 요건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량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재량적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3. 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

- 퇴출규제는 IMF 이후 많은 부실보험회사가 정리되면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어,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보다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이전을 전부 또는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보험회사의 파산처리 시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재산배분 우선순위를 청산규정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에 퇴출과 관련한 규정을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VI. 결론

- 본 연구는 현재의 진입 및 퇴출규제를 시장구조, 기업행동, 시장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주요국의 규제와 비교한 결과, 진입형태 및 요건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개선 시사점을 제시함.
- 향후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보험시장은 무형의 보험상품이 거래되고 수익실현이 장기간 뒤에 확정될 수 있는 시장의 특성상 공급자가 소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생과 사 또는 재산보전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험상품이 무형인 관계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보험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진입과 퇴출, 상품가격,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진입규제는 1962년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할 당시부터 자본금요건 부과와 아울러 사업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보험시장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진입과 퇴출규제도 변화를 같이 해 왔다. 그 중에서 보험시장 진입에 가장 큰 장벽요인이었던 경제적 수요조사에 의해 인가여부를 결정하던 ENT제도가 1997년에 폐지되고,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2000년에는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으로만 진입허가를 내주던 방식에서 종목별 진입허가제도로 완화되었고, 퇴출기준도 마련되어 경쟁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입 및 퇴출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와 행동, 성과도 변화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동차보험시장, 연금보험시장, 법률보험시장 등에서 특화형 보험회사가 나타나고 있고 경쟁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BK퇴직연금보험회사

를 제외한 신규 시장진입은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보험규제감독의 글로벌 틀 하에서 국내의 진입 및 퇴출규제를 평가하고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시장의 경쟁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는 보험가격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핵심규제로써 보험시장의 경쟁, 시장의 효율성, 소비자의 후생에 직결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 잠재 진입자의 시장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비자후생은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진입이 너무나 쉬운 경우에는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실보험회사를 양산해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최근 보험업의 규제감독정책이 진입과 상품가격 등 사전적 규제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재무건전성 확보와 같은 사후적 규제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8,90년대와 달리 재무건전성감독 및 보험소비자보호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의 진입 및 퇴출규제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 사례는 드물며, 시장진입과 퇴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가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어떤 환경일 때 보험시장에 진입하고, 진입한 경우 시장에서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퇴출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용덕·한웅선(2007)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시장 진입에 따른 산업효과(수익, 이익, 비용)를 모수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산출물의 가격이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산

출몰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익과 이익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순재(2011)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해 판자로스모형을 사용하여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진입규제와 가격규제의 완화에 따라 상위사의 시장지배력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개인 자동차보험시장은 경쟁도가 개선되고 있는 독점적 과점시장인 것으로 분석했다. Barros(1995)는 보험가격규제가 있는 동안(1982~1988년)에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포르투갈 자동차보험시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1984년부터 진입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퇴출규제 관련 선행연구로는 다음 두개의 연구가 있다. 김현수(2006)는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퇴출된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출과 기업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산 규모가 클수록 퇴출가능성이 높고, 비자발적으로 퇴출하는 회사는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부실보험회사의 적기퇴출을 위해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여력이 있어야 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기구의 도입,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기개입을 할 수 있는 조기경보제도 도입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Lei and Browne(2008)는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 진입퇴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994년에서 200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시장진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합산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인 것으로 규명했다. 즉 합산비율의 표준편차가 높으면 진입하고자 하는 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은 적고, 합산비율의 평균이 높으면 진입과 퇴출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진입과 퇴출은 보험산업의 투자수익과 양의 관계가 있고 특화정도와 보험금지급 변동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진입 및 가격자유화 전후의 시장의 구조변화(경쟁도)와 기업행동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연구는 시장행위 규제와 재무건전성규제로 이원화하여 감독하려는 새로운 감독체계(twin peak model)에 맞추어 현재의 진입 및 퇴출규제를 분석하여 과거의 감독환경 하에서

마련된 진입과 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국내 보험시장현황을 구조, 행동, 성과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내 및 해외 진입·퇴출규제를 살펴본 후, 향후 감독체계 및 국제적 정합성 확보, 보험산업 발전 측면에서 관련 규제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아울러 연구범위 측면에서는 진입과 퇴출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과 관련 규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은 상품생산의 효율성과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에서 지적¹⁾되어 왔으며 해당 부분의 정책결정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논의는 다른 산업에서의 경쟁의 당위성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정도는 경제주체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성을 가진다.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대표적 요소로는 진입 및 퇴출과 경합성(contestability)이 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상품, 채널, 소비의 네트워크 성격 또한 시장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진입과 퇴출, 특히 진입 및 퇴출규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진입장벽(entry barriers)은 진입의 위협 없이 기존 기업이 높은(supranormal)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Bain 또는 Stigler의 정의와 같이 기존 기업에게는 들지 않으나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은 부담해야 하며 사회적 관점에서

1) 김재홍(2002), pp. 1~40; 김준경 외(2004), pp. 80~84 참조 바란다.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비용을 진입장벽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²⁾ 진입장벽은 크게 구조적 진입장벽(structural barriers)과 행태적 진입장벽 또는 전략적 진입장벽(behavioral barrier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진입과 퇴출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퇴출이 어려울 경우 잠재적 시장참여자는 시장진입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퇴출비용(금전적, 시간적)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규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진입과 퇴출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국내 보험시장은 국내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세계 보험시장 상위 10위권으로 성장하였고 외국사들이 다수 진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내의 보험규제도 글로벌규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IAIS나 OECD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보험규제 기준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 보험시장 규제의 큰 방향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보호하기 위한 재무건전성감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입규제는 사전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해당하고 퇴출규제는 재무건전성 감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진입과 퇴출규제는 상호균형적으로 보아 보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규제의 의의와 시장현황을 분석하였다. 진입 및 퇴출규제가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고, '90년대 이후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진입과 퇴출규제가 보험시장의 구조(structure), 행동(conduct), 성과(performance)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 및 퇴출규제

2) McAfee et al.(2004) 참조 바란다.

주요 내용과 더불어 변천내용 및 그 배경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제4장은 주요국의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내 보험시장과 비교분석을 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주, 일본, 독일의 보험감독법규를 조사, 정리했다. 제5장은 국내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가 효율적이고 건전한 보험시장의 근간이 되기 위한 개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입장과 IAIS의 보험핵심원칙에 따라 국내의 규제를 평가하여 진입 및 퇴출규제의 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기초로 진입과 퇴출규제가 국내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규제 부문별로 개선 시사점을 제언했다. 제6장은 본 연구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했다.

II. 보험산업 진입·퇴출규제의 의의와 현황

1. 보험산업의 진입·퇴출규제 의의

가. 진입규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진입규제(entry regulation)는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이 가하는 제한(사인(私人)의 시장진입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진입규제는 잠재적인 경쟁기업이 시장 내로 진입하려는 경향, 가능성, 속도 등을 제약하는 모든 요인을 지칭하는 진입장벽(entry barrier)³⁾의 하나에 해당한다. 본래 진입규제는 과당경쟁(excess entry excess competition)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과당경쟁은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기업들이 존재해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보험시장의 경우 계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형의 리스크를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약정한 사고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입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시장 내 기업이 진입의 위협 없이 높은 이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장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입장벽은 크게 구조적 진입장벽(structural barriers)과 행태적 진입장벽 또는 전략적 진입장벽

3) 최정표(2003), p. 98.

(behavioral barrier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진입장벽은 시장참여자의 통제 밖에서 생기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법적 진입장벽, 기술적 절대우위 등이 해당된다. 이 중 법적 진입장벽의 예로는 인허가요건⁴⁾, 인허가비용, 규제요건 준수,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차별 등이 있다. 아울러 진입장벽으로써의 자본금요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Bain은 자본금요건을 진입장벽으로 인정하는 반면, Stigler는 진입자가 기존사업자보다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진입장벽이 아니라고 판단한다.⁵⁾

다음으로 행태적 진입장벽은 잠재적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자가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태적 진입장벽은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시장성과를 저해하게 된다.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제품차별, 광고 및 평판, 수직적 합병 및 제약(vertical integration, vertical restriction), 끼워팔기(tie-in sale), 경쟁자의 비용을 인상하는 전략, 폐쇄적 유통구조, 수요자의 전환비용 등이 행태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진입규제의 유형과 방법은 다양하다. 진입규제의 유형을 보면 시장진입을 기업 수로 제한하는 양적규제와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능력이나 경영자의 자질 등을 고려하는 질적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시장진입을 인허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영업규제나 유통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규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입규제의 방법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인 인가제(prior approval),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독관청이 해제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명령적 행위)인 허가제(license), 진입에 대한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

4) 진입비용발생으로 기존 선발기업에 비해 비용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

5) 자본금의 진입장벽 인정요건은 자본공급 비용의 차별 존재, 진입비용이 매출비용 성격인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곤란한 자본시장인 경우, 법령상 규제기준이 매우 높을 때이다. McAfee·Mialon·Williams(2003), p. 4.

도인 등록제(registration)가 있다.⁶⁾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인가제와 허가제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다.⁷⁾

나. 퇴출규제의 의의

보험회사의 퇴출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합병과 인수 등으로 철수하는 자발적 퇴출, 감독당국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이 있다. 비자발적 퇴출은 주로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퇴출 관련 규제는 이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취해야 할 절차와 계약자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시장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보험가격이 상품구매시점보다 훨씬 뒤에 확정되는 특성이 있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사의 퇴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Bain(1956)은 시장의 퇴출규제가 경쟁적 시장의 주요 장애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퇴출이 어려울 경우 경쟁력이 없는 시장참여자의 퇴출을 지연시켜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퇴출에 대한 규제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경우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무분별한 퇴출이 발생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산업에서 퇴출규제가 없는 경우 사후에 확정되는 보험상품의 계약책임 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퇴출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퇴출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입규제처럼 시장에서 퇴출을 할 때에도 감독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하고, 보험회사 파산 이전에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적립제도와 자기자본규제제도(risk based capital)를

6) 김동희(2008), pp. 14~17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7) IAIS가 2006년도에 회원국 26개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2%의 국가가 인가제 또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고, 8%만 등록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AIS(2007), p. 11.

8) 김현수(2006), p. 11.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 보험회사가 생긴 경우 계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로 보험계약 이전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자산배분순서 등을 정하고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규제의 조화에 대해 김헌수(2006)는 진입규제를 줄이고 부실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진입규제는 준칙주의 하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재무건전성규제나 직접적인 감시를 통해 부실보험회사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적기에 시정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보험산업의 진입·퇴출 현황

가. 생명보험시장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보험회사가 시장진입과 급격한 퇴출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시에 다수 보험회사가 진입한 198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과당진입시기로 정의하고, 1991년부터 2005년까지는 구조조정시기, 2006년 이후의 시기는 경쟁시장으로의 성숙기로 정의할 수 있다.

과당진입시기에 있어서 생명보험회사의 진입은 대내외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먼저 대외시장개방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 촉발되었다. 1984년 제3, 4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은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보험시장진출을 요구하여 1986년 한·미 양국의 국내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외국보험회사의 설립 허가 기준 및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설치 허가기준이 제정⁹⁾되었는데 합작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즉 합작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국내기업이 상위 15위 내 대규모기업집단인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

9) 1987년 9월 시장개방 정책추진에 따른 개방 일정이 발표되었다.

며, 16~30위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는 합작사 소유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도록 하였다.¹⁰⁾ 이러한 정책 및 감독의 변화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을 촉진하여 1980년 후반부터 지점, 현지법인, 또는 합작회사 형태로 진입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 이루어졌다. 1987년 미국의 라이나생명, 알리코생명(ALICO)이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계 생명보험회사가 합작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¹⁾

〈표 II-1〉 외국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진입회사명	진입연도	진출형태	비고
라이나	1987	지점	2004 지점에서 국내 현지법인으로 변경
알리코	1987	지점	1997 아메리카생명에 계약이전
아플락	1988	지점	1991 대한교육보험에 계약이전
조지아	1988	지점	1991 네덜란드생명에 계약이전
한국푸르덴셜	1989	현지법인	1997 푸르덴셜생명으로 상호변경
네덜란드	1991	현지법인	1991 조지아생명 계약인수 1999 ING생명으로 상호변경
AGF	1991	현지법인	1992 프랑스생명으로 상호변경
AIA 생명	1997	지점	1997 알리코생명 계약인수
카디프생명보험	2002	지점	2005 SH&C생명 계약이전

〈표 II-2〉 합작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진입회사명	진입연도	외국회사	내국회사	외국사지분(%)
동부에트나	1989	Atena International	동부그룹	51
동양베네프트	1989	Mutual Benefit Life	동양그룹	49
코오롱메트	1989	Metropolitan Life	코오롱그룹	60
고려씨엠	1989	Connecticut Mutual Life	고려통상	50
삼신올스테이트	1989	Allstate International	삼환기업	50
영풍메뉴라이프	1990	Manulife	영풍그룹	50
고합뉴욕	1990	New York Life	고려합섬	51

10) 김현수(2006).

11) 아플락, 조지아, 한국푸르덴셜, 아메리카는 미국계, 네덜란드생명은 네덜란드계, AGF는 프랑스계, Manulife는 캐나다계 회사이다.

한편 1986년까지 내국인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1986년 전국 규모 순수한 내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설 허가기준을 발표하였는데, 금융전업 여부, 개인출자 여부, 지방본사 여부, 출자능력, 경영능력, 출자건전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동 기준에 따라 1988년 이후 지방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하여 22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사업을 허가하였다.

〈표 II-3〉 국내 생명보험회사 진입 현황

(단위: 억 원, 개)

회사	설립연도	납입자본금	설립시 주주 수	대주주
대신	1989	100	9	대신증권
태평양	1989	100	85	태평양화학
국민	1989	100	76	동아투자금융
한덕	1989	100	8	국제화재, 대한전선
한국	1989	100	9	대한화재
신한	1990	100	56	신한은행
부산	1988	60	1,344	자유건설, 부산은행
대구	1988	60	102	금복주, 대구은행
광주	1988	60	49	광주은행
대전	1988	60	34	태평양화학, 충청은행
충부	1990	60	113	개인 주주
경남	1990	100	563	개인 주주
전북	1990	100	344	백양, 전북은행
충북	1990	100	793	개인 주주
한일	1993	100	-	개인 주주

자료: 김현수(2006).

이후 정부는 규제완화, 계약자보호장치 강화, 감독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19차 보험업법을 전문개정하였다(2003. 5. 29). 동 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최저자본금을 종목별로 세분화하였으며 통신판매전문사 설립자본금을 2/3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2004년 라이나생명이 CIGNA 본사의 지점에서 국내 현지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진입한 은행계열은 KB생명(2004)이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아비바생명(2008년), IBK연금보험회사(2010년)가 진입했다.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시장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총 23개사이며 이 중 AIA생명만이 지점형태로 영업하고 있고 다른 외국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표 II-4〉 퇴출 생명보험회사 현황

(단위: 억 원)

회사	퇴출연도	퇴출 내용	공적자금
AFLAC	1991	교보생명 계약이전	-
조지아생명	1992	네덜란드생명 계약이전	-
아주생명	1996	금호생명으로 대주주 변경	-
중앙생명	1997	SK그룹이 인수	-
ALICO	1997	아메리카생명 계약이전	-
국제생명	1998	삼성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4,736
태양생명	1998	흥국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2,796
고려생명	1998	제일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2,088
BYC생명	1998	교보생명 계약이전(11. 11 허가취소)	2,638
조선생명	2000	한국생명(현대생명)과 합병	1,277
동아생명	2000	금호생명과 합병	14,387
태평양생명	2000	동양생명과 합병	3,300
국민, 한덕생명	2000	SK생명과 합병	7,301
두원(경남) 현대(한국), 삼신생명	2001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10. 17 허가취소)	12,265
대한생명	2002	한화컨소시엄	35,500
대신생명	2003	녹십자 인수	1,393
한일생명	2004	KB생명에 매각	262
SK생명	2005	미래에셋 인수	-

자료: 김현수(2006).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가 과당진입을 함에 따라 1991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동안에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구조조정과정을 거쳤다(〈표 II-4〉 참조). 이 시기에 대부분 생명보험회사의 부실화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적인 영업구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당경쟁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동아생명과 같은 국내회사들도 과도한 영업경쟁을 거치면서 부실화되었다. 정부는 부실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에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증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부족규모에 따라 계약자배당 제한, 보험회사업의 일부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증거명령을 받았던 회사들은 지급여력을 충족한 수준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부실보험회사의 적기퇴출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출되는 등 퇴출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 본 생명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정리해 보면 <표 II-5>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퇴출되는 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2000년 이후 생명보험시장 내의 회사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5>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연도별	연초 회사 수	진입 회사 수	퇴출회사 수			연말 회사 수
			계약이전	합병	계 (매각 제외)	
1998	33	-	4	-	4	29
1999	29	-	-	-	-	29
2000	29	-	1	5	6	23
2001	23	1	2	-	2	22
2002	22	1	-	-	-	23
2003	23	1	1	-	1	23
2004	23	1	1	-	1	23
2005	23	-	1	-	1	22
2006	22	-	-	-	-	22
2007	22	-	-	-	-	22
2008	22	-	-	-	-	22
2009	22	-	-	-	-	22
2010	22	1	-	-	-	23
2011	23	-	-	-	-	23

나. 손해보험시장

손해보험시장의 진입과 퇴출은 생명보험시장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장 진입은 시장의 수요에 의한 특화보험회사의 진입이 있었고 퇴출은 기존 보험회사들의 경쟁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에 비해 진입과 퇴출은 빈번하지 않았다. 진입과정을 보면 1989년에 화재보험의 특수건물화재보험풀(pool)의 해체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신설되었으며, 1992년에 비질런트보험회사가 지점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도입한 제17차 보험업법 개정(2000년) 이후인 2001년에 스위스리, 뮌헨리, 쾰른리, 스코어리 등 외국 재보험회사들이 사무소형태에서 지점으로 전환하였다(〈표 II-6〉 참조). 같은 해에 특화보험회사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 국내 지점을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쟈웬스모기지인슈어런스가 지점 형태로, 다스법률비용보험회사가 현지법인 형태로 진입하였다.

〈표 II-6〉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현황

진입회사명	진입 연도	진입 형태	비고
비질런트	1992	지점	2000 페더럴로 상호 변경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2002	지점	-
스위스리	2001	지점	-
뮌헨리	2001	지점	-
제너럴재보험	2001	지점	2010. 7 쾰른리에서 사명 변경
스코어리	2001	지점	-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2001	지점	국내 최초 권원보험사업 인가 취득
교보자동차보험	2001	법인	국내 최초 온라인자보사 인가
알리안츠화재해상	2002	법인	외국사 최초 국내법인 설립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2003	법인	온라인 자보사
현대하이카	2005	법인	온라인 자보사(현대해상 자회사)
RGA	2005	지점	2002. 7 서울주재원 사무소 설치
쟁웬스모기지인슈어런스	2007	지점	2005년 한국사무소 설립
다스법률비용보험	2007	법인	2009년 데아에스권리보호사에서 사명 변경
하노버리	2008	지점	-
AIG유나이티드개런티	2008	법인	-
차티스손보	2012	법인	AHA 한국지사 계약이전, 영업양수

한편 2003년 제19차 보험업법 개정으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보험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교보자동차보험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인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개정 이후 2003년에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가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진입하였다. 그 동안 손해보험시장에서 신규로 진입한 전문회사들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는 FY2010 기준으로 2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의 하나인 보증보험시장의 경우 처음에는 손해보험 회사들이 영위하도록 허용하였으나 1969년 대한보증보험이 설립되고 정부의 지침에 의거 보증사가 1개사 전업체제¹²⁾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되었으나,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합병되어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1개사 전업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표 II-7〉 퇴출 손해보험회사 현황

(단위: 억 원)

회사	회사	퇴출연도	퇴출 내용	공적자금
비자발적 퇴출	대한보증/ 한국보증	1998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	102,500
	대한화재	2001	대한시멘트에 매각	510
	국제화재	2002	근화제약에 매각	740
	리젠트화재	2002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로 계약이전	2,386
자발적 퇴출	알리안츠	2003	LIG 손보 계약이전	-
	제일화재	2009	한화손보와 합병	-
	AHA지점	2012	차티스손보(주)로 계약이전, 영업양도	-

자료: 김현수(2006), 최근자료를 정리함.

12) 대한보증보험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10개 손해보험사의 자본참여와 함께 보증보험 면허의 반납 조치를 단행하여 보증보험사업의 일원화(一元化)를 실시함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은 1970년 5월을 기해 1개사 전업체제로 전환되었다. 재무부(1970. 5. 30), 「보험1223-1196호 보증보험 영위의 일원화에 따른 지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퇴출은 대부분 생명보험과 유사하게 부실화된 보험회사를 퇴출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자발적인 퇴출에는 알리안츠손해보험과 제일화재, AHA한국지사의 경우가 해당된다(〈표 II-7〉참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출은 IMF 구제금융 시 4건이 있었는데 공적자금이 10조 6,136억 원이나 투입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998년 11월에 한국보증 및 대한보증은 서울보증으로 합병되었고, 2000년에는 리젠트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3개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한화재는 대한시멘트에, 국제화재는 근화제약에 매각되었으며, 리젠트화재는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되었다.

〈표 II-8〉은 앞서 살펴본 손해보험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경쟁촉진정책에 따라 2001년에 보험가격자유화가 진행되고 종목별 납입자본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총 30개사에 이른다. 이 중에서 원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3개사이고 재보험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7개사이다. 외국사는 원수보험을 지점으로 5개사, 법인으로 1개사가 영업중이며 재보험을 지점으로 6개사가 영위하고 있다.

〈표 II-8〉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연도별	연초 회사 수	진입 회사 수	퇴출회사 수			연말 회사 수
			계약이전	합병	계(매각 제외)	
1998	17	-	-	1	1	16
1999	16	1	-	-	-	17
2000	17	2	2	-	2	17
2001	17	5	-	-	-	22
2002	22	3	1	-	1	24
2003	24	3	1*	-	1	26
2004	26	1	-	-	-	27
2005	27	2	-	-	-	29
2006	29	-	-	-	-	29
2007	29	1	-	-	-	30
2008	30	1	-	-	-	31
2009	31	-	-	1*	1	30
2010	30	-	-	-	-	30
2011	30	-	-	-	-	30
2012	30	1	1*	-	-	30

주: *는 자발적인 퇴출로 2003년 알리안츠 손해보험회사, 2009년은 제일화재의 한화손보와 합병, AHA한국지사의 차티스손보로 계약 이전함.

3. 보험시장 현황: 구조, 행동, 성과

본 절에서는 국내 보험시장의 현황을 구조(the structure of an industry), 기업 행동(firm conduct), 성과(market performance)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시장구조는 시장의 경쟁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¹³⁾, 시장구조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산업집중도 관련 지수, 진입장벽 등이 있다. 진입장벽의 근사치(proxy)로써는 통상적으로 최소효율회사규모(minimum efficient firm size), 광고강도(advertising intensity), 자본강도 등이 사용된다. 시

13) Carlton and Perloff(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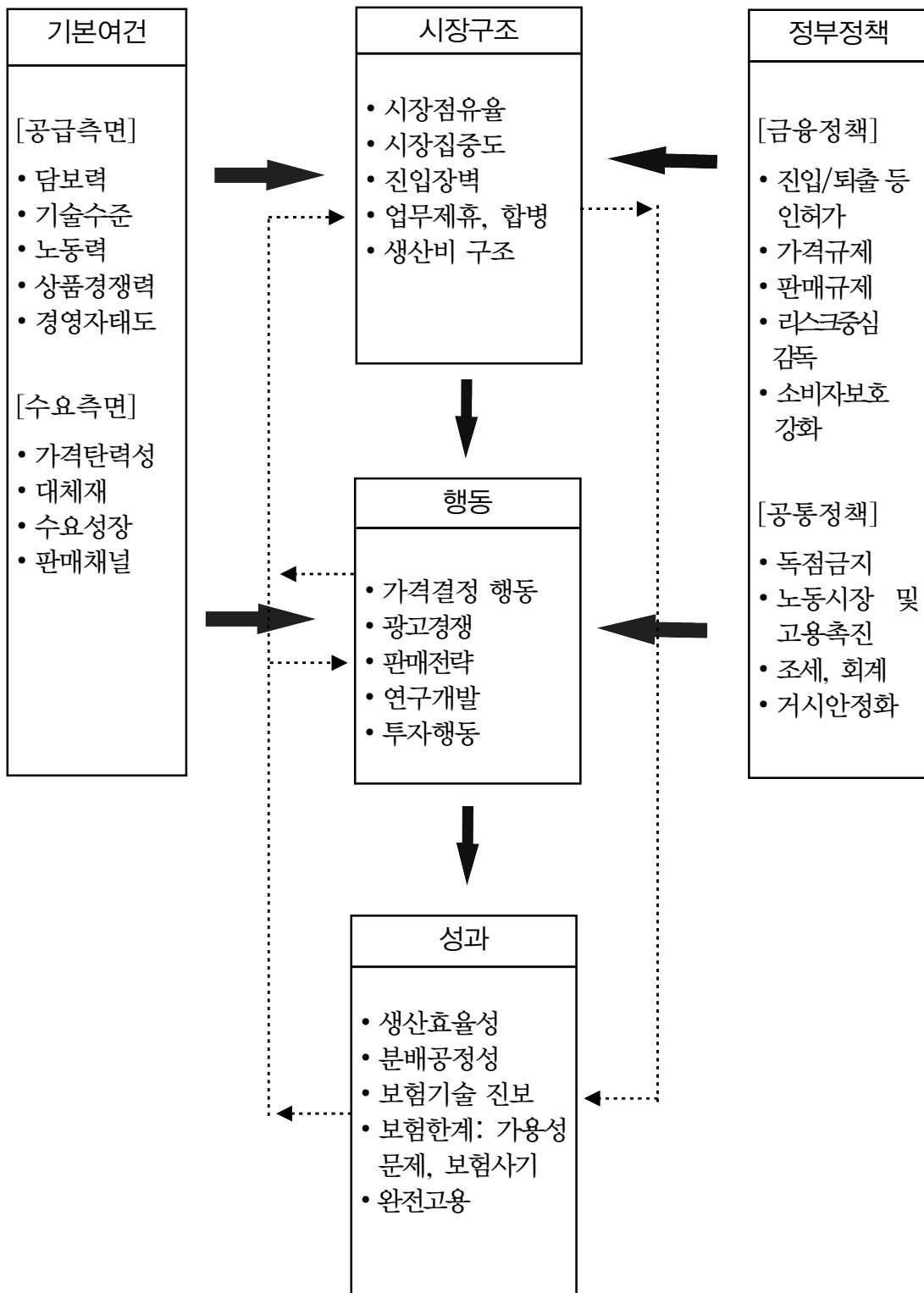
장구조는 가격결정행태, 상품전략, 연구개발행태, 광고, 법적 전략 등 기업의 행동을 통해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등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시장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수익성 지표에 해당되는 수익률(rate of return), 러너지수(Lerner Index)¹⁴⁾ 또는 가격비용마진(price-cost margin), 토빈 q(Tobin q)¹⁵⁾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구조, 행동, 성과는 시장의 공급 및 수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정부정책은 시장구조,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공급 및 수요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경우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에 대한 한 가지 정책변화만의 효과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정책 효과의 시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14) 러너지수는 가격이 한계생산비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책정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로 미국 경제학자 ‘아바 러너(Abba Lerner)’에 의해 개발되었다. 러너지수는 0에서 1까지(또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완전경쟁 기업은 러너지수가 0의 값을 가지며, 가격이 무한히 커지거나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면 러너지수는 1로 수렴한다(러너지수 = (가격 - 한계비용) / 가격). 최정표(2003), p. 62.

15) 토빈 q는 기업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업자산의 대체비용을 나눈 값으로 $q > 1$ 이면 기업이 성과를 잘 내고 있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정표(2003), p. 344.

〈그림 II-1〉 보험시장의 구조, 행동, 성과



자료: Jedlicka and Jumah(2006), p. 9 참조하여 국내 보험시장 여건에 맞게 재작성함.

가. 시장구조

1) 생명보험

우선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시장 내 회사 수를 살펴보면 1988년과 1993년 사이에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진입하면서 회사 수는 13개에서 33개로 늘었으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많은 수의 생명보험회사가 퇴출하였다. 2012년 6월 현재는 생명보험시장 내에 23개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시장 내에 활발한 시장진입이 있었던 1988년부터 1993년 사이에 CR3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1988년 75.2%였던 CR3은 1993년 60.5%로 하락하였다.

현재 생명보험시장집중도를 시장 내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 허핀달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측면에서 판단할 때는 FY2010 기준 생명보험시장의 HHI가 1,186로 나타나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9〉 시장구조 변화: 생명보험

(단위: 억 원, %)

연도	실질보험료	회사 수	1사당 실질보험료	CR1	CR3
1988	241,647	13	18,588	35.0	75.2
1989	289,220	25	11,569	33.4	71.9
1990	360,181	31	11,619	31.3	65.5
1991	397,879	31	12,835	33.0	67.1
1992	437,718	32	13,679	31.5	65.0
1993	443,707	33	13,446	28.6	60.5
1994	481,703	33	14,597	28.6	59.7
1995	586,297	33	17,767	29.3	61.3
1996	604,310	33	18,312	29.7	63.9
1997	742,262	33	22,493	32.6	67.2
1998	654,207	33	19,824	35.4	72.2
1999	583,246	29	20,112	36.1	75.2
2000	638,431	29	22,015	41.2	81.0

2001	546,619	23	23,766	40.4	77.4
2002	563,990	22	25,636	38.8	75.0
2003	565,411	23	24,583	35.8	70.8
2004	564,526	23	24,545	34.0	67.4
2005	554,693	22	25,213	32.5	64.2
2006	563,302	23	24,491	31.2	61.2
2007	572,366	22	26,017	29.8	57.6
2008	542,010	22	24,637	28.6	55.2
2009	549,363	22	24,971	27.2	52.0

주: 실질보험료와 1사당 실질보험료는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또한 외국계회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0에 5.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FY2007에는 23.0%까지 상승하였다가 소폭 하락하여 FY2010 기준으로 20.8%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중소형회사의 시장점유율 또한 FY2002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계회사와 국내 중소형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I-10〉 생명보험의 점유비 및 HHI지수 변화

(단위: %)

구분	1996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대형사	63.9	78.0	65.9	56.7	54.7	54.1	52.3
중소형사	35.7	14.0	16.3	20.3	23.8	24.8	26.9
외국사	0.4	8.0	18.3	23.0	21.5	21.1	20.8
HHI	1,547	2,362	1,739	1,338	1,271	1,263	1,186

주: HHI>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HHI≤1,800이면 집중시장, HHI>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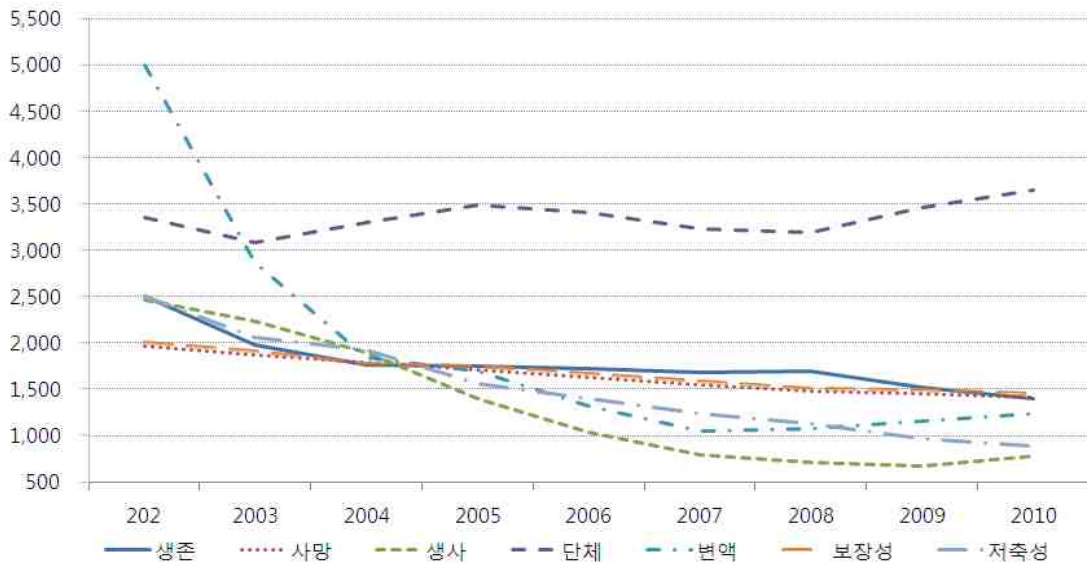
〈표 II-11〉 생명보험 종목별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존	CR3	79	79	70	64	65	63	61	61	58	56
	CR5	87	88	82	81	81	80	78	76	72	69
	HHI	2,491	2,500	1,980	1,770	1,745	1,717	1,687	1,698	1,528	1,400
사망	CR3	74	72	70	68	66	64	61	59	59	57
	CR5	81	79	77	75	73	72	71	70	69	68
	HHI	2,098	1,970	1,871	1,798	1,707	1,629	1,542	1,475	1,458	1,417
생사	CR3	76	73	70	65	54	44	35	34	30	37
	CR5	88	87	85	79	67	59	54	48	45	51
	HHI	2,538	2,465	2,230	1,901	1,397	1,030	797	716	669	777
단체	CR3	94	92	88	88	86	87	85	84	83	83
	CR5	97	95	93	93	92	92	91	90	91	90
	HHI	3,545	3,351	3,080	3,296	3,490	3,413	3,234	3,189	3,462	3,655
변액	CR3	100	97	82	69	64	57	47	47	50	52
	CR5	100	100	98	76	79	74	65	67	70	71
	HHI	6,184	5,004	2,875	1,847	1,701	1,326	1,052	1,079	1,160	1,233
보장성	CR3	75	73	71	65	66	64	62	60	59	58
	CR5	81	79	77	77	74	73	71	70	69	68
	HHI	2,144	2,014	1,918	1,784	1,757	1,675	1,584	1,513	1,493	1,452
저축성	CR3	79	77	71	68	61	57	51	48	43	40
	CR5	88	86	81	91	73	70	66	61	56	54
	HHI	2,618	2,506	2,063	1,927	1,568	1,400	1,243	1,128	966	892

보험종목별로 시장의 집중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독점적 구조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II-11〉).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보험시장을 제외하고는 HHI가 1,000 이하로 나타나 경쟁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CR3 측면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생사혼합보험시장의 CR3가 37%로 나타나 집중이 크게 완화되었고, 생존과 사망보험시장의 CR3는 각각 56%, 57%로 나타나 2001년의 79%, 74%와 비교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생명보험 상품별 HHI 지수 추이



주: HHI > 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 ≤ HHI ≤ 1,800이면 집중시장, HHI < 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2) 손해보험

손해보험시장에는 현재 30개 회사가 보험영업중에 있으며, 이 중 재보험 영업만을 하는 회사가 7개사, 원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가 23개사이다. 23개 회사 중 온라인자동차보험으로 인가받은 회사가 4개사, 이외에 권원보험, 법률보험 등 특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¹⁶⁾ 존재한다.

시장집중도의 연도별 추이를 HHI지수로 살펴보면 1,000~1,800 사이로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진입규제 완화 이후 실제로 손해보험시장의 HHI는 상승하였다가 FY2004 이후 소폭 하락하여 FY2010 기준으로 1,471 수준을 보였다. CR4의 경우에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FY2000에는 동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0.4%에 불과했으나 FY2010에는 2.9%를 차지하고 있다.

16) AIG유나이티드캐러린티인슈어런스아시아리미티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젠위스모기지인슈어런스, 다스법률비용보험.

〈표 II-12〉 손해보험의 점유비 및 HHI지수 변화

(단위: %)

구분	1996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CR4	65.7	73.6	71.3	70.1	68.5	68.8	69.9
중소형사	34.0	25.8	27.5	26.8	24.6	25.2	24.7
외국사	0.3	0.6	1.2	3.1	3.7	3.2	2.9
온라인사	-	-	-	3.7	3.6	2.8	2.5
HHI	1,213	1,525	1,557	1,487	1,426	1,436	1,471

주: HHI > 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 ≤ HHI ≤ 1,800이면 집중시장, HHI < 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 월호.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가계성상품 중심인 생명보험에 비해 기업성상품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고, 부보리스크의 특성이 다양한 관계로 시장이 특성별로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중도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시장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분화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손해보험시장 중 진입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사이에 손해산업에 진입한 회사는 1989년에 진입한 한국보증보험과 1991년에 진입한 비질런트 두 개 회사이다. 그러나 2000년 종목별 자본금의 도입 이후 특화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의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¹⁷⁾의 시장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 구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표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보험회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채널을 영업전략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17) 교보자동차보험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인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법 개정 이후 교원나라는 2003년, 다음다이렉트는 2004년,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2006년에 시장에 진입하였다.

〈표 II-13〉 온라인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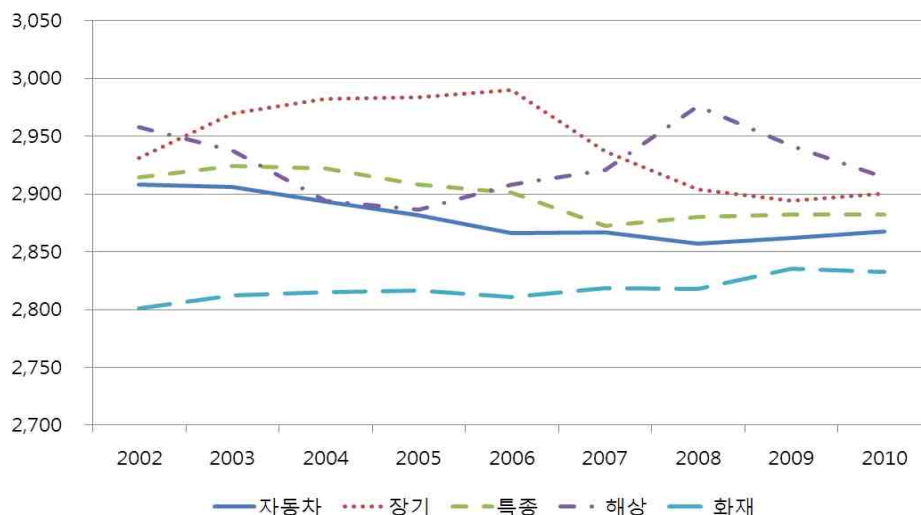
구분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보험료	4,228	6,970	8,393	11,889	17,197	19,447	21,146	25,271
시장 점유율	5.7	8.8	10.3	13.4	17.3	19.4	20.6	22.2

자료: 보험금융통신, 원자료: 보험개발원.

FY2001에는 0.4%를 차지했던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FY2010에는 22.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채널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3〉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세부 상품별 시장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 자본금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종목에서 HHI가 1,800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집중된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장의 집중도만을 가지고 시장의 경쟁도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시장 내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보이는 등 비경쟁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도를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2〉 손해보험 상품별 HHI 지수 추이



주: HHI > 1,800이면 고집중시장, 1,000 ≤ HHI ≤ 1,800이면 집중시장, HHI < 1,000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함.

〈표 II-14〉 손해보험 종목별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동차	CR3	72.2	72.5	72.4	71.8	71.6	71.0	71.9	71.4	71.5	71.4
	CR5	85.3	85.5	85.2	84.4	84.2	84.1	83.9	83.4	83.6	84.8
	HHI	2,937	2,908	2,906	2,893	2,882	2,866	2,867	2,857	2,862	2,867
장기	CR3	-	73.1	74.6	75.0	75.0	74.8	73.0	71.8	71.2	71.6
	CR5	-	87.2	88.7	89.3	89.7	90.1	88.3	86.6	86.0	86.3
	HHI	-	2,931	2,970	2,983	2,984	2,990	2,937	2,904	2,894	2,901
특종	CR3	72.9	73.9	74.3	74.0	73.2	72.8	71.0	71.4	71.7	71.9
	CR5	85.7	86.7	87.2	86.8	86.2	86.0	84.6	85.6	85.1	85.1
	HHI	2,895	2,915	2,924	2,922	2,908	2,901	2,873	2,880	2,882	2,882
해상	CR3	74.1	75.8	74.3	71.9	72.6	74.2	75.1	77.2	76.0	74.2
	CR5	86.2	87.7	88.0	87.1	86.3	87.1	87.1	88.1	87.5	87.2
	HHI	2,922	2,958	2,938	2,894	2,886	2,908	2,921	2,976	2,942	2,914
화재	CR3	66.4	66.8	66.7	66.2	66.5	67.0	68.5	68.8	68.8	68.8
	CR5	79.0	80.2	80.3	80.6	80.8	80.4	80.9	80.7	80.8	80.9
	HHI	2,785	2,801	2,812	2,815	2,817	2,811	2,818	2,818	2,835	2,832

나. 기업행동

본 절에서는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정도를 Panzar-Rosse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anzar-Rosse 수입 검증은 먼저 총수입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요소가격과 다른 통제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한 축약식(reduced form equation)을 추정한 후, 요소가격에 대한 수입의 탄력성 합을 가지고 계산한 H지수로 시장의 경쟁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Panzar-Rosse H지수는 독점시장이나 담합적 과점시장의 경우 음수의 값으로 계산되며,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 0과 1 사이의 값으로, 경쟁시장의 경우 1의 값으로 계산된다.

〈표 II-15〉 기초 통계량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보험영업수익	2,663,725	3,763,507
투자영업수익	812,214	3,999
인건비	90,892	138,294
모집비용	287,636	356,783
지급보험금	2,155,759	3,801,548
재보험비용	136,890	232,568
신계약비상각비용	397,892	520,057
이자지급	6,315	11,260
유가증권처분손실	76,934	141,576
유가증권평가손실	43,212	87,492
책임준비금 전입액	867,134	1,108,053
사업비	645,183	772,790
임직원 수	1,244	1,682
설계사 수	7,385	9,404
지급보험금/책임준비금	65.8	335.7
사업비율	11.5	7.9
자산운용수익률	5.4	1.2

주: 1)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화 기준으로 환산.

2) 인건비는 급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의 합.

3) 모집비용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포함된 비례수당의 합.

4) FY2006~FY2009.

5) 사업비율의 경우, 각 회사의 사업비율을 평균한 값이므로 전체 사업비율 값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로서 수입보험료(보험영업수입)와 수입보험료에 투자 영업수입을 더한 총수입을 사용하였으며, 김준경(2004)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생산요소 변수들로 사용하였다. 즉 생산요소로서 크게 임직원 일인당 인건비, 모집인 일인당 모집비용, 자산 한 단위당 자금비용, 그리고 자산 한 단위당 자본 비용을 고려하였다. 일인당 인건비는 임직원에 대한 비용으로써 사업비 지출 중 급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의 합을 임직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일인당 모집비용은 신계약비, 수금비 중 비례수당의 합을 모집

인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자산 한 단위당 자금비용은 지급보험금, 재보험비용, 신계약비상각비용, 이자지급,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책임준비금 전입액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 한 단위당 자본비용은 사업비 중 인건비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FY2006부터 FY2009까지 생명보험회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금액은 모두 2010년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II-15>와 같다.

Panzar-Rosse H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험영업수입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추정식과 보험영업수입과 투자영업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식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네 가지 생산요소만을 고려한 식과 네 가지 생산요소 이외에 생명보험회사의 산출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책임준비금 대비 지급보험금, 사업비율, 자산운용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식을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며, 회사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ln R = \beta_1 \ln L + \beta_2 \ln F + \beta_3 \ln K + \gamma' X + \mu_i + \lambda_t + \epsilon$$

여기서 R_{it} 은 수입보험료 또는 총수입, L 은 단위 인건비, F_{it} 는 단위자금비용, K_{it} 는 단위 자본비용을 나타내며, X_{it} 는 통제변수 벡터, μ_i 는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표 II-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의 H 지수는 0.72~0.84 사이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16〉 생명보험의 Panzar-Rosse H 지수 추정 결과

구분	보험영업수입				보험영업수입+투자영업수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인건비	0.03		0.04		0.03		0.04	
모집비용	0		0		-0.01		0	
자본비용	0.15	**	0.16	**	0.16	**	0.16	**
자금비용	0.63	***	0.64	***	0.54	***	0.55	***
총자산	0.99	***	0.98	***	0.84	***	0.83	***
지급보험금/ 책임준비금	-		-0.70	**	-		-0.55	**
사업비율	-		-0.66		-		-0.51	
자산운용수익률	-		0.71		-		0.87	
F 검정치	32.98		27.75		38.41		31.00	
관측 수	80		80		80		80	
H	0.81		0.84		0.72		0.75	
H = 0	19.21	***	22.10	***	20.38	***	22.51	***
H = 1	1.12		0.87		2.78	*	2.39	*

주: 1)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모형에서 $H_0 : all \alpha_i = 0$ (모든 고정효과가 영)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음.

2)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피설명변수를 보험영업수입으로 한 경우와 총수입으로 한 경우 모두에서 생명보험시장이 독점적이라는 귀무가설, $H_0 : \hat{H} = 0$ ($H_A : \hat{H} > 0$)은 9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귀무가설, $H_0 : \hat{H} = 1$ ($H_A : \hat{H} < 1$)을 검정하였는데, 피설명변수를 보험영업수입으로 한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나, 피설명변수를 총수입으로 한 경우에는 90% 유의수준에서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출물을 보험영업수입으로 설정한 추정식에서의 검정결과에 기반을 두고 생명보험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시장균형 상태에서 수집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즉, Panzar-Rosse 모형에서 사용한 모든 설명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피설명변수를 ROA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분석에서 추정된 H지수가 0(零)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으며, 모형 2에서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귀무가설이 9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

었다.¹⁸⁾ 다시 말해서, 모형 1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생명보험시장이 장기적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II-17〉 ROA 검증 결과

구분	ROA	
	모형 1	모형 2
인건비	-1.12	-1.08
모집비용	-1.05 ***	-0.86 ***
자본비용	-1.84 **	-2.92 ***
자금비용	0.95	1.44 **
총자산	-4.36 ***	-3.27 **
지급보험금/책임준비금	-	-2.83
사업비율	-	7.46
운용자산수익률	-	51.81 ***
F 검정치	4.88	7.48
관측 수	80	80
H	-3.06	-3.42
H = 0	2.52	4.35 **

주: 1)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화 기준으로 환산.

2) FY2006~FY2009.

3)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함.

4)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모든 모형에서 생명보험시장이 독점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산출물을 보험영업수입으로 설정한 모형 1의 경우만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생명보험시장이 장기적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순재(2011)는 Panzar-Rosse 모형을 사용하여 손해보험산업 가격자유화 전후(1998~2000년과 2001~2008년을 대비)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는데 가격자유화 이후 손해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시

18) 동질적 회사들의 자유진입 균형에서는 회사들의 ROA를 균등화시키는 힘이 존재하게 되고 ROA 수준이 요소가격과 독립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입 대신 ROA를 피설명변수로 하고 구한 Panzar-Rosse H지수는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동 연구는 산출물로서 경과보험료 및 경과보험료와 투자수입의 합으로 사용하였으며, 요소가격으로써 일인당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부동산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본비용 요소가격, 모집비 및 장기수금비를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 신계약 및 수금비 요소가격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장기보험비율, 보험금지급률, 재보험비율, 자기자본비율, 비운용자산비율을 추가 설명변수로서 사용하였다.¹⁹⁾

다. 시장성과

진입과 퇴출규제가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회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화된 회사의 행동은 보험시장의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표 II-18>는 생명보험시장의 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보험시장 내 회사들의 경영효율성을 살펴보면, 보험금지급률은 FY1993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 하락했으나, FY1997에 급증하였다가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율의 경우에는 FY1995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FY2004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연상각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예정신계약비 기준으로 이연·상각되었던 관행이 FY2004부터 실제 신계약비 기준으로 이연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실효해약률의 경우에는 FY1988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FY2000 이후부터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보험시장에 진입이 활발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의 기간을 살펴보면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은 모두 악화되었으며 실효해약률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너무 많은 보험회사가 일시에 시장에 진입하여 무리한 경쟁을 촉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 그러나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관측치 수 확보가 불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동 시장에 대한 Panzar-Rosse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은행, 증권, 보험시장 진입기준으로써의 최소설립자본금에 대해 연구한 김준경 외(2004)도 Panzar-Rosse의 모형을 사용한 경쟁도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손해보험의 경우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표 II-18〉 시장성과 지표의 변화: 생명보험

(단위: %, 백만 원)

연도	경영효율성					생산성	
	보험금 지급률	사업 비율	실효 해약률	ROE	ROA	신 계약률	1인당 실질보험료
1988	61.0	11.3	28.6	261.8	1.1	94.2	137.6
1989	60.9	11.9	26.0	23.7	0.2	102.8	138.1
1990	56.7	11.7	27.8	-0.3	-0.0	88.5	146.5
1991	66.2	12.8	27.5	4.5	0.1	84.3	147.8
1992	77.7	13.6	30.5	14.7	0.2	78.6	150.0
1993	82.2	15.0	27.6	20.0	0.3	74.8	149.2
1994	71.9	18.4	26.1	-53.1	-0.7	80.7	142.2
1995	63.5	18.2	25.9	-107.9	-1.3	76.8	167.9
1996	64.3	17.9	26.6	-82.4	-1.1	59.1	186.5
1997	84.1	14.7	28.1	-71.2	-1.0	55.6	253.0
1998	98.4	10.6	29.4	-282.2	-4.9	51.0	265.7
1999	90.7	9.2	20.5	-17.7	-1.0	42.7	241.6
2000	80.1	8.6	16.0	-15.3	-0.6	42.4	303.9
2001	72.6	9.4	16.0	31.1	1.5	42.4	318.7
2002	59.1	9.7	14.8	50.0	2.1	32.0	373.4
2003	61.3	10.3	16.1	10.4	1.0	27.4	394.0
2004	59.7	21.8	14.2	13.6	1.2	27.3	412.2
2005	63.6	23.0	11.8	34.4	1.1	27.9	447.9
2006	52.9	18.2	10.7	31.9	0.9	24.5	427.2
2007	59.8	18.5	10.3	32.6	0.9	25.5	396.6
2008	64.6	18.6	12.4	8.1	0.2	23.9	312.8
2009	61.5	16.6	11.2	29.6	0.9	23.1	335.9

주: 1인당 실질보험료는 CPI를 사용하여 2010년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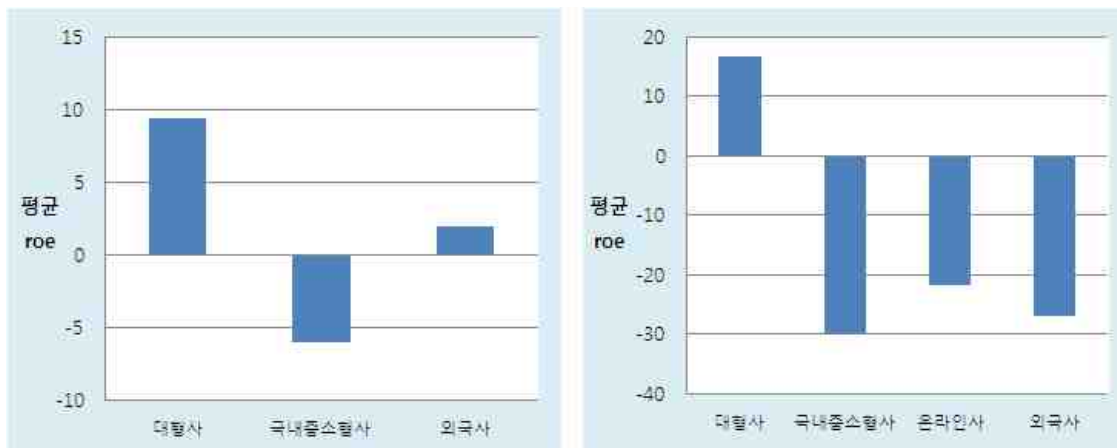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다음으로 생명보험시장 내 회사들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전체 수입보험료를 설계사 수로 나누어 산출한 설계사 1인당 보험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시장진입이 활발했던 FY1989와 FY1994 사이에 1인당 실질보험료는 1억 3,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수준(2010년 원화 기준)이었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FY2000 이후의 설계사 1인당 보험료는 3억 원에서 4억 4,8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시장성과를 회사그룹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에서 대형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신규 진입사 또는 소형사는 목표수익달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Y2006~FY2010 평균 회사그룹별 수익성(ROE)을 살펴보면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수익성의 편차가 발견되며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경우 그 편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평균 ROE가 9.4%, 국내중소형사 평균 ROE는 -6.1%, 외국사 평균 ROE는 1.9%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형사 평균 ROE가 16.8%, 중소형사 평균 ROE가 -29.7%, 온라인사 ROE는 -21.6%, 외국사의 평균 ROE는 -27.0%로 나타났다.

<그림 II-4> 보험회사 그룹별 평균 ROE 비교



주: 1) FY2010 기준, 왼쪽은 생명보험, 오른쪽은 손해보험.

2) 생명보험: 1. 대형사, 2. 국내중소형사, 3. 외국사, 손해보험: 1. 대형사, 2. 국내중소형사, 3. 온라인사, 4. 외국사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4. 소결

진입규제는 지나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입규제 이외에도 퇴출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적립제도, 자기자본규제제도, 자산배분순서 등을 규정하는 퇴출규제도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진입·퇴출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사이 외국회사 및 지방보험회사를 포함한 많은 수의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1988년에 13개에 불과했던 회사 수가 1993년에는 33개까지 증가했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적기에 퇴출하지 못했던 많은 회사들이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199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퇴출되었으며, 퇴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

한편 손해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은 생명보험시장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1992년 비질런트보험회사 진입 후, 2001년 종목별 납입자본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 재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권원보험, 모기지보험 등 외국계 특화보험회사들도 손해보험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이들 회사들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3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수준의 2/3으로 인하여지면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다. 손해보험시장에서의 퇴출을 살펴보면, IMF 구제금융 시기에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되었으며, 아울러 2000년대 초 대한화재, 국제화재, 리젠트화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또한 알리안츠손해보험과 제일화재는 자발적으로 퇴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내 보험시장 내 진입 및 퇴출이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시장의 현황을 구조, 행동,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생명보험시장은 회사들의 대규모 시장진입이 시작되었던 FY1988에 비해 집중도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장 내 기업들은 독점적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를 살펴보면 회사그룹별로 매우 다른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명보험시장 내에는 FY2011 초 기준으로 23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과거 시장 내 진입이 활발했던 FY1988과 FY1993 사이 CR3을 살펴보면 FY1988 75.2%를 차지했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60.5%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동 비율은 상승하다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외국계회사와 중소형회사 시장점유율 확대에 의해 하락세를 보여 FY2010에는 52.3%로 하락하였다. 시장구조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의 하나인 HHI를 통해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집중도를 판단해 보면 FY2010 기준 HHI는 1,186로 계산되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생명보험시장 내 회사들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Panza-Rosse의 방법을 가지고 시장 내 경쟁정도를 판단하였는데,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효율성을 통해 시장성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 보험금지급률과 사업비율은 모두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효해약률도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생명보험시장의 성과를 수익성(ROE)을 통해 살펴보면 대형사와 외국회사 그룹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중소형회사 그룹은 마이너스의 수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FY2006~FY2010 기준) 회사그룹별 수익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의 성과를 FY2006~FY2010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대형사 그룹의 경우에는 안정적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 외국사 및 온라인회사 그룹의 경우 마이너스의 수익성을 보여, 손해보험시장에서도 회사그룹별 수익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 내에는 FY2011 초 기준으로 30개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재보험만을 취

급하는 회사가 7개사, 온라인자동차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 이외에 권원보험, 법률보험 등 특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4개사 존재한다. CR4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Y2010 기준 시장의 HHI는 1,471로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 중 자동차보험시장이 진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2003년 이후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기존 오프라인회사들도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영업전략을 도입하여 시장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온라인자동차보험료의 비중은 FY2010 기준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Ⅲ.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퇴출 주요 규제

1. 진입규제 주요 내용

가. 보험업의 구분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보험업을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을 크게 생명보험업²⁰⁾,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제3보험업의 개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은 각각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생명보험상품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이며, 손해보험상품은 제3보험상품이 보장하는 위험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제3보험상품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20) 보험업법 제정 시에는 생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71년 개정 시에 생명보험이 인보험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 다시 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다.

로 금지하고 있으며 자회사형태로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체 내의 겸영은 다음 3가지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겸영이 허용되는 첫 번째 보험종목은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이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일지라도 영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종목이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조세제한특례법(제86조의2)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연금계약이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종목(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열거 종목 전체)을 전부영위하지 않으면 겸영이 불가능하다(시행령 제15조).

세 번째 겸영보험종목은 시행령에서 정한 제3보험에 부가되는 보험이다. 이에 해당하는 보험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겸영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해야만 가능하다.

나. 보험사업 영위형태

보험업법 제4조제6항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형태(legal form)를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100%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현지법인 형태, 국내 회사와의 합작법인 형태, 국내지점의 형태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회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 영위형태에 대한 규정은 1977년 보험업법 전문개정 때 명시되었다.

다. 보험업 면허종류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4조). 생명보험업 종목에는 생명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규정된 종목은 없음)이 해당된다. 손해보험업 종목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즉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등이 해당된다. 제3보험업 종목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규정된 종목은 없음)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험종목별 허가제도는 2000년 보험업법 개정에서 도입되었는데, 이전에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업을 허가해 왔었다.

라. 진입허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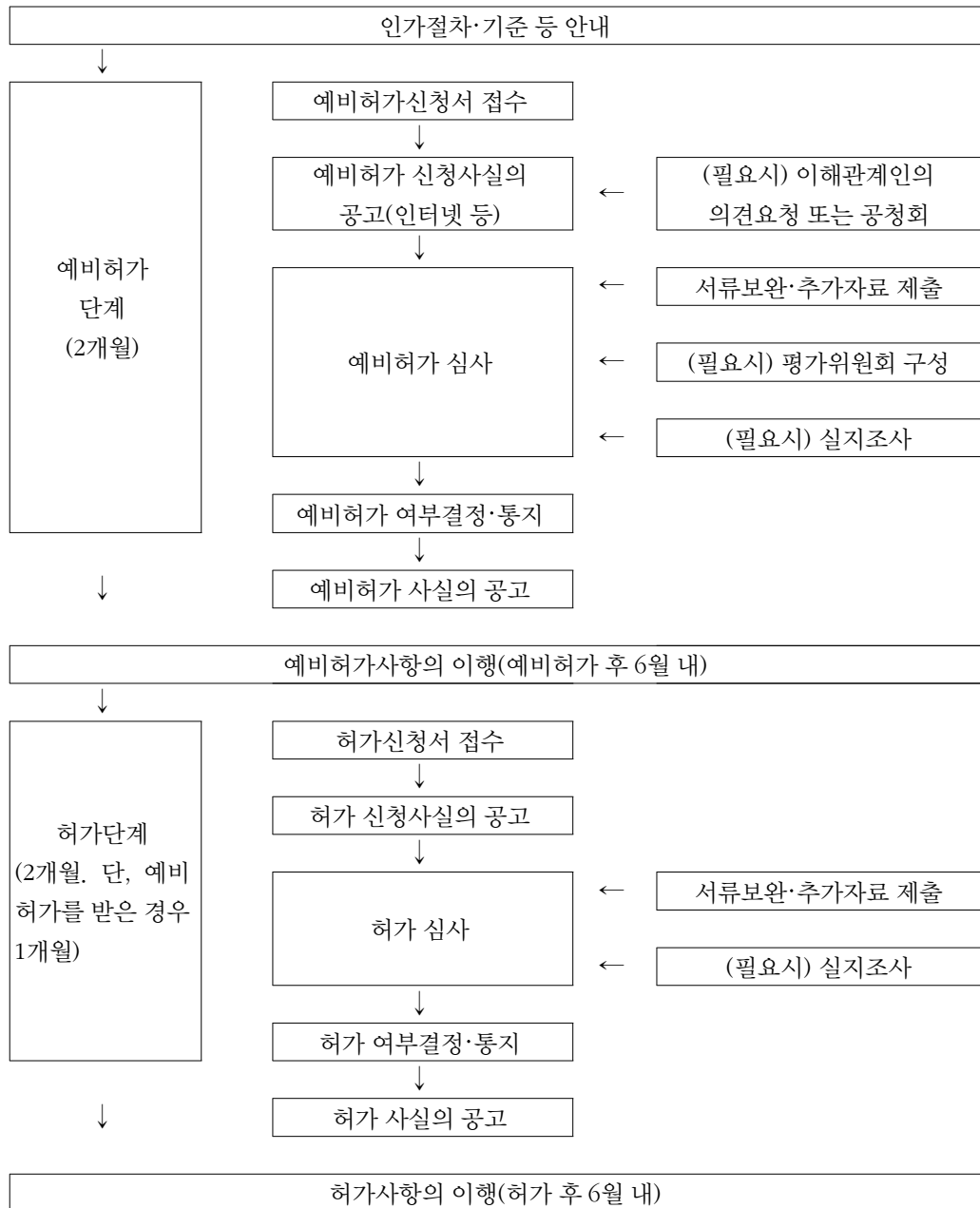
일반적인 보험업 허가절차는 <그림 III-1>과 같은데, 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동 조건을 이행한 후 본 허가를 신청한 후 1~2개월 내에 허가 심사를 하게 되고, 허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보험업법 제7조). 따라서 보험회사의 최소 진입허가 소요기간은 진입할 회사가 서류 등의 하자가 없이 완전한 준비가 된 경우에 3개월이 소요된다.

보험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²¹⁾와 함께 정관,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21) 허가신청서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사업방법서를 적어야 한다(시행령 제9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중에서 사업방법서를 제출해야 한다(보험업법 제5조).

〈그림 Ⅲ-1〉 보험업 허가절차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마. 보험업 허가 요건

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일반금지조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보험업법 제4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0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 Economic Needs Test)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시장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제17차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업 허가요건 등 허가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의 사업허가요건(제6조)은 크게 최저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외국보험회사의 사업허가 요건으로써는 영업기금 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보험업 영위요건, 재무건전성 요건이 있다.

1) 자본금요건

보험업법 제9조는 보험업 개시요건으로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회사를 위해 최저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달리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보험종목을 14개 종목으로 세분화하여 자본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보험업 개시요건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상당

22) i) 생명보험 200억 원, ii)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00억 원, iii) 화재보험 100억 원, iv)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150억 원, v) 자동차보험 200억 원, vi) 보증보험 300억 원, vii) 재보험 300억 원, viii) 상해보험 100억 원, ix) 질병보험 100억 원, x) 간병보험 100억 원, xi) 기타 보험종목 50억 원.

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로 제한하고 있다(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

〈표 Ⅲ-1〉 보험종목별 요구 자본금

보험업의 허가종목 구분(21개)		자본금/기금 요건 : 시행령(제12조)			
보험업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14개)	금액	비고	
생명보험	1. 생명보험	-	1. 생명보험	200억	
	2. 연금보험	-	2. 연금보험(퇴직)	200억	
	3. 기타보험	-	기타보험	50억	*
손해보험	4. 화재보험	-	3. 화재보험	100억	
	5. 해상보험	-	4. 해상보험	150억	
	6. 자동차보험	-	5. 자동차보험	200억	
	7. 보증보험	-	6. 보증보험	300억	
	8. 재보험	-	7. 재보험	300억	
	9. 기타보험	1. 책임보험	1. 책임보험	100억	
		2. 기술보험	2. 기술보험	50억	
		3. 권리보험	3. 권리보험	50억	
		4. 도난보험	4. 도난보험	50억	*
		5. 유리보험	5. 유리보험	50억	*
		6. 동물보험	6. 동물보험	50억	*
		7. 원자력보험	7. 원자력보험	50억	*
		8. 비용보험	8. 비용보험	50억	*
		9. 날씨보험	9. 날씨보험	50억	*
제3보험	10. 상해보험	-	11. 상해보험	100억	
	11. 질병보험	-	12. 질병보험	100억	
	12. 간병보험	-	13. 간병보험	100억	
	13. 기타보험	-	기타보험	50억	*

주: *: 시행령 제12조에서 기타종목 50억 원으로 규정된 종목임.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은 보험업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62년 제정된 보험업법은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을 손·생보 구분 없이 5억 환, 50% 이상

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1962년 보험업법 제1차 개정 시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억 원,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분리하였다. 이후 보험사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생명보험은 2억 원 이상, 손해보험 3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게 된다(1971년 제2차 보험업법 개정). 제5차 보험업법 개정(1988. 12. 31)은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최저납입 자본금 또는 기금을 상향조정하여 인보험은 100억 원 이상, 손해보험은 30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1996년 OECD 가입 등으로 인해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서 심화된 금융산업의 경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8차 보험업법 개정(1997년)은 최저자본금을 손·생보 구분 없이 300억 원으로 조정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새롭게 진입했던 생명보험회사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적 문제를 보이다가 IMF 구제금융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로 인해 퇴출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생명보험회사 최저자본금 상향조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도입한 2000년 개정 후에는 보험사업 중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종목 이상을 취급할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제19차 보험업법 개정(2003. 5. 29)은 규제완화, 계약자보호장치 강화, 감독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는데, 특히 최저자본금을 종목별로 2000년에 비해 더 세분화하였으며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을 2/3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2)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전문 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으로는 우선,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전산전문 인력,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무

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전산설비의 적정성 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 등의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한다.²³⁾

한편 2008년 금융위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는 보험회사의 일부업무(보험금지급업무, 손해사정업무)를 외부위탁 시 손해사정사의 보유의무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였으며 2010년 개정에 반영되었다. 즉 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 심사 관련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보험사고 조사업무,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중 하나를 외부위탁²⁴⁾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6조제2항).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험업법감독규정(제2-6조제2항 및 별표3)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둘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셋째, 위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안 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계획서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내부통제기준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

23) 자세한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였다.

24)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4) 대주주 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여 대주주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출자능력을 보유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질서를 해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00% 이상,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²⁵⁾ 다음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이 부채성 조달자금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관계법 및 금융관계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 인가,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이어야 한다. 또한 동 규정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기관 이외의 내국법인, 내국인으로써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도 요건을 정하고 있다.

바. 외국회사의 영업허가 요건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며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 허가를 받기위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만족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요건 등은 국내회사가 만족하여야 하는 해당 조건들과 동일하다(보험업법 제6조제2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자본금 및 기금 요건으로 보며,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²⁶⁾ 30억 원 이상 보유를 정하고 있다(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또한 외국보험

25) 은행의 경우 분기 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분기 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200% 이상, 보험회사의 경우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4).

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우선 외국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산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의 국제적 인정 요건과 국내 경영에 충분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아울러 보험업법 제75조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매사업연도 결산 결과 보유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60일 내에 부족한 자산을 보전해야 하며, 결산 이전이라도 금융감독원장이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지시 후 30일 이내에 부족한 자산을 보전해야 한다(보험업법감독규정 제3-5조). 본 규정은 본점의 자산과 국내지점의 자산을 구분하여 국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퇴출규제 주요 내용

가. 퇴출의 구분 및 절차

보험회사의 퇴출사유는 크게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자발적 퇴출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주주총회 등의 결의²⁶⁾, 회사의 합병²⁸⁾, 보험계약 전부이전 등이 해당된다. 비자발적 해산 사유로는 보험회사의 파산, 보험업 허가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퇴출은 자발적 퇴출과 비자발적 퇴출로 구분하여 관련된 법규가 적용된다. 자발적인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비자발적인 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예안법(이하 '금산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

26) 1962년에 제정된 외국보험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공탁을 하도록 하였으나, 1977년 보험업법에 외국보험회사의 사업에 관한 규정이 흡수되면서 영업기금제가 도입되었다.

27) 알리안츠손해보험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28) 보증보험사, 생명보험사 퇴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발적인 퇴출과 비자발적인 퇴출로 구분하여 관련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2〉 보험회사 퇴출의 구분

구분	자발적 퇴출	비자발적 퇴출
퇴출사유	주총결의, 임의합병, 계약이전, 영업양도	파산, 허가취소, 법원판결, 계약이전, 강제합병
법규적용	보험업법(제8장 해산 및 청산) 상법	금산법
계약자보호	보험업법(3월 이내 보험금지급)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제3자보호)

보험회사의 비자발적인 퇴출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다른 규제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퇴출을 규율하는 법체계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적용되고, 상사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해산과 청산규정을 적용받고 보험업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해산²⁹⁾과 청산³⁰⁾절차에 대해 제8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퇴출절차

보험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보험업법은 총 1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리계획서의 제출(제155조)
- ② 보험계약의 이전 및 해산에 대한 주총 특별결의(제138조)

29) 해산은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할 경우,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일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며,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남·김건(2003), p.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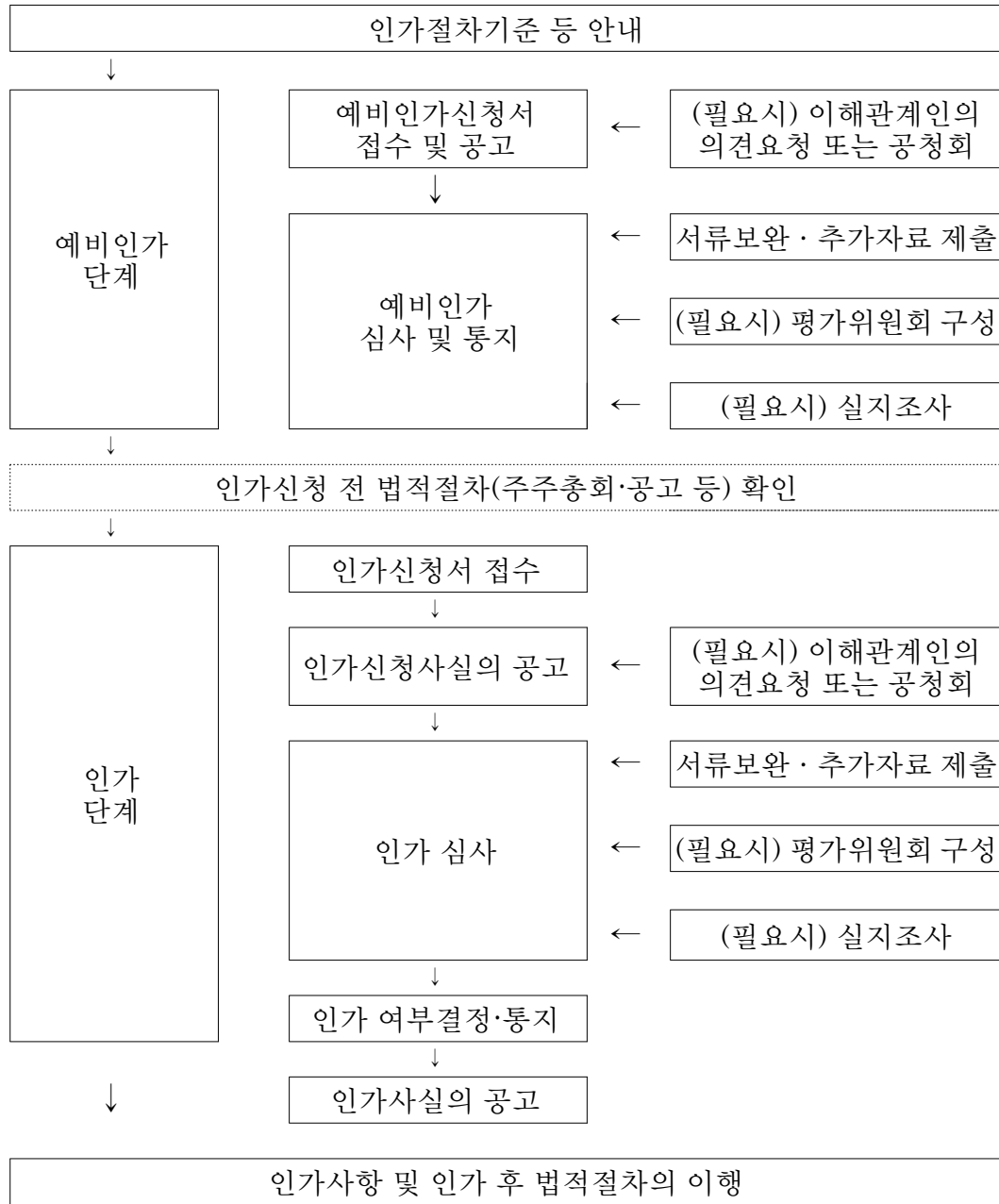
30) 청산은 회사의 해산 이후에 그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법정청산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합병, 분할(또는 분할합병) 또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성남·김건(2003), p. 342.

- ③ 이전받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제140조)
- ④ 계약이전 공고 및 이의제출 접수(제141조)
- ⑤ 보험계약이전 및 해산 인가신청(제139조)
- ⑥ 보험계약이전 및 해산 인가(제139조)
- ⑦ 보험계약이전에 대한 공고(제145조)
- ⑧ 주주에 대한 해산통지(상법 제521조)
- ⑨ 해산등기(상법 제521의2 및 제228조)
- ⑩ 청산인 선임등기(상법 제531조)
- ⑪ 법원에 청산인 신고(상법 제532조)
- ⑫ 채권자에 대한 최고(상법 제535조)
- ⑬ 청산보고서 주총승인(상법 제540조)
- ⑭ 청산종결 등기(상법 제542조 및 제264조)³¹⁾

보험회사가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폐업 60일 전에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앞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회사가 해산결의 및 합병, 계약이전을 하고자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보험업법 제139조). 해산의 결의를 인가받기 위해서 인가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인가절차는 <그림 III-2>와 같다(보험업감독규정 제7-32조).

31) 이성남·김건(2003), p. 344.

〈그림 Ⅲ-2〉 해산, 합병 등의 인가절차



자료: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지 제13호.

다. 퇴출방법

1) 보험회사의 합병

보험회사의 합병³²⁾은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및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회사의 전 재산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법률요건이다. 보험회사의 합병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들이 경영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는 임의합병과 개별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강제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보험회사들의 합병을 보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합병이고 임의합병은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사례만 있다.

보험회사의 합병은 ① 합병계약의 체결(시행령 제75조), ② 합병결의(법 제138조), ③ 합병결의 공고(법 제151조), ④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의 보호절차(법제 151조), ⑤ 합병내용 공시, ⑥ 합병의 인가(법 제139조), ⑦ 합병기일 및 보고절차, ⑧ 합병의 공고, ⑨ 합병의 등기절차를 거친다. 국내보험회사가 합병계약의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준용(법 제141조, 145조, 149조)하고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조건 변경은 보험계약의 계산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는 신계약을 금지하며(법 제142조), 자산처분도 금지(법 제144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법 제151조제1항). 합병계약에는 보험계약이전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가 10% 이상(보험금액 10%)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2) 영업양도는 특정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영업재산이 다른 보험회사로 일괄하여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합병은 포괄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가 불요하지만 영업양도의 경우 특정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업법상에서 영업양도에 대해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법 제150조). 이성남·김건(2003), p. 354.

보험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인가신청을 하여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절차는 해산 참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전결의에 대한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합병계약서, 존속회사의 정관,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험계약보유현황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75조). 인가신청이 되면 금융위는 해산·인가시와 동일한 내용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3〉 보험회사의 해산과 합병 절차

구분	해산	합병
구분, 법규	자발적해산: 정리계획서 제출 비자발적 해산: 금산법	임의합병: 보험업법 강제합병: 금산법
결의	보험업법 제39조(상호회사창립총회), 상법 제434조	
금융위 인가	금융위 인가필요(주총의사록, 청산사무추진계획서, 계약자 등 보호절차 증명서류, 상법 등 법령이행 준수증명서)	계약이전 이의제기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 인가신청(합병계약서, 존속회사의 정관,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험계약보유 현황자료 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자 보호	주총결의, 허가취소, 해산명령으로 인한 해산 시 해산일 3개월 이내 보험사고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법 제158조)	인수회사가 모든 책임 부담
종료절차	해산인가 및 등기, 청산종결 등기	합병인가 및 등기(청산절차 불요)

2) 보험계약 이전

보험계약의 이전은 자발적으로 보험회사가 해산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책임준비금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40조). 또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해산 및 합병에서 설명). 아울러 보험계약의 이전에 있어서도 강제이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업법에서 임의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정리하여 보면, ① 정리계획서 제

출(제155조), ② 주총 결의(제138조), ③ 이전계약 체결(제140조) 및 신계약(자산처분) 금지(제142조, 제144조), ④ 계약이전 공고 및 이의제출(제141조), ⑤ 계약이전의 인가(제139조), ⑥ 계약이전인가의 통지, ⑦ 계약이전 공고(제145조) 순으로 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산 및 합병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39조). 이때 첨부되는 서류로는 이전계약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유계약현황,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이전재산총액과 재산종류별 수량 등 명세, 각사의 보유계약 현황, 계약자보호와 관련된 서류이다. 계약이전에 대한 인가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국내의 계약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

〈표 Ⅲ-4〉 보험계약 이전 절차

구분	보험계약 이전 사유	
	해산시	합병시
공고	계약이전 결의 공고(결의 후 2주 이내)	
계약조건 변경	보험계약 전부이전의 경우에 한정(계산기초, 보험금액삭감 및 보험료 감액, 계약조항 변경)(법 제143조)	계산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법 제152조)
이의제기	계약이전 이의제기(기간 1개월 이상, 계약자 또는 금액 10% 이상시 불가)	
인가신청	이의제기 기간종료 후 1개월 이내 계약이전 인가신청(이전계약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유계약현황,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이전재산총액과 재산종류별 수량 등 명세, 각사의 보유계약 현황, 계약자보호관련서류)	
이전인가 통지	이전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이전 인가 통지(법 시행령 제38조)	
이전공고	이전한 경우 7일 이내 계약이전 공고(법 제145조)	

라. 강제퇴출

1) 사유 및 절차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산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많은 부실금융기관³³⁾이 구조조정을 거쳤다. 보험산업의 경우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부실보험회사를 판정하고 부실회사가 생긴 경우 금산법에 의한 합병이나 강제이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금산법에서의 구조조정방법은 합병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금산법 제3조).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시에는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

33) 금산법 제2조(정의)의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이다.

-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써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황이 정지된 금융기관.
-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합병과 전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금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금융기관이나 임원에게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가 개별법규에서 정해져 있다.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on action)를 발동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판정은 보험업법 제123조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제7-23조)은 보험산업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재무건전성을 지급여력과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3단계의 조치, 즉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 전부정지 또는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표 Ⅲ-5〉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단계 및 내용

구분	적용기준	조치사항	이행기간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비율 50~100% 미만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인 경우 	자본금조정, 사업비감축, 요율조정 등 자구노력조치	1년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비율 0~50% 미만 경영실태평가등급 4등급(취약) 이하인 경우 	점포폐쇄제한, 보험업일부정지, M&A 및 계약이전 계획 수립	1년 6개월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경우 지급여력비율 0% 미만 	주식소각, 6월 이내 보험업 전부정지, 계약이전, 양도, M&A	금융위가 정함

주: 거액금융사고, 부실채권발생으로 단계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함.

2) 보험계약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퇴출은 자발적 퇴출과 비자발적 퇴출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른 계약자보호수단은 다르다. 특히 자발적인 퇴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M&A 또는 계약이전³⁴⁾ 등을 통해 퇴출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39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호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국내 보험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퇴출 사례로는 알리안츠손해보험회사가 LIG손해보험회사에 보유계약을 전부이전하고 해산한 바 있으며, 제일화재가 한화손해보험사에 인수되어 제일화재의 보험계약이 전부 이전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퇴출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 및 손해보험의 제3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³⁵⁾을 곱한 금액을 연간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제32조).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되는 보험계약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

34) 보험업법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35) 예금보험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 ① 부보금융기관은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기관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은행: 100분의 1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00분의 1
3. 보험회사: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함): 100분의 5

IV. 주요국의 진입·퇴출 주요 규제

1. 미국(뉴욕주)

가. 보험회사 현황

미국의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999년 4,996억 달러에서 2008년 8,107억 달러로 성장하였고, 손해보험회사는 1999년 5,554억 달러에서 2008년 8,093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데 비하여 손해보험회사는 2002년 5,591억 달러에서 2003년 7,993억 달러로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보험회사 수는 2008년 기준 손해보험회사 3,326개, 생명보험회사 995개이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999년 1,320개였던 것에 비하여 지난 십년간 300여 개 이상 감소하였다.

〈표 IV-1〉 미국 보험회사 수 및 보험료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회사 수	생명보험	1,320	1,166	1,111	1,074	1,019	995
	손해보험	3,309	3,405	3,239	3,288	3,299	3,326
보험료	생명보험	499,628	601,854	607,056	527,483	778,804	810,715
	손해보험	555,417	824,688	805,025	863,895	813,994	809,351

자료: OECD(2010).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2009년 기준 상위 10개사가 57.6%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상위 5개사가 41.6%를 차지한다. 특히 상위 5개사의 점유비는 2005년에 31.8%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여 그 비중이 1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집중도는 생명보험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위 5개사의 경우 2005년 34.2%에서 2008년 현재 33.0%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상위 10개사의 점유비는 2005년 50.0%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표 IV-2〉 미국 생명보험산업 집중도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명 보험	CR5	31.8	33.2	34.8	36.8	41.6
	CR10	52.5	53.6	55.4	56.1	57.6
손해 보험	CR5	34.2	33.5	33.4	33.0	-
	CR10	50.0	49.8	49.6	49.4	-

자료: Axco(2011).

나. 진입규제

1) 보험업 진입 형태

미국 뉴욕주에서는 보험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1102조).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형태는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위보험종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손해보험회사(article 41. property/casualty), 생명·상해·건강보험회사(article 42. life), 상호교환보험회사(Reciprocal)³⁶⁾ 및 로이드(article 41), 금융보증보험회사³⁷⁾(article 69), 캡티브

36) 개인, 기업, 혹은 회사,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등 가입자(subscribers)들이 보험을 서로 교환하고 약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한도만을 보상해주는 보험조직을 말하며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³⁸⁾(article 70. captive insurance), 공제조합(article 45. fraternal benefit society), 보험교환소(article 62)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적형태는 주식회사(stock company)와 상호회사(mutual company)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부분별 영위회사에 대해 정의, 영위보험종목, 인가여부, 재무적요건(자본금, 잉여금, 예치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진입규제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2) 보험업 면허 종류

뉴욕주의 보험사업 면허는 32개 세부종목을 정의하고 있으면서 이를 인가단위로 하고 있다(제1113조 Kinds of insurance authorized). 이들 세부종목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생명보험(life), 2. 연금(annuities), 3. 상해의료보험(accident and health), 4. 화재보험(fire), 5. 각종재산보험(miscellaneous property), 6. 누수보험(water damage), 7. 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 유리보험(glass), 9. 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 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 동물보험(animal), 12. 충돌보험(collision), 13. 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 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5. 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 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 신용보험(credit), 18. 권원보험(title), 19. 자동차및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0. 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 21. 선주책임보험

37) 금융보증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 잔존가액보험, 보증보험(신원, 금융기관, 성능보증 제외), 신원신용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제6902조).

38) 캡티브 보험회사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건강보험, 유리보험, 모기지보험, 금융보증보험의 원보험과 재보험을 인수할 수 없다(제7003조). 또한 캡티브사는 산재보험(WC/EL),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원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캡티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은 순수캡티브는 10만 달러, 25만 달러(상호회사 20만 달러)이고, 그룹캡티브는 20만 달러, 50만 달러(상호회사 20만 달러)이다.

(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 22. 잔존가치보험(residual value), 23. 모기지보증보험(mortgage guaranty), 24. 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25. 금융보증보험(financial guaranty), 26. 갭보험(gap), 27. 상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28. 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29.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 30. 비자발적실업보험(involuntary unemployment), 31. 소득보상보험(salary protection), 32. 기타보험(substantially similar kind of insurance)

보험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보험사업을 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보험사업의 영위면허를 인가받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면허취득의 요건을 면제받지 않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1,000 달러,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각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제1102조(a)).

또한 뉴욕주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보험계약을 하나로 정의하고 보험종목별로 상세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처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금지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겸영이 가능한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로 보험종목을 제한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mpany)는 인가받은 기본보험종목을 1개 이상 영위할 수 있으며 비기본종목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 이상 영위할 수 있다(제4102조(b)). 손해보험회사의 기본 보험영위종목(basic kinds of insurance)은 4. 화재보험(fire), 7. 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 유리보험(glass), 9. 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 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 동물보험(animal), 13. 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 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주식회사만 허용, 15. 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 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 신용보험(credit), 20. 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 21. 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주식회사만 허용하고, 선주책임보험은 상호회사만 허용된다(제4101조(a)).

또한 기본보험이 아닌 종목(non-basic kinds of insurance)은 3.상해의료보험(accident and health)중 순수한 상해사망 및 의료비담보보험, 해약불가장해보험, 5.각종재산보험(miscellaneous property), 6.누수보험(water damage), 12.충돌보험(collision),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상호회사만, 19.자동차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0.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 21.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 22.잔존가치보험(residual value), 24.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26.갭보험(gap), 27.상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28.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뉴욕주는 손해보험회사에게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권원보험의 재보험과 해외에 소재한 리스크의 권원보험의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제4101조(d)).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일지라도 영위하는 보험종목에 대해 기본보험종목과 비기본종목에 대한 제한을 두어 다른 종목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제4102조(b)).

먼저 주식회사인 손해보험회사가 7.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유리보험(glass), 9.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동물보험(animal),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5.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신용보험(credit)을 영위하고 있으면 3.상해의료보험(accident and health) 중 순수한 상해사망 및 의료비담보보험, 해약불가장해보험, 6.누수보험(water damage), 12.충돌보험(collision), 22.잔존가치보험(residual value), 24.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26.갭보험(gap), 27.상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28.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30.비자발적 실업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4.화재보험만을 인수하는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각종재산보험(miscellaneous property), 6.누수보험(water damage), 12.충돌보험(collision),

19.자동차및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0. 해상및내륙운송보험(marine and inland marine)을 인수할 수 있다.

그리고 20.해상과 내륙운송만을 인수하는 손해보험회사는 12.충돌보험(collusion), 19.자동차및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1.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을 인수할 수 있다.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9.자동차항공기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29.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을 인수할 수 있다.

상호회사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7.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유리보험(glass), 9.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동물보험(animal),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5.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신용보험(credit)을 인수하고 있으면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을 인수할 수 있다.

생명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1.생명보험, 2.연금, 3.상해건강보험, 29.소득보상보험, 31.법률서비스보험, 재보험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문, 투자관리서비스, 보험회사 운영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4205조).

재보험의 경우에는 종목으로 열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업재보험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보험도 원수보험종목과 유사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상호교환보험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에 관계없이 인가받은 보험종목에 한정하여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타주 보험회사(foreign insurer)나 외국보험회사(alien insurer)도 동일하게 인가된 종목에 한해 재보험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특수한 리스크에 대한 재보험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원보증이나 보증보험을 인가받은 보험회사는 계약에 의한 성능보증과 관련한 재보험을 영위

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상해보험을 인가받은 보험회사는 항공기의 제조, 소유, 작동과 관련한 리스크의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제1114조).

3) 면허기간

주내 보험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 면허기간은 제한이 없이 사업을 철회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나 타주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는 7월 30일에 종료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제1103조).

4) 면허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①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

뉴욕주 보험법 제43절의 비영리법인 및 건강관리조직(HMO)을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는 사업인가 신청 시 NAIC의 ALERT(Accelerated License Evaluation Review Techniques)프로그램에 근거한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 Uniform Certificate of Authority Application)를 사용해야 한다. ALERT프로그램은 사업인가신청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전체에서 채택하고 있다.³⁹⁾

표준사업인가신청서(UCAA)는 해당 주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주에서 해당 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업참여신청서(Primary Application)가 있고, 다른 주에서 이미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업확대신청서(Expansion Application)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사업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사업인가내용변경신청서(Corporate Amendments

39)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http://www.naic.org/industry_ucaa.htm)

Application)가 있다.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및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사업참여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요건

종류	내용
면허신청서	신청 대상 보험종목을 특정하고 있어야 함
신청수수료	-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신청자는 면허신청서에 해당 주의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법정공탁금요건	-
상호 및 명칭의 인가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개요, 임시재무보고서 및 완성된 질문표로 구성되어 있음
NAIC 지주회사등록보고서	신청자가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직전년도 form B에 의한 등록 보고서 또는 NAIC 모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법정회원	주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신용평가기관, 예금자보호기관, 기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의무하고 있음
SEC 신고서(SEC filings) 또는 연결 GAAP재무보고서	신청회사, 그 모회사 또는 그 최상위지주회사가 과거 3년 이내 공모와 관련해 SEC에 신고 내지는 등록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 12개월간 8K, 10K, 또는 10Q의 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신고에 대해 추가 또는 수정을 포함한 신고서를 SEC로부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입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해야 함. 또한 신청회사, 그 모회사 또는 그 최상위 지주회사가 주식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직전년도 연결 GAAP 재무보고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부채자본비율보고서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5년, 10년, 20년 비율
자산관리협정 (Custody Agreement)	신청서에 신청회사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다른 조직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언급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신청회사가 자사주,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실제로 현물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사의 배타적 관리 하에 대여금고 안에 넣어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서에 이들 유가증권의 소유 및 (또는) 관리하는 조직들 간에 체결한 서면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 일체	대부분의 주에 공문서법(Public Records Act)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제출서류는 주별로 다름 신규신청의 경우 ① ~ ⑪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신청서, ② 기본정관, ③ 장 송달에 관한 임명, ④ 부속 정관, ⑤ 연차보고서, ⑥ 경영자의 토의, ⑦ 계리사 의견서, ⑧ 감사 완료된 재무보고서, ⑨ 시장행위검사, ⑩ 재무검사보고서, ⑪ 분기보고서
NAIC 사업관계자 선서	신청자의 임원, 이사, 핵심경영자, 신청회사 및 그 최상위 지주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기타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고유한 서류	뉴욕주에서는 별도의 고유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다른 주로부터 본사 이전 시 제출 서류	① 연차보고서(부속서류 첨부), ② 분기보고서, ③ RBC 보고서, ④ 독립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⑤ 검사보고서, ⑥ 적법증명서, ⑦ 재보험 체크리스트

자료: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http://naic.org/industry_ucaa_primary.htm)

② 정관

정관(corporate charter)은 보험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중 하나로 회사설립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01조(a)(4),(5)).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 사항으로 “회사명칭(상호회사인 경우 「상호」라는 문자가 필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취급하는 보험종목, 회사의 권한 행사 방법, 이사 수(권원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13명 이상일 것. 단, 허용자산이 15억 달러 미만인 생명보험회사는 9명 이상 가능), 이사 및 임원의 선임시기 및 방법, 결원 보충방법,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항상 이사의 과반수는 미국시민 권보유자와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은 뉴욕주 거주자이어야 함), 해당 회사의 제1회 연차총회일까지 재임하게 되는 이사의 성명 및 우편물 발송 주소, 회사의 존속기간(30년 이상일 것), 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해당회사의 사업 대상, 목적, 경영 및 지배구조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기초서류

뉴욕주는 보험사업의 면허를 받을 때 보통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면허심사절차

가) 면허절차

보험회사의 진입면허에 대한 심사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나 최종심사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심사기간도 없다.⁴⁰⁾ 그러나 감독당국은 보험사업 면허를 내주기 전에 주식회사인 경우는 납입자본금 및 초기잉여금 요건에 대한 검사를 한다.

그리고 상호회사인 경우는 회사가 본법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현금 또는 법에서 정한 투자에 필요한 초기잉여금의 보유 여부, 법에서 정한 보험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원명부의 사실 여부, 사원들이 보험료를 이미 현금으로 납입하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정대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심사한다(제1102조(e)(1)).

나) 면허허가기준

사업면허 허가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면허의 발생,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 뉴욕주 주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설립자 또는 이사가 어떤 문제라도 유죄판결을 받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업하려고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제1102조(d),(e)(2),(g)(1)).

40) NAIC의 UCAA에 의하면 신청서 접수 2주, 신청서 검토기간 90일을 규정하고 있다 (http://naic.org/industry_ucaa_primary.htm).

5) 공탁금 및 자본금요건

뉴욕주는 보험회사의 면허의 요건으로 납입자본금(minimum paid in capital)과 초기잉여금(minimum paid in surplus)을 영위하는 보험종목과 회사형태(legal form)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탁금(deposit)을 요구하고 있다.

가) 생명보험회사

① 공탁금

영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허가신청자는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적격 유가증권으로 감독관에게 공탁해야 한다(제1102조(e)(3)).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회사, 상해건강보험회사, 뉴욕주법률서비스회사는 20만 달러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제4206조).

② 자본금 및 잉여금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종목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음 <표 IV-4>와 같이 납입자본금 및 초기잉여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자본금 200만 달러가 필요하고 초기잉여금으로 400만 달러와 납입자본금의 200% 중 큰 금액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경우 (2)연금, (3)상해의료보험, (29)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금 또는 잉여금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제4202조(a)(1)).

〈표 IV-4〉 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보험종목	납입자본금	초기잉여금
(1)생명보험 (2)연금	200만 달러	400만 달러
(3)(i) 상해의료	20만 달러	10만 달러
(3)(ii) 소득보상	30만 달러	15만 달러

주: 법률서비스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자본금과 잉여금 없이 영위가 가능함.

〈표 IV-5〉 생명보험회사(상호회사)의 초기잉여금 및 최저잉여금 요건

구분	보험종목	초기잉여금	최저잉여금
①	(1)생명보험	15만 달러	10만 달러
②	(2)연금	20만 달러(생명보험 허가받은 경우 5만 달러 추가)	15만 달러(생명보험 허가받은 경우 5만 달러 추가)
③	(3)(i)상해의료	30만 달러	20만 달러(82. 7. 1 이후 면허) 10만 달러(82. 6. 30 이전 면허)
④	(1)생명보험, (3)(i)상해의료	45만 달러	30만 달러(82. 7. 1 이후 면허) 20만 달러(82. 6. 30 이전 면허)
⑤	(3)(ii)해약불가 소득보상 (2)법률서비스	상기 ① ~ ④의 적용 가능 최고 금액에 10만 달러 이상을 더한 금액	-

상호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보다 훨씬 낮은 초기잉여금(initial surplus)⁴¹⁾ 및 최저잉여금(minimum surplus)을 요구하고 있고 종목별 요구금액도 주식회사에 비해 더 세분화하고 있다. 상호회사가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요건은 〈표 IV-5〉와 같다(제4208조).

41) 초기잉여금은 사업면허를 받기 위해 납입된 잉여금을 의미하며 최저잉여금은 사업면허 이후에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의미한다(제4208조(2)).

나) 손해보험회사

① 공탁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상호회사를 불문하고 하나의 보험종목을 영위할 때는 감독기관에 적격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7.도난보험(burglary and theft), 8.유리보험(glass), 9.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10.엘리베이터보험(elevator), 11.동물보험(animal), 13.대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injury liability), 14.대물배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 15.산재및사용자배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16.보증보험(fidelity and surety), 17.신용보험(credit) 중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으로의 50만 달러, 납입자본금, 초기잉여금 중 적은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보험종목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경우에 최저공탁금은 40만 달러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인수하거나 미국 외에 소재하는 보험물건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300만 달러 이상을 감독당국에게 공탁해야 한다(제4104조).

② 자본금 및 잉여금

주식회사 형태의 손해보험회사는 각각의 종목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IV-6>와 같은 납입자본금 및 초기잉여금이 필요하다(제4103조). 보험종목별 요건은 종목별로 적용하는 A그룹과 화재보험과 해상 및 운송보험에 적용하는 B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A그룹의 경우 개별인가 형태로서 각각 별도의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 종목별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A그룹에 속하는 보험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B그룹의 종목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가받은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재보험을 영위하거나 해외 소재 물건을 인수하

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잉여금을 최저 3,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제4103조(a)(4)).

〈표 IV-6〉 손해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단위: 만 달러)

구분	해당 종목	납입자본금	초기잉여금	
그룹 A	(7)도난	30	15	
	기본 종목	(8)유리, (9)보일러기계, (10)엘리베이터, (11)동물, (14)대물배상책임	각 10	각 5
		(13)대인배상책임, (15)산재	50	25
		(16)보증	90	45
		(17)신용	40	20
		기타 종목당 추가금액	10	5
		비 기 본 종 목	(3)(i)상해건강, (3)(ii)소득보상, (6)누수, (12)충돌	각 10
	(22)잔존가치		200	100
	(24)실업신용		40	20
	(26)(B)갭(차량채무자)		20	10
	(26)(A)갭(차량채권자), (26)(C)갭(차량외채권 자), (26)(D)갭(차량외채무자)		각 60	각 30
	(27)상품보상		30	15
	(28)서비스계약보상		200	100
	(29)법률서비스보험		0	0
	(30)실업	40	20	
소계		1,060	530	
그룹 B	(4)화재, (20)해상및내륙운송	각 50	각 50	
	소계	100	100	
합계(그룹 A와 B 영위 시)		1,160	630	

- 주: 1) 4.화재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6.누수보험(water damage)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2) 4.화재보험 혹은 20.해상및운송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12.충돌보험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3) 4.화재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5.기타재산보험, 6.누수보험, 12.충돌보험, 19.차량및항공기
 기체보험, 20.내륙운송보험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4) 20.해상및내륙운송보험을 허가받은 경우 12.충돌보험, 19.차량및항공기기체보험, 21.선주
 책임보험에 대한 추가자본금은 불요.

자료: 뉴욕주 보험법 제4103조 참조하여 정리함.

뉴욕주는 권원리스크(title risk), 모기지보증리스크(mortgage guaranty risk), 금융보증리스크(financial guaranty risk)에 대해 단일종목(mono line)으로만 영위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설립시와 보험사업 영위하고 있는 동안의 자본금과 잉여금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권원보험회사는 설립시에 납입자본금 50만 달러, 초기잉여금 25만 달러가 필요하고 영업중에는 계약자잉여금 50만 달러를 유지해야 한다. 모기지보증보험회사는 납입자본금 100만 달러, 초기잉여금 100만 달러가 설립시에 필요하고, 영업중에는 납입자본금 100만 달러, 납입잉여금을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보증보험회사는 시장에 진입시에 납입자본금 25만 달러, 초기잉여금 725만 달러가 필요하며, 영업중에는 납입자본금 25만 달러, 계약자잉여금 625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 손해보험회사가 지점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을 신탁(trusted surplus)해야 하는데 그룹 A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의 150%, 그룹 B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200% 이상의 잉여금을 신탁해야 한다.

〈표 IV-7〉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의 인가 요건

(단위: 명, 개, 달러)

구분	회원수	청약수	독립된 리스크수	보험 계약수	초기 잉여금	최저 잉여금
(4) 화재	50	300	300	-	30만	20만
(7) 도난	20	20	200	20	30만	20만
(8) 유리	20	20	300	20	15만	10만
(9) 보일러기계	20	20	20	20	30만	20만
(10) 엘리베이터	20	20	300	20	15만	10만
(11) 동물	20	20	300	20	15만	10만
(13) 대인배상	100	100	500	-	50만	40만
(15) 산재 및 사용자배 상책임보험	40	40	2,500	-	50만	40만
	30	30	5,000	-	50만	40만
	20	20	7,500	-	50만	40만
	10	10	10,000	-	50만	40만
(16) 보증	-	-	-	-	150만	100만
(17) 신용	20	20	2,000	20	75만	50만
(20) 해상및내륙운송	50	300	300	-	100만	50만
(21) 선주책임	20	20	200	-	50만	50만

자료: 뉴욕주 보험법 제4107조(a)(1) 정리.

상호회사 형태의 손해보험회사는 사업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재무적 요건을 초기 잉여금(initial surplus)과 최저잉여금(minimum surplus)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종목별로 회원 수, 리스크 수, 계약 수도 정하고 있다(〈표 IV-7〉 참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보험회사는 구성규모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표 IV-8〉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의 잉여금 요건

(단위: 달러)

구분	종목별	초기잉여금	최소잉여금
그룹 A	(7)도난, (9)보일러기계	각 10만	각 10만
	(8)유리, (10)엘리베이터, (11)동물	각 5만	각 5만
	(13)대인배상, (15)산재, (17)신용	각 30만	각 30만
	(16)보증	90만	90만
그룹 B	(4)화재	30만	20만
	(20)해상및내륙운송	100만	50만
그룹 C	(3)(i)상해건강, 3(ii)소득보상	각 10만	각 10만
	(22)잔존가치	300만	200만
	(24)실업신용	30만	30만
	(26)(B)갭(차량채무자)	30만	20만
	(26)(A)갭(차량채권자), (26)(C)갭(차량외채권자), (26)(D)갭(차량외채무자)	각 90만	각 60만
	(6)누수, (12)충돌, (14)대물배상	각 5만	각 5만
	(27)상품보상	30만	15만
	(28)서비스계약보상	200만	100만
	(30)실업	40만	20만

자료: 뉴욕주 보험법 제4107조(b) 정리.

또한 상호 손해보험회사가 위의 표에 명시된 보험종목을 영업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룹 A, 그룹 B에 속하는 보험종목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초기잉여금과 최저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 A의 영업인가를 받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룹 C의 보험종목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종목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외의 특수한 경

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먼저 상호회사가 19.자동차및항공기기체 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60만 달러의 최저잉여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가받은 상호회사가 재보험과 해외소재물건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3,500만 달러의 계약자잉여금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외국상호손해보험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4107조).

다. 퇴출규제

1) 규제내용⁴²⁾

미국의 경우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은 주 정부에서 감독, 관리한다. 즉 보험회사의 퇴출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에서 관할하므로 보험회사는 연방정부의 파산법에 의거해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인수와 합병, 자발적 퇴출 및 비자발적 퇴출 등 퇴출의 형태를 막론하고 주 보험감독청의 동의를 필요하다. 그러나 주별로 퇴출규제를 함에 따라 주별로 퇴출비용과 시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주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모델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최초로 제정된 모델법은 NAIC가 1978년에 보험회사 갱생 및 청산모델법(NAIC's Insurers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Model Act)을 제정하여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33개주가 채택하고 있다. 다른 모델법은 NAIC의 전신인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가 1939년에 제정한 통일보험회사청산법(Uniform Insurers Liquidation Act)이 있으며 이법은 뉴욕주를 비롯한 19개주가 채택하고 있다.⁴³⁾ 미국 보험회사의 퇴출절차를 정리해보면 1)정리대상 보험

42) 김현수(2006).

43) 알라바마, 아리조나,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괌, 일리노이, 루지아나, 메릴랜드, 메사추세츠(손해보험회사만),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회사에 감독관 파견(seizure of insurer), 2)보험회사의 갱생절차 개시, 3)갱생이 되지 않은 경우 청산절차 진입, 4)보험회사의 정리 및 자산매각, 5)보험채권 지급, 6)부동산의 정리(closing of estate) 순이다.

〈표 IV-9〉 미국 보험회사의 갱생·청산 원인

적용사유	국내사	타주보험사	외국사
지급불능(insolvency)	모두 적용	○	○
재무자료제출거부		○	○
자본금 또는 잉여금 확충 명령 미이행		○	×
전인가없이 계약의 포괄이전(bulk transfer)		○	○
검사결과 계약자, 채권자, 공공에 위험한 경우		○	○
법규를 위반한 경우		○	○
검사의 거절		○	○
법인설립 및 진입 시 인가요건 유지 실패		×	×
1년 이상 영업중지		×	×
자발적 청산 결의		○	○
관재인, 강제관리인 임명신청의 대상인 경우		○	○
이사, 주주, 사원의 다수가 결의한 경우		○	○
법인격 취득 후 1년 이내 설립하지 못한 경우		×	×
감독당국요청 임원, 이사 해임을 거부한 경우		○	×
적기시정조치(ACL,MCL)를 받은 경우		○	×

주: 타주보험회사와 외국사지점은 자산보전 또는 청산명령을 내리게 됨.

뉴욕주의 경우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등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허가 취소, 면허의 제한, 보험료금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제1104조), 그리고 보험회사가 갱생이나 청산(제7401-7436조),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제7101-7121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종류에 따라 갱생 절차의 원인은 다른데 이를 요약하면 〈표 IV-9〉와 같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주 보험감독청에 퇴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각 채권자 그룹의 50%와 각 채권자 그룹 부채비중의 75%가 동의

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 Grace 외 2인(2002), pp. 22~23.

해야 자발적 청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그룹에는 (1)모든 보험계약자 (2)보험계약자 외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3)그 외 법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가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모든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run-off⁴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assumption reinsurance agreement)을 이행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으로부터 자발적인 청산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M&A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자발적 청산과 유사한 절차와 규제를 받는다. 다만 재정적 문제로 M&A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것을 run-off with 재보험 포트폴리오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

비자발적 청산의 경우에는 RBC규제⁴⁵⁾가 중심이다. RBC규제에서는 보험회사의 총수정자본(Total Adjusted Capital)이 RBC기준보다 하락하게 되면 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어있는데 4단계 제재수준이 있다.

〈표 IV-10〉 미국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조치단계	RBC비율	조치사항
Company Action Level (자율조치)	15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종합적인 재무계획서 제출 • 종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규제 조치수준 적용
Regulatory Action Level (규제조치)	100~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시정계획서를 제출 • 보험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의 영업 및 경영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적절한 업무개선 명령
Authorized Control Level (감독당국통제)	7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 관리 가능
Mandatory Control Level (강제통제)	7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 보험회사에 대한 조정관리 의무적으로 실행

주: 적정수준은 200% 이상임.

44) run-off란 신규영업은 하지 않고 기존 보유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5) 금융보증보험회사, 권원보험회사는 RBC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보험법에서 보증한도를 담보종목별, 하나의 위험에 대한 보증한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RBC비율이 150~200%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자율조치단계에 해당하며 현재의 재무적 상황을 극복할 종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본전입 계획과 현 재정문제 극복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계획서대로 진행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향후 재정상태 전망, 영업의 질적 내용 및 경영상의 문제점도 제출해야 한다. 수정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적기시정단계인 규제조치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규제조치단계에서는 종합계획서 제출뿐만 아니라 주보험감독청의 검사 대상이 된다. 이 검사와 추가적인 분석 후에 주보험감독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 번째 감독당국통제단계는 주보험감독청이 해당 보험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보험회사 관리는 파산상태에 있는 보험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정상이지만 향후 파산이 확실시되는 보험회사도 포함한다. 마지막 단계인 강제통제단계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를 직접적으로 강제관리하는 단계로, 보험회사를 재건(rehabilitation)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또는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서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보험회사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기준은 통상 RBC규제 등이 중심이 되지만 주 보험법에서는 재정적 이유 외에도 주 보험감독청이 회사 내 부정행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회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은 주 정부에서 RBC규제를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퇴출 가능성이 있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분석, 조사골격은 FAST(Financial Analysis and Solvency Tracking)시스템이다. FAST시스템은 재무분석이 중심이 되는 IRIS비율과 FAST Scoring System 그리고 보험회사프로파일시스템(Insurer Profile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RBC규제는 자기자본규제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퇴출 의사결정 지표로 사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FAST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실가능보험회사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보험회사를 해당 주보험감독청에 조기경보하고 있다.

Scoring System은 FAST시스템의 핵심으로 약 25개의 재무비율과 변수를

사용하여 각 비율에 대해서 일정한 가중치를 배정하여 총 FAST Score를 계산한다. 이 때 사용하는 변수는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가중치가 적용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 FAST Score를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추가분석을 위한 즉각조사대상(Immediate), 우선조사대상(Priority) 및 통상조사대상(Routine)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FAST Score 계산 및 우선순위 선정은 객관적인 통계분석 결과 외에 감독당국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 등도 고려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부실보험회사가 선정되고 RBC기준에 의해 청산되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회사 대신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각 주의 보험보증기금은 대형 기업계약자보다는 개인 및 중소 법인계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퇴출하는 보험회사가 가계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경우 정부의 개입은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경우 보험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칠 때 계약자 등에 대한 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별로 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다(제7434조, 제7435조). 손해보험회사의 자산배분우선순위는 1순위(class 1)가 재건 및 청산, 자산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 비용, 2순위는 연방 및 지방정부에 대한 제3자배상청구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기금관련비용이며, 3순위는 2순위에서 제외된 연방정부의 청구권이고, 4순위는 개인당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임금, 5순위는 지방정부의 2등급 이외의 청구권, 제 6순위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적인 채권, 7순위는 8등급과 9등급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 8순위 후순위채권, 9순위 주주이다.⁴⁶⁾

46) 생명보험회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class 1)는 갱생 및 청산, 자산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 비용 및 보증기구비용, 2순위는 개인당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임금, 3순위는 지급불능으로 확정된 이후 90일 이전의 통상의 업무과정동안 공급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 4순위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기금적립협정계약의 청구권 및 보증기구의 모든 청구권, 5순위는 연방 및 지방정부에 벌금, 몰수권 등, 6순위는 일반채권자 청구권, 7순위는 후순위채권, 8순위는 주주(법 제7435조).

2) 계약자보호제도⁴⁷⁾

NAIC가 주축이 되어 각 주별로 설립된 생·손보별 보험보증기금을 통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한다. 전미생명건강보험보증협회(NOLHGA: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 보호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미손해보험보증기금(NCIGF: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은 각 주의 손해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보증기구의 가입방식은 인가받은 주의 보증기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뉴욕주는 생명건강보험보증기구를 제7501~750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손해보험보증기구는 제7601~76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보증기구는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와 자동차차량배상보장기구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증기구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별로 상이하다. 보증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연금이 있으며, 비보증증권이나 연금,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법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불능 및 청산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잔여자산이나 감독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주법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불능 또는 청산에 대한 결정 → 보증기금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자료 이전 → 파산보험회사의 잔여자산 또는 주 감독당국의 기보유현금 등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

뉴욕주는 주내 거주자의 원수보험계약만 보호하며, 생명건강보험보증기구는 개인 보험계약자 및 그 수익자와 단체생명보험 또는 단체건강보험에 의해 발행된 보험증권에 대해 1인당 50만 달러를 보호한다.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는 산재, 잔존가치보험, 모기지보험, 금융보증, 상품보상보험 등은 제외하고 청구건 1인당 100만 달러를 보상하고 미경과보험료는 전액을 보증한다.

47) 보험연구원(20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pp. 260~261.

보증기구의 보증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증기구의 운영비와 파산재원비용으로 나누어 사전 각출하고 5억 달러가 될 때까지 낸다. 운영비는 허용자산규모를 3등급으로 나누어 정액을 1년에 1회 내고, 파산재원은 3년 평균 보험료의 0.5%를 분기별로 각출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는 분기보유보험료의 0.5%, 자동차차량배상보장기구는 0.3%를 낸다. 또한 이들의 목표기금액은 각각 1.5억 달러, 준비금의 15%이다.

〈표 IV-11〉 뉴욕주 보험계약자보호제도

구분	생명보험보증기구	손해보험보증기구	
기구	생명보험건강보증기구	화재특종보험보증기구	자동차차량배상보장기구
대상 보험	생명, 연금, 건강, 기금적립(변액 중 비보증 제외)	산재, 잔존가치, 모기지, 금융보증, 상품보상보험 등 제외	자동차차량손해배상
보장 한도	1인당 50만 달러	1청구당 100만 달러, 미경과보험료전액	
보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비(자산기준 1회) 0.5억 이하: 200달러 0.5~10억: 1,000달러 10억 초과: 2,000달러 파산기금: 3년 평균 보험료의 0.5%(분기) 	분기보험료의 0.5%	분기보험료의 0.3%
목표 기금액	5억 달러	1.5억 달러	준비금의 15%

자료: 뉴욕주 보험법(제7501조~7505조, 제7601~7614조) 정리.

2. 일본

가. 보험회사 현황

일본의 보험산업은 규제완화 등을 계기로 시장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형태의 진입을 허용하고 가격자유화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진입규제의 경우 지주회사의 도입,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입 허용, 소액단기보험사업자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거품붕괴로 인해 부실해진 보험회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입됨에 따라 시장의 비규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시장구조의 재편이 일어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위사의 집중도⁴⁸⁾는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5개사의 점유 비율을 보면 2000년에 63.5%였으나 많은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으로 2009년에 44.6%로 크게 낮아졌다. CR1과 CR3도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일본 보험산업의 집중도 추이

(단위: %, 억 엔)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생명보험	CR1	22.3	21.3	17.9	17.5	15.8	14.8	14.1
	CR3	48.9	45.9	40.3	39.9	38.4	31.2	32.7
	CR5	63.5	59.6	56.1	54.1	55.2	42.0	44.6
	보험료	258,586	255,118	270,027	277,662	309,096	262,292	242,706
손해보험	CR1	19.0	20.1	25.3	25.4	26.1	25.1	25.2
	CR3	41.2	54.9	61.0	60.9	62.3	60.1	61.8
	CR5	55.3	76.2	81.8	81.4	83.3	80.5	82.0
	보험료	69,171	73,289	74,572	75,846	73,334	72,167	80,709

자료: 일본 보험연구소(각 연도), 『Insurance 생명보험, 손해보험통계호』를 이용하여 작성함.

48) 우체국보험이 생명보험의 상위1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안한 경우에는 상위사의 집중률이 더 높아진다. 2008년과 2009년의 CR1은 23.1%, 22.0%이고, CR3는 46.4%, 45.7%이며, CR5는 61.7%, 63.0%로 나타나 시장구조가 2000년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손해보험산업은 규제완화 이후 오히려 시장이 더 크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실보험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대형사 중심으로 M&A를 통한 지주회사체제로의 대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현재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CR5)이 전체시장의 82.0%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사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CR1의 경우 2000년 19.0%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5.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CR3, CR5는 CR1의 증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위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재편의 원인 중의 하나는 보험회사의 빈번한 진입 및 퇴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10년 현재, 47개사 중 국내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회사는 43개사이다. 이중에서 국내자본으로 운영 중인 회사는 19개사(이중 상호회사 5개사)가 있으며 외국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외자계회사는 15개사,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진출한 회사는 9개사이다. 외국사의 국내 지점형태로 영위하는 4개사에 불과하다.

〈표 IV-1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현황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국내사	회사수	43	44	39	38	36	35	34	34	38	42	43	43
	진입	1	2	3	3	2	1	1	-	4	4	3	-
	퇴출	1	1	8	4	4	2	2	-	-	-	2	-
외국사	회사수	4	4	4	4	4	4	4	4	4	4	4	4
	진입	1	-	-	-	-	-	-	-	-	-	-	-
	퇴출	-	-	-	-	-	-	-	-	-	-	-	-
전체사	회사수	47	48	43	42	40	39	38	38	42	46	47	47
	진입	2	2	3	3	2	1	1	-	4	4	3	-
	퇴출	1	1	8	4	4	2	2	-	-	-	2	-
진입률(%)	-	3.1	4.7	5.1	3.7	1.9	2.0	0.0	8.3	7.7	5.9	0.0	
퇴출률(%)	-	1.6	12.5	6.8	7.4	3.8	4.1	0.0	0.0	0.0	3.9	0.0	

자료: 일본 金融庁(각 연도), 『金融庁の1年 平成21 事務年度版』.

손해보험회사의 구성은 생명보험회사와는 크게 다르다. 2010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 52개사 중에서 국내법인 형태의 회사는 30개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자본에 의한 회사 22개사(상호회사 없음), 외자계회사 4개사,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2개사, 재보험전업사 2사가 있다. 외국사의 지점형태의 영위회사는 총 22개사가 있다.

〈표 IV-14〉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현황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6
국내사	회사수	36	38	33	30	29	28	26	26	30	30	30
	진입	1	3	4	5	2	1	2	-	4	-	1
	퇴출	-	1	9	8	1	2	4	-	-	-	1
외국사	회사수	28	26	26	24	24	21	22	22	22	21	21
	진입	1	-	1	-	2	1	1	1	2	-	1
	퇴출	3	2	1	2	2	4	-	1	2	1	1
전체사	회사수	64	64	59	54	53	49	48	48	52	51	51
	진입	2	3	5	5	4	2	3	1	6	-	2
	퇴출	3	3	10	10	3	6	4	1	2	1	2
진입률(%)	-	4.7	7.8	8.5	7.4	3.8	6.1	2.1	12.5	0.0	3.9	2.0
퇴출률(%)	-	4.7	15.6	16.9	5.6	11.3	8.2	2.1	4.2	1.9	3.9	0.0

자료: 일본 金融 庁(각 연도), 『金融 庁 の 1 年 平成21 事務年度版』.

일본 보험시장의 진입·퇴출 특징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에 이은 저금리상황의 지속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산처리의 방법으로 합병과 보험회사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실회사가 정리되면서 시장의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보험회사가 신설되었다. 생명보험은 지점형태보다는 합작보험회사형태로 많이 진입한 반면에 손해보험은 전부 지점형태로 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지주회사로는 밀레아지주회사(동경해상일동화재, 동경해상일동안신생명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파이낸셜생명보험, 일신화재, 이데저인손해보험, 밀레아일본후생소액단기보험), NKSJ지주회사(손보저팬, 손보저팬히마와리생보,

손보저팬DIY생명보험, 세존자동차화재, 일본홍아손보, 일본홍아생보), T&D지주회사(대동생명, T&D파이낸셜생보, 펫&패밀리소액단기보험), MSAD지주회사(삼성주우해상, 삼성주우해상기라메끼생보, 아이오이생보, 삼성주우해상프라이머리, 삼성다이렉트손보, 아이오이니세이동화손보), 소니파이낸셜지주회사(소니생보, 소니손보, 소니라이프에이코), 푸르덴셜지주회사(푸르덴셜생명, 지블렐타생명, 푸르덴셜파이낸셜생명), 약사저팬지주회사(약사생명, 약사손보, 넥스티어생명)가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회사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진입규제

1) 보험업의 구분

일본은 보험업을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생명보험업 면허의 기본보험업무 범위가 아닌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조). 그러나 다른 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이거나 지방공공단체가 주민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업 등은 보험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업 면허종류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의 종류는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업을 금지⁴⁹⁾하고 있다(보험업법 제3조).

49) 생명보험업이 비교적 정확한 통계적 근거에 기초하여 장기계약을 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손해보험업은 추정을 가미한 손해율에 기초하여 단기계약을 인수하기 때문

생명보험업의 면허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①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을 인수하게 된다. 다음에 게시하는 보험도 영위할 수 있다(국내에서 말하는 제3보험업에 해당된다). ② 다음의 원인을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이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당해인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도 인수할 수 있다. 여기서 원인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상태, 손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출산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상태, 노화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상태(그러나 사망은 제외한다),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치료 등을 수반하는 행위(조산사가 행하는 조산, 유동정복사가 행하는 시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마, 마사지사 행하는 시술)”가 해당된다. 또한 생명보험업은 ③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한 ②에 대한 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의 영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①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을 인수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업의 ②를 인수하거나, ③ 생명보험의 ① 중 해외여행기간 동안 생긴 사망 또는 질병 사망담보를 인수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증증권업무⁵⁰⁾는 손해보험의 ①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거법 없는 다수 공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설된 소액단기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2조18항). 소액단기보험업은 피보

에 인수리스크와 보험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해 생보의 장기자금을 손보의 단기 거대리스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岡田豊基(2008), p. 13.

50)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무 중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당해대가를 결정하고 준비금을 적립하며 재보험을 이용하여 위험분산을 행하는 등 다른 보험의 고유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 엔 이하⁵¹⁾에 대해 보험기간 2년 이내(손해보험업 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로 하는 보험업으로 연간보험료가 50억 엔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액단기보험업자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한 보험, 만기환급금을 지불하는 보험, 특별계정이 의무화된 운용실적연동형보험, 재보험, 보험료 등 기타급부금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 지급하는 보험으로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장관은 소액단기보험사업자의 등록을 주식회사나 상호회사가 하지 않거나 자본금 또는 기금이 1,000만 엔 미만인 경우, 순자산액이 1,000만 엔 미만인 경우, 정관의 규정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초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다.

3) 면허신청절차

보험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청장관을 경유하여 내각총리장관에게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심사⁵²⁾를 의뢰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4조). 내각총리장관은 신청서류에 대해 보험업법 제5조에서 정한 면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일로부터 120일⁵³⁾ 이내에 면허를 부여

51) 사람의 사망의 경우 300만 엔, 질병 및 상해담보는 800만 엔, 중증장해보험 300만 엔, 특정중증장해보험 600만 엔, 상해사망보험 600만 엔, 손해보험업 기본보험 1,000만 엔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6).

52)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5조(예비심사) 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 청장관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이 부령에 정하는 것에 준한 서류를 금융청 장관 또는 재무국장 혹은 후쿠오카 재무 지국장에 제출해 예비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53)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6조(표준 처리 기간) 내각총리대신 등은 법, 령 또는 이 부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각 호의 면허,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신청(예비 심사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이 그 사무소에 도달했을 때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노력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면허 120일.

12.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방법서등에 정한 사항의 변경의 인가 90일.

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에 조건을 달거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5조).

면허신청서류(〈표 III-15〉 참조)로는 상호 및 명칭,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성명, 받을 면허의 종류, 본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과 더불어 사업방법서⁵⁴⁾, 보통보험약관⁵⁵⁾,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⁵⁶⁾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제6조(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는 이유서,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창립총회를 소집한 경우 의사록, 사업계획서, 최근 일계표 및 최근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임원 및 감사의 이력서, 외부 회계법인 참여자의 이력서, 주요 주주의 상호, 명칭, 성명, 보유의결권 수를 기재한 서류, 생명보험업의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가 자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사무소를 기재한 서류, 당해 자회사의 관련된 서류(자회사의 임원의 성명, 업무내용, 최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변동계획서, 기타 최근 재무상황이나 업무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생명보험업의 면

54) 사업방법서에는 피보험자 및 보험의 목적의 범위 보험의 종류(재보험 포함),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 및 보험의 목적의 선택 및 보험계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과 보험료환급금 등의 지불에 관한 사항,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보험의 종류,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취급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보험계약의 종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종류 및 평가방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는 날짜), 적립계정에 대한 사항(적립계정을 설정하는 보험계약 종류, 보험료 중 적립계정으로 경리하는 내용, 적립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

55)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면하는 사유,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업무를 면하는 사유, 보험자로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방법 및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항,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한 경우 당사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56)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보험료 계산방법,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환급금액 및 기타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해야 할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계약자가액)의 계산방법 및 기초자료, 사원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미경과보험료 계산방법, 보험금액,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순보험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자회사의 업무, 재산 및 손익상황을 기입된 서류), 제3 분야보험의 원수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대한 보험계리사의 확인서류, 사업계획서에는 보험모집계획 및 수지를 예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아니었던 주식회사가 종전의 목적을 변경하여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업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 보험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한 주총회의록, 종전의 정관 및 면허신청 시 현존하는 거래의 성질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최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변동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표 IV-15〉 일본 보험회사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분	세부서류
신청서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자본금, 면허종류, 본점 소재지 • 예상실적: 주요계정, 순자산 계정, 수지견적사항, 경영제지표(자산 이익률, ROA, 손해율, 지급여력비율 등)
기초서류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첨부서류	이유서, 회사등기사항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최근일계표 및 재산과 손익 기재자료, 임원 및 감사의 이력서, 위탁회계법인 이력서
	주요주주의 상호, 명칭, 성명, 보유의결권 수 기재서류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종업원 확보상황 서류
	신청자가 자회사를 가진 경우 관련서류(5종)
회사법 서류	기타 서류(상근임원의 적격성과 사회적 신용 여부)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
	외부 회계법인사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상호회사의 경우 감사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모회사 서류	모회사와 당회사의 거래관계 증명서류 등 2종
조직도	
등록면허세납부서	
상업등기법	관련서류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서 사본	

4) 면허심사기준

일본은 보험업법상에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보험업법제5조). 먼저 면허신청자는 보험회사의 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출서류가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있는지도 심사⁵⁷⁾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방법서 심사기준(시행규칙 제11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심사기준⁵⁸⁾(시행규칙 제12조)을 정하고 있다.

5) 영위형태 및 자본금요건

일본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소액단기보험사업자, 외국사 지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하며,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종목별허가제가 아닌 업 단위로 영업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요건도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에 대해 최저자본금(기금)을 10억 엔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간의 차이는 없다. 또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상호에 손해보험회사인지 생명보험회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생명보험업 면허를 받은 회사는 생명보험이 상호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업 면허를 받은 경우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

57)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총리장관의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제123조제1항, 제124조), 내각총리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변경내용이 인가된다(법 제125조제1,2항).

58) 자동차보험의 위험세분화는 연령, 성별, 운영경력, 차량의 용도, 연간 주행거리, 지역, 자동차 종류, 안전장치의 유무, 자동차 소유대수로 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험, 재보험, 손해보험 중의 하나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3조)

소액단기보험사업자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본금 또는 기금은 최저 1,000만 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액단기보험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3억 엔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보험회사에 비해 최저자본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라 공탁금⁵⁹⁾을 공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보험업법 제272조의 5). 그러나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내각총리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액에 대해서 공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한도는 “공탁할 금액-1,000만 엔”이다.

외국사의 지점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와 유사한 면허가 필요하며 계약자보호를 위해 2억 엔 이상을 공탁⁶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사채권, 기타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6) 임원 및 대주주 요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회사법상의 법정 결격사유(제331조제1항, 제402조제4항)가 적용됨과 동시에 보험업법에서 특별한 적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원은 경영관리를 정확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의 임원이 경영관리능력과 사회적신용 요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59) 사업초년도에는 1,000만 엔을 공탁하며, 차년도부터는 1,000만 엔의 공탁금에 1년간의 보유보험료(수입보험료 + 재보험환급금 - 재보험료 - 해약환급금)의 5%를 추가로 공탁해야 한다.

60) 조건부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사지점은 1,000만 엔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조건부라는 의미는 일본과 미국과의 상호협정 및 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하여 시설, 지역, 일본 국내에서 있어 미군지휘에 관한 협정에 의한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면허를 말한다.

우에는 보험면허에 영향(보험업법 제5조1항2호)을 미치고 해임명령(보험업법 제133조제1호)을 내릴 수 있다.

주주의 적격성요건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건전성과 출자능력이 있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유의결권 대량보유자에게 주식보유현황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271조의3), 인가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유의결권대량보유자는 하나의 보험모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의결권으로써 보유목적이 보험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총주식의 2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보험주요주주)는 법 제 271조의10에 의거 내각총리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재무나 영업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추측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주요주주의 기준이 보유주식수 15%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 퇴출규제

1) 규제내용

일본 보험회사의 퇴출은 법인의 해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회사의 해산원인으로는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주총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면허취소이다. 보험회사가 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각총리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때 인가신청 시에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이유서, 주총의사록,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 해산공고내용 등이다.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인가를 받은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퇴출은 파산원인을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자발적인 퇴출과 비자발적인 퇴

출로 구분할 수 있다.

비자발적인 퇴출은 합병 또는 해산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해당되며, 나머지의 사유(해산명령, 면허취소, 파산 등)는 강제적 퇴출에 해당된다. 먼저 비자발적인 퇴출은 자기자본규제(솔벤시마진)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본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표 IV-16〉 일본의 적기시정조치 내용

구분	자기자본비율	감독당국 명령 조치
-	200% 이상	•특별한 명령조치 없음(재무적으로 안정하다고 봄)
제1구분	100% 이상 200% 미만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및 실행
제2구분	0% 이상 1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금 등의 지급능력충실과 관련된 계획제출 및 실행 •배당금지 및 기타 억제, 계약자배당 및 사원잉여금 분배 금지 •신보험계약 관련 보험료계산방법의 변경, 사업비 억제 •임원상여금지 등 사업비 억제, 일부 자산운용 금지 •일부 영업소 업무축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일부 영업소, 사무소의 폐지 •자회사 등 업무의 축소,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부수업무, 타법에 의한 업무 등에 축소, 신규취급의 금지 •기타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조치
제3구분	0% 미만	•기한을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2) 보험계약자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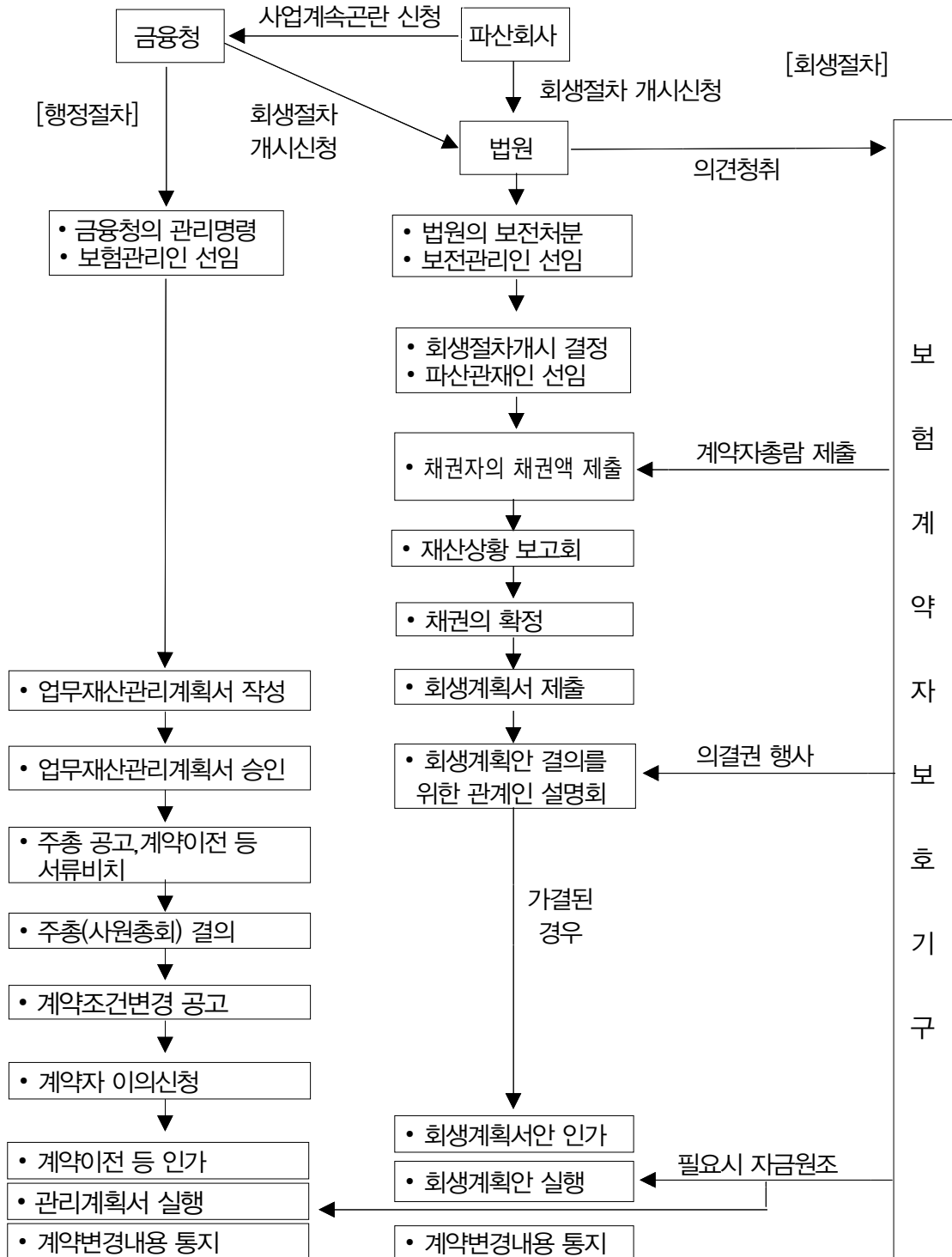
보험회사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업무가 전부 정지되고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보험업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부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40조의2). 이에 의하면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 보험회사가 업무 및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총리장관에게 보험금액의 삭감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각총리장관은 신청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기준일 현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보험금 삭감의 조치만 적용된다.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처리방법은 보험업법에 의한 방법과 회생절차법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를 보면 <그림 IV-1>과 같다. 먼저 보험업법에 의한 퇴출절차를 거친 사례를 보면 일산생명, 동방생명, 제일화재, 제백생명, 대정생명 등이 있으며, 파산처리과정에서 책임준비금을 10%씩 삭감하고 예정이율⁶¹⁾도 해당회사의 이차 역마진상태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하여 인하였다. 2000년 이후에 파산한 천대전생명, 협영생명, 동경생명, 대성화재, 대화생명 등 보험회사는 회생절차법에 의해 파산처리 되었으며 이들 회사도 준비금을 삭감하거나 예정이율을 인하였다.

61) 보험업법 제240조의2에 의거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정이율의 인하는 시행령 제36조의3)에서 최저 연 3%로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한 후에는 제한이 없으며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IV-1〉 일본 파산보험회사의 처리절차



자료: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http://www.jili.or.jp/consumer_adviser/pdf/chapter10.pdf).

〈표 IV-17〉 일본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조건 변경 현황

회사명 (파산일)	채무초과액/ 지원금액	근거법	계약조건변경		퇴출방식
			준비금삭감	예정이율인하	
일산생명 (97. 4. 25)	3,029억 엔/ 2,000억 엔	보험 업법	-	2.75%	계약이전 (푸르텐셜)
동방생명 (99. 6. 5)	6,500억 엔/ 3,663억 엔	보험 업법	10%	1.5%	계약이전 (GE파이낸스)
제일화재 (00. 5. 1)	1,245억 엔/ 400억 엔	보험 업법	10%	인하	청산 (계약자보호기구)
제백생명 (00. 6. 1)	3,177억 엔/ 1,450억 엔	보험 업법	10%	1.0%	계약이전 (메뉴라이프)
대정생명 (00. 8. 29)	365억 엔, 267억 엔	보험 업법	10%	1.0%	계약이전 (대화생명)
천대전생명 (00. 10. 13)	5,950억 엔/ 0엔	회생 특례법	10%	1.5%	푸르텐셜 인수
협영생명 (00. 10. 23)	6,895억 엔/ 0엔	회생 특례법	8%	1.75%	주식회사화, AIG스타 인수
동경생명 (01. 3. 31)	731억 엔/ 0엔	회생 특례법	-	2.6%	T&D파이낸셜생 명인수
대성화재 (01. 11. 22)	398억 엔/ 0엔	회생 특례법	-	2.6%	손보저팬 인수
대화생명 (08. 10)	643억 엔/ 278억 엔	회생 특례법	10%	1.0%	지블렐타생명 인수

주: 지원금액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 지원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금융청(<http://www.fsa.go.jp>).

보험회사가 파산된 경우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로 보험업법⁶²⁾에 1998년 12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가 없었으나 부동산거품의 붕괴에 이은 저금리현상의 지속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회사(외국사 포함)가 파산한 경우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이전, 합병, 주식취득 등의 자금 원조를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 보호기구는 생

62) 제10장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등, 제4절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등, 제1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제259조-제271조의2의3).

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리하여 운영되며, 보험업법 제26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보호대상 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용보험, 1년 미만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연금식적립상해보험, 의료 및 간병보험이다. 보호한도는 책임준비금의 90%이며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지진보험은 예외적으로 책임준비금의 100%를 보상하고 있다.

〈표 IV-18〉 일본 보험계약자보호제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운영기구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대상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	자배책보험, 지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기타보험중 개인보험
	1년 미만 상해보험, 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 기타질병상해보험(연금식적립상해보험, 의료간병보험)	
보장한도	책임준비금의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배책, 지진보험 100% •화재, 자동차, 기타손보: 보험금 파산 3개월 이내 100%, 그 이후 80%,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80% •제3분야: 책임준비금의 90%
보험료체계	연간분담액 400억 엔 사전적립한도액 4,400억 엔	연간분담액 50억 엔 사전적립한도액 500억 엔
보험료납부	사전적립(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	사전적립(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

3. 독일

가. 보험회사 현황

독일의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정 소득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공적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현재 연방보험감독청(Bafi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는 390개사로 2000년에 비해 79개사나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회사는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로 43개사이다. 영위하는 보험종목별 회사를 보면 2010년 현재 생명보험회사 95개사, 손해보험회사 211개사, 재보험회사 36개사이다.

〈표 IV-19〉 독일 보험회사 현황

(단위: 개, 억 유로, %)

구분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회사 수	생보사	108	109	119	100	99	96	95
	건강사	51	55	55	51	51	51	48
	손보사	344	322	254	224	222	217	211
	재보사	33	28	41	41	41	38	36
	소계	536	514	469	416	413	402	390
보험료	생보사	132	274	612	789	795	852	903
	건강사	48	95	207	294	303	314	333
	손보사	179	329	493	544	546	547	552
	재보사	71	137	288	322	313	346	-
	소계	360	699	1,313	1,629	1,645	1,714	1,789
회사당 보험료	생보사	1.2	2.5	5.1	7.9	8.0	8.9	9.5
	건강사	0.9	1.7	3.8	5.8	5.9	6.2	6.9
	손보사	0.5	1.0	1.9	2.4	2.5	2.5	2.6
	재보사	2.2	4.9	7.0	7.9	7.6	9.1	-
	소계	0.7	1.4	2.8	3.9	4.0	4.3	4.6

자료: GDV(2011), p. 1.

독일 보험시장은 보험회사는 감소하는 대신에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회사의 집중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영위하고 있는 회사당 보험료를 보면 1990년에 1.4억 유로였으나 2000년에 그의 두 배인 2.8억 유로로 증가했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4.6억 유로나 된다.

독일의 보험시장의 집중도를 보면 단일시장에 따른 규제완화로 인해 다소 대형사에게 집중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더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CR5는 1980년 37.4%에서 2009년 37.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에 48.5%로 크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R10, CR15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각각 67.9%, 78.4%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시장도 생명보험시장과 유사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CR5를 보면 1990년 24.8%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42.9%로 증가했고, CR10도 1990년 37.5%에서 2010년 63.5%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시장은 상위회사의 집중도가 매우 크고 연도별 시장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CR5는 1990년 54.1%였으나 2010년에도 54.1%로 나타났고, CR15도 1990년 85%에서 2010년 90.3%로 약간 증가하였다.

〈표 IV-20〉 독일 보험산업의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9	2010
생명 보험	CR5	37.4	33.0	30.8	33.7	37.7	48.5
	CR10	50.7	47.6	46.5	48.8	53.1	67.9
	CR15	61.4	58.2	58.3	60.1	64.1	78.4
건강 보험	CR5	57.0	54.1	52.2	50.5	49.3	54.1
	CR10	77.7	72.9	72.1	69.7	71.4	78.4
	CR15	90.9	85.0	83.9	82.5	83.8	90.3
손해 보험	CR5	25.4	24.8	27.6	30.9	31.2	42.9
	CR10	37.7	37.5	39.5	42.6	45.6	63.5
	CR15	47.9	48.1	49.4	52.5	55.7	75.0
재보험	CR5	69.6	71.3	72.4	76.0	85.1	-
	CR10	85.3	88.5	90.1	91.1	95.7	-
	CR15	94.0	96.7	95.8	97.3	98.8	-

자료: GDV(2011), p. 21.

나. 진입규제

독일은 EU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지침에 따라 자국의 보험사업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법규를 보험법(VAG: Law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과 보험계약법(VVG: Insurance Contract Law)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로 보험회사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보험법에 반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진입규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1) 보험업의 구분

독일 보험법은 보험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없다. 다만 EU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통합지침⁶³⁾상에서 어떤 것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지 해당 보험종목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생명보험의 정의를 보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생명보험지침 제2조). 첫 번째 영역으로는 계약에 기초한 생명보험(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보험료환급부생명보험, 결혼보험, 출산보험), 연금, 생명보험에 추가된 보완적 보험(치료불능을 포함한 인적상해보험, 사고에 의한 사망보험,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고도장해보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으로는 민영보험의 감독 하에 있는 계약에 의한 톤틴연금⁶⁴⁾, 자금상환업무(capital redemption operation)⁶⁵⁾, 단체연금기금관리, 자금관리 또는 이자지급을 담보하는 보험을 수반하는 단체연금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으로는 사회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명의 길이에

63) 유럽의 생명보험지침은 2004. 6. 19부로 1차지침(79/267/EEC), 2차지침(90/619/EEC), 3차지침(92/96/EEC), 재무감독지침(95/26/EC), 정보교환지침(2000/64/EC), 지급여력지침(2002/12/EC)을 폐지하고 통합지침(2002/83/EC)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해보험 1, 2, 3차지침이 존재하고 개별종목별(자동차보험, 신용보증, 어시스턴스보험, 소송비용보험) 관련지침이 존재한다. 日本 損害保險總合研究所(2006), pp. 7~9.

64) 1968년 이탈리아의 은행가이자 수학자였던 로렌조 톤티(Lorenzo Tonti)가 고안한 '톤틴연금(Tontine pension)'이다. 톤틴연금은 국고(國庫)에 자금을 예치하는 사람에게 원리금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국가 재정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최초로 시행했다. 특이한 것은 동일한 연금 그룹에 지급되는 연금 총액이 매년 동일해 사망자가 있을 경우 생존한 사람들의 연금액이 그만큼 많아지고 생존자가 1명만 남을 경우 전액을 혼자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신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파란사전 참조, <http://dic.paran.com>).

65) 보험수리적계산에 기초하여 사전의 합의에 따라 일괄 또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받아 특정기간에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한 업무 중에서 법률에 의거 보험회사 자신의 리스크로써 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업은 생명보험업의 영위종목에 해당하지 않은 종목이 된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2조제1항).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본체 내 겸영은 일부 국가에서 기존의 겸영허용회사를 제외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제한하고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18조제1항). 유럽지침에서는 상해와 질병리스크에 대해 겸영을 허용하지만 생명보험과 상해 또는 질병보험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별개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겸영을 계속할 수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18조제3항).

EU 지침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제외를 두고 있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각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상환업무, 재원에 따라 급부금이 변동하고 각출금이 정률로 결정되는 상호부조기관의 업무, 보험료를 선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서 법인이 아닌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상호보상업무, 국가의 수출신용보험, 일정조건⁶⁶⁾을 만족하는 상호단체, 자신이 인수한 모든 계약을 출재하고 수재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정한 계약을 동종의 단체와 체결한 상호단체(captive), 일정지역에서 현물급부에 의한 어시스턴스보험⁶⁷⁾(종목번호 18)만을 행하며 연간 사업수입이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된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3조).

또한 생명보험의 적용제외는 재원에 따라 급부금이 변동하고 각출금이 정률로 결정되는 상호부조기관의 업무, 사업자 또는 동업자 또는 이들 그룹에 속하는 종업원 혹은 자영업자에게 사망 또는 생존급여금 또는 사업정지 혹은 사업축소에 따른 급부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단체사업, 사회보장의 법정제도 일부를 구성

66) 추가각출의 청구 또는 급부금의 삭감을 정하는 정관이 있을 것, 배상책임리스크와 신용 및 보증리스크인수를 행하지 않을 것, 사업연간수입료가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업의 수입금의 50% 이상을 회원의 지출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67) 어시스턴스보험은 여행 중 또는 자택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 곤란을 입은 계약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보험을 의미하며, 지침상 보험종목 분류번호 18에 해당한다. 어시스턴스보험지침(84/641/EEC)은 어시스턴스보험을 손해보험 제1차지침의 종목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84년에 제정되었다.

하는 보험사업, 추가 각출청구 또는 급부금 삭감에 대해 사전에 정하는 정관에 따라 사업의 연간 각출금수입이 3년 연속으로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상호 단체의 업무이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3조 Activities and Bodies Excluded).

2) 보험사업 영위형태

EU지침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법적형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원국가가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보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식회사, 상호회사, 사회보험법전 또는 농업법에 규정된 기관, 상호부조조합법에 의한 상호부조조합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상호보험조합(mutual societies), 공영보험회사(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under public law)로 제한하고 있다(보험법 제7조 permissible legal forms). 독일 보험회사들의 법적형태 변화를 보면 최근에 들어 상호회사와 공영보험회사는 줄어들고 주식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주식회사가 81.7%, 상호회사는 15.9%, 공영보험회사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21〉 독일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별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1990	2000	2005	2007	2008	2009
주식 회사	회사 수	281	324	321	321	307	305
	점유율	69.1	76.1	82.7	83.0	82.6	81.7
상호 회사	회사 수	352	299	267	268	268	268
	점유율	19.9	17.7	14.9	14.6	15.1	15.9
공영 보험	회사 수	47	27	18	18	18	17
	점유율	8.3	5.2	1.5	1.4	1.5	1.5
기타	회사 수	81	16	10	6	6	6
	점유율	2.6	1.4	0.9	0.9	0.8	0.9

자료: GDV(2011), p. 3, p. 6.

3) 보험업 면허종류

유럽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감독당국의 사전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면허를 받은 경우 유럽회원국 전체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손해보험 제3차지침 제4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4조). 아울러 보험사업의 인가는 보험종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18개 종목, 생명보험은 9개 종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보험법 제5조), 인가받지 않고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보험법 제140조). 보험사업의 인가는 종목단위별로 하며, 본체 내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겸영과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보험법 제8조 1(a)) 지주회사 형태로는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영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독당국의 심사기간은 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가보험종목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총 25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보험법 Annex A, classification of risks by class of insurance).

1. 상해보험: 정액급부보험, 실손급부보험, 정액과 실손급부를 혼합한 보험, 승객에 대한 상해담보보험
2. 질병보험: 정액급부보험, 실손급부보험, 정액과 실손을 혼합한 보험
3.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자동차차량보험: 자동차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자동차 이외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4. 철도차량보험: 철도차량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5. 항공기: 항공기 관련 모든 손해담보보험
6. 선박보험: 강 및 운하선박보험, 호수선박보험, 바다선박보험
7. 운송화물보험: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중인 화물의 손해담보보험
8. 화재 및 자연재해보험(종목 3. 차량보험에서 7. 운송화물보험까지의 종목 이외의 것 포함): 화재, 폭발, 폭풍, 폭풍 이외의 자연재해, 핵에너지, 땅의

침강으로 인한 재산의 모든 손해담보보험

9. 기타 재산손해보험(종목 3. 차량보험에서 7. 운송화물보험까지의 종목 이외의 것 포함): 8. 화재보험 자연재해보험의 담보하는 위험이외에 해일, 서리, 도난 등을 담보하는 보험
10. 육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육상자동차운송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기타
11. 항공기배상책임보험: 항공기 사용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보험(운송자의 배상책임보험 포함)
12. 선박배상책임보험: 바다, 호수, 강 및 운하에 있는 선박, 보트의 사용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보험(운송자의 배상책임보험 포함)
13. 일반배상책임보험(위 10에서 12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배상책임을 담보)
14. 신용보험: 도산보험, 수출신용보험, 할부신용보험(instalment credit), 저당신용보험, 농업신용보험
15. 보증보험
16. 기타 금융손실보험: 고용리스크보험, 소득보상보험, 날씨보험, 보장손실보험, 경상비보전보험, 예기치 못한 거래비용보험, 시장가치손실보험, 수익 또는 임차비손실보험, 기타 거래관련 간접비용 보상보험, 기타금융손실보험(비거래관련), 금융손실의 다른 형태
17. 법률비용보험
18. 어시스턴스보험: 주거하는 집을 떠나있는 동안 또는 여행하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도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
19. 생명보험(20. 결혼보험과 출생보험, 21. 변액생명보험, 22. 톤틴, 23. 자본상환관련보험(capital redemption operations), 24. 퇴직 관련한 보험(퇴직연금) 이외의 보험
20. 결혼과 출생보험
21. 변액생명보험
22. 톤틴

23. 자본상환관련보험(capital redemption operations)⁶⁸⁾
24. 퇴직 관련 보험(퇴직연금)
25. 연금기금의 운용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종목별 인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종목단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보험(motor vehicle insurance)은 “1. 상해보험의 승객상해담보, 3. 육상차량보험, 운송중인 화물, 차량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상 및 육상운송보험은 “1. 상해보험 중 승객의 상해보험, 4. 철도차량보험(철도차량의 모든 손해담보), 5. 항공기(항공기 관련 모든 손해 담보 보험), 6. 선박보험(강 및 운하선박보험, 호수선박보험, 바다선박보험), 7. 운송화물보험(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중인 화물의 손해 담보 보험)”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보험은 “1. 상해보험 중 승객의 상해보험, 5.항공기(항공기 관련 모든 손해담보보험), 7. 운송화물보험(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운송중인 화물의 손해담보보험), 11. 항공기배상책임보험”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와 기타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손해보험은 “8. 화재 및 자연재해보험, 9. 기타 재산손해보험”을 지칭한다.

배상책임보험은 “10. 육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상책임보험, 11. 항공기 배상책임보험, 12. 선박배상책임보험, 보트의 사용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보험, 13. 일반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신용 및 보증보험은 “14. 신용보험(도산보험, 수출신용보험, 할부신용보험(instalment credit), 저당신용보험, 농업신용보험)과 15.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손해보험(property & casualty insurance)은 “1. 상해보험, 3.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자동차차량보험에서 13. 일반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면서 16. 기타 금융손실보험까지 인수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68) 보험수리적계산에 기초하여 사전의 합의에 따라 일괄 또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받아 특정기간에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면허심사 요건

유럽에서는 보험사업의 면허를 받기위한 요건 5가지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 3차지침 제6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6조). 보험회사가 면허를 받기위한 조건들을 보면 첫째, 각 국가에서 정한 회사형태(legal forms)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 업무범위는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범위와 부수업무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셋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넷째, 소정의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확보해야 하며, 다섯째, 적절한 전문적 자질 또는 경험을 가진 신용 있는 자에 의하여 운영될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진입 시의 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제출서류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보험법 제5조 제출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자본적정성요건)에서 보험회사의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⁶⁹⁾은 EU지침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보증기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보험종목별로 정하고 있지만 요구지급여력(required solvency margin)의 1/3을 하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호조합 또는 상호회사, 톤틴연금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최저보증기금 1/4를 필요로 한다. 특징적인 것은 생명보험의 최저보증기금액은 2년마다 검증하여 필요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30조).

69) 향후 도입될 Solvency II에서는 법정자본금요건(mandatory capital requirement)으로 대체되며 생명보험회사는 320만 유로 이상,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인수하는 손해보험회사는 220만 유로이며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회사는 320만 유로이다(캡티브회사도 동일함). 그리고 재보험회사는 320만 유로이며 캡티브재보험회사는 100만 유로이다.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Solvency II) 제128조 참조.

〈표 IV-22〉 EU 보험종목별 최저보증기금

(단위: 유로)

구분	세부종목	최저보증기금액	
	생명보험	300만	상호회사는 1/4 필요
손해보험	법률비용보험	150만	
	배상책임보험(자동차, 항공기, 선박, 일반배상) 신용보험, 보증보험	300만	
	상해, 질병, 육상차량, 철도차량, 항공기기체, 선박, 운송물, 화재 및 자연재해, 각종경제적손실담보	200만	

주: 손해보험에서 두 종목 이상 영위하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을 적용함.
자료: 손해보험 제3차지침 제17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29조.

5) 면허신청절차

유럽지침에서는 보험사업 면허신청 시에 5가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손해보험 제3차지침 제7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7조). 사업계획서에는 보험회사가 인수할 보험종목, 재보험에 관한 기본계획, 최저보증기금을 구성하는 자산항목, 사무관리서비스 및 조직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 향후 3년간의 예상대차대조표를 추정하고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급여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추정을 내야 한다. 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통보험약관⁷⁰⁾, 요율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는 본래 생명보험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손해보험 제1차지침에 존재했으나 손해보험 제3차지침을 제정하면서 징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⁷¹⁾

70) 보통보험약관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담보하는 손해와 담보하지 손해사항, 보험사고시 지급보험금액의 결정방법과 지급방식, 보험료납입시기와 지급보험금 신청기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권리 및 계약전후에 있어서 통지 및 고지의무사항,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할법원, 배당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보험법 제10조).

71) 손해보험사업종합연구소(2006), p. 71.

독일의 경우 보험법 제5조에서 보험업의 영업인가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operating plan)를 내도록 하고 있고 면허의 심사기간은 제한이 없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구조, 사업지역, 미래 부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재무적 대책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수하여 첨부할 서류가 다수 있다. 먼저 보통보험약관(general policy condition)은 아니지만 영위 보험종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memorandum), 영위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정보(특히 사망보장⁷²⁾담보의 경우에는 보통보험약관과 보험료산출 및 준비금산출방법서⁷³⁾를 제출해야 하며, 산출기초, 산출공식, 실제계산결과, 사용된 통계적 증거도 제시 필요)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회사법 제291조 및 제2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협정(enterprise agreements)의 내용과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채널, 보험계약관리, 손해사정, 회계,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탁한 경우 이에 대한 협정 문서를 내어야 한다.

보험사업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종목별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비, 예측 보험료 및 보험금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위 보험종목별 특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 먼저 대체형건강보험과 의무보험은 보통보험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사용된 계산기준 및 산출공식, 실제계산사례 및 통계적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추

72) 2007년 개정 시 기업연금(pension)은 제외되었다.

73) 유럽지침에서는 약관, 요율표,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의 기술적 근거 및 계약종류의 서식 등 인쇄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인가하거나 획일적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8조제3항: 제3차지침 제6조, 생명보험지침 제6조제5항). 이에 대해서 손보의 경우 손해보험 제2차지침(1988년) 도입 시 보험약관 및 요율의 인가제도를 폐지했으며, 손해보험 제3차지침(1992년)에서는 보험사업 면허신청시에 보험약관, 보험료 및 준비금산출방법서를 제외시켰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2002년 생명보험통합지침을 제정되면서 약관 및 요율의 사전인가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사업면허신청시 약관과 보험료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했다.

가하여 재보험 관련정보, 행정 및 판매네트워크와 관련한 비용추정서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조항도 있는데 임원의 신뢰성과 적격성에 관한 정보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보험법 제7a(1)). 보험회사의 주식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식 수 등을 내어야 하며 선임계리사의 신뢰성과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6) 면허신청 거부요건

신청된 면허에 대해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와 기타 법인 또는 자연인이 경영 참가 또는 지배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유럽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있어서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손해보험 제1차지침 제8조, 생명보험통합지침 제6조2항). 또한 보험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신분과 보유주식수 정보가 사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감독당국이 건전경영관점에서 보아 대주주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생명보험통합지침 제8조).

독일은 보험법 제8조(Refusal, Suspension and Restriction of Authorization)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정하고 있다. 먼저 보험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사업계획서나 관련서류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거나 계약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주로 참고하는 것은 원보험회사가 다른 기업의 관계사 혹은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소유구조나 경제적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효과적인 감독을 방해할 수 있을 때이다. 또한 비유럽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와 법적 또는 행정적 조항에 의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 퇴출규제

1) 규제내용

EU지침에서는 보험회사의 재건조치나 청산절차의 개시에 대해 본점 소재국가의 감독당국이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영업인가를 내준 해당국가의 감독기관이 행사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산이나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임의적인 청산 또는 강제적인 청산으로 구분된다(보험회사 재건청산지침⁷⁴⁾ 제2조(d)).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보험회사의 면허는 취소되며, 청산절차의 내용과 효력은 본점 소재국가의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각 회원국은 보험회사의 권한이나 채권자의 청구권 신청에 관한 규정 등 일정의 항목에 대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재건청산지침 제9조).

독일은 보험법 제87조(Revocation of Authorization, Dismissal of Managers)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인가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사업계획이나 법규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경우에 종목전체 또는 일부 종목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급여력이 부족하여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면허 전체를 취소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험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는 경우 감독관청은 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보험법 제86조).

74) 동 지침(Directive 2001/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01 on the reorganization and winding-up of insurance undertakings)은 EU 파산절차지침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는 원수보험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계약자보호제도

보험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보험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보험계약채권의 우선변제규정과 지불보증제도이다. 먼저 보험계약채권의 우선변제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재건청산지침 제10조). 여기서 말하는 보험계약채권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금수취인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가진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채권금액은 보험계약상 지출책임을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의 미완료나 해약에 기인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반환채무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법 제163조(보험료 및 급부의 변경)와 보험법 제59조(지급 금지, 급부의 삭감 Prohibition of Payment: Reduction of Benefits)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법 제163조제1항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첫째, 합의된 보험료의 계산기초에 대한 급부의 변경 필요성이 일시적인 변화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예측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둘째, 보험급부의 지속적인 이행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된 계산기초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가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점, 셋째, 독립감사인인 그 계산기초와 위 두 요건을 심사하고 확인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의된 보험료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보험료의 인상을 대신하여 보험급부를 삭감할 수 있다(보험료완납보험). 이러한 결정 내용에 대한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익익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보험료의 새로운 조건이나 보험금의 삭감에 대해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험법에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 감사를 한 결과, 보험회사가 더 이상 보험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감독청은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한 기간 내에 경영 원칙을 변경하고 보험금지급이나 이익배분, 약관대출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생명보험계약의 부채를 당시의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강제적 퇴출은 대부분 자본적정성기준(보험법 제53조)에 미달하지 못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때에 발생하고 계약자보증제도(guarantee scheme)를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EU지침 상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자본량(required solvency capital)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기자본(available solvency capital),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비교하여 3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보험법 제81b조). 3단계의 재무복구계획에는 3년간의 관리비용, 원수보험 및 재보험을 감안한 수입과 지출, 추정 대차대조표, 보험채무 및 부족자본량을 담보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적기시정조치는 Solvency II가 시행되는 경우에 3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⁷⁵⁾

75) 향후 시행될 Solvency II에서는 최저보증기금 대신에 의무규제자본금(MCR)이 도입되는 등 자본금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다단계로 취할 예정이다.

구분	추가보고	재무복구계획서	신사업금지	면허취소
적정자본금 유지	불요	불요	불요	불요
조정지급능력자본금	필요	가능	불요	불요
지급능력자본금	필요	필요	가능	불요
의무자본금	필요	필요	필요	가능

- 주: 1) 의무규제자본금(mandatory capital requirement)은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할 최저 규제자본금.
 2) 지급능력자본금(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은 표준공식 또는 승인된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요구되는 자본금.
 3) 조정지급능력자본금은 지급능력자본금에 감독당국이 인정한 보완적 자본금을 합한 자본금을 의미함.

자료: <http://solvencyii.co.uk/capitalrequirements.html>

〈표 IV-23〉 독일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 기준	요구자본량 > 자기자본	요구자본량 > 최저보증기금	자기자본이 최저보증기금보다 적은 경우 또는 재무개선계획 미수행으로 지급여력 부족 시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개선계획(solveny plan) 제출, 승인 필요 자유로운 자산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재무계획서(financing plan) 제출, 승인 필요 자유로운 자산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년간 재무복구계획서(financial recovery plan) 제출, 승인 필요 계획이 지정기간 내에 행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독일에서는 보험회사가 재무적인 문제로 파산한 경우 보험계약자보증기구(guarantee scheme)를 통해 보호를 받는데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독일 보험법 제123조 a 에서부터 제133조 a).

독일의 보험계약자보증기구는 2002년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져 운영되어 오다 2004년부터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만 존재하고 손해보험은 없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생명보험계약자보증기구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부분까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구에서 파산한 보험회사의 계약을 전부 이전받아 계약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해준다. 다만, 감독당국이 보증기구의 자산상황으로 보아 계약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부금을 최대 5%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험법 제125조제5항).

〈표 IV-24〉 독일 보험계약자보증제도

구분	생명보험	건강보험
운영기구	생명보험계약자보증기구 (Life IGS)	건강보험계약자보증기구 (Mediator AG)
대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보험, 출생보험, 변연보험, 톤틴, 자금상환상품 기업연금은 임의가입 	공적보험, 대체형 건강보험
보상한도	전액(부족한 경우 5% 삭감 가능)	전액(부족한 경우 5% 삭감 가능)
목표기금액	책임준비금의 0.1%	-
각출액	연간: 책임준비금의 0.02% 특별: 책임준비금의 0.1%	사후각출: 책임준비금의 0.2%
차등보험료	전년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등급 ±25% 차등(2등급 기본)	-
정부보조	없음	

넷째, 독일에서는 보험계약의 이전(transfer of portfolio)을 허용하고 있다 (제14조). 보험계약 이전은 이전할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일부 또는 전부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급여력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이전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V. 국내 진입·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

1. 진입·퇴출규제의 개선 기본원칙

가. 국제적 정합성 확보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산업 감독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보험산업의 진입허가(ICP 4. Licensing), 적격성원칙(ICP 5. Suitability of Persons), 퇴출규제(ICP 12. Wind-up and Exit from the Market)가 있다.⁷⁶⁾ 보험산업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보면 핵심원칙은 “보험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작 전에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의 여건과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진입요건을 보면 감독당국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규에는 인가받는 보험사업에 대한 정의, 비인가보험사업의 금지, 국내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법적형태, 허가받은 기간 동안의 책임, 외국사의 지점설치 형태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진입요건과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 공개적이어야 하며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이사, 최고경영자, 대주주의 적격성을 충족해야 하며⁷⁷⁾, 자본요건을 충족하고, 허가신청 법인이나 그룹은 효

76)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12), p. 25, p. 31, p. 94 참조.

77) ICP 5. Suitability of Persons.

과적인 보험감독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지배구조⁷⁸⁾를 가져야 하며, 3년간의 사업계획과 재무계획이 건전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의 진입규제를 비교하여 보면 무자격 보험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근간(regulatory framework)은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보험업을 다양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특정한 보험사업이나 소규모로 영위할 수 있는 부분, 진입 형태의 다양화, 진입규제의 적용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입요건인 자본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퇴출과 관련하여 IAIS는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합병 및 계약이전(ICP 6. Changes in Control and Portfolio Transfer), 적기시정조치(ICP 10.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와 집행력(ICP 11. Enforcement), 청산 및 퇴출(ICP 12. Wind-up and Exit from the Market)로 구분하여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이전은 전부 또는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보험감독관은 계약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국내의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국내에서 보험계약 이전은 일부이전만 가능하고 계약자의 10% 이상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핵심준칙은 감독당국이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예방 또는 보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당국이 가지고 있어야 함과 더불어 인가 없이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기업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험업법에 적기시정조치를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병행 사용하여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IAIS 원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가 받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미치지 못하는 공제사업영역이 국내에는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감독당국의 집행권한원칙(ICP 11. Enforcement)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78) ICP 7. Corporate Governance.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이 집행하는 권한은 사업활동의 제한, 재무상황의 보장, 기타조치에 대해 필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사업활동 제한의 최소조치는 신규계약의 인수를 중단, 신사업 인가의 거부, 자산이전 제한, 자회사의 소유나 활동을 제한이다. 재무상황의 보장은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본의 증가 요구, 배당제한, 자기주식취득금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조치는 계약이전이나 보험사업허가의 중지 또는 취소가 있어야 한다. 국내의 적기시정조치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 수용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에서 제7-23조까지).

보험회사의 청산 및 퇴출절차원칙(ICP 12. Wind-up and Exit from the Market)은 법으로 퇴출하기 위한 옵션의 범위, 파산을 정의해야 하고 파산보험회사의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회사의 청산 단계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보험계약자 편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퇴출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더 이상 보험사업 영위가 곤란한 것을 법으로 정의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는 IAIS의 퇴출핵심원칙을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보험업법』으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국가정책과 일관성 유지

1) 상법개정의 반영

보험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보험료/GDP)나 되고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진입방법은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에의 진입행태를 살펴보면 신규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한화손보, 제일화재 인수, 현대자동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법인설립을 통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설립비용과 보험 운영에 필요한 판매채널, 손해사정 등의 조직을 새로 채용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 점도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활동용이도(Doing Business) 지표는 창업부터 퇴출 과정과 관련된 11가지 분야의 기업 관련 규제를 바탕으로 측정되는데, 창업용이도(starting a business)와 파산해결(resolving insolvency) 관련 규제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⁷⁹⁾ 우리나라의 2008년 기업활동용이도는 175개 국가 중 30위로 나타났고 미국 3위, 일본 12위, 캐나다 7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창업절차의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 상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도의 상법개정은 1984년도에 도입된 최저자본금 5,000만 원(상법 제329조제1항)을 전격적으로 폐지했으며⁸⁰⁾, 유사상호사용금지제도⁸¹⁾도 폐지하여 창업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IT⁸²⁾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회사의 감사선임의무 면제와 설립과 운영절차⁸³⁾를 간소화하여 창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⁸⁴⁾

79) <http://www.doingbusiness.org>

80) 박종복(2010),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는 1984년 5,000만 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과 발행자본금의 비율을 4대1로 완화했으며, 1997년에는 1주의 최저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여 액면분할과 신주발행이 용이하도록 개정했다. 1998년에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정한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했고, 1999년에는 발행주식의 10% 이내의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했다, 2001년에는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허용했고, 2009년에 상법 제329조제1항의 최저자본금을 폐지하였다.

81) 과거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동일상호만 등기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상업등기법 제30조).

82)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상법 제368조의4),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 도입(상법 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

83)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정관·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상법 제292조), 소규모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상법 제318조제3항), 감사 선임의무 면제(상법 제409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기간단축(상법

이러한 상법의 개정으로 국내의 창업용이도는 24위로 개선되었고, 기업활동 용이도 종합순위는 2008년 30위에서 8위로 높아졌다. 특이한 점은 국내의 퇴출 규제 관련 순위(파산해결: resolving insolvency)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2011년 기준으로 13위이다. 이와 같이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인 회사도 설립 가능하고 100만원 자본금의 주식회사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업의 경우 2003년에 종목별 자본금을 도입하여 낮은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지만, 상법개정과 같이 규모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진입규제의 완화는 없는 상태이다.

〈표 V-1〉 기업활동용이도 순위 국제 비교

국가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11	'08	'11	'08	'11	'08	'11	'08	'11	'08	'11	'08	
창업용이도	절차(개)	6	6	9	9	8	8	5	10	1	2	6	9
	기간(일)	6	6	15	18	23	23	7	17	5	3	6	13
	비용(%)	1.4	0.7	4.6	5.7	7.5	7.5	14.6	16.9	0.4	0.9	18.2	18.7
	자본금(%)	0.0	0.0	0.0	42.8	0.0	0.0	0.0	296.0	0.0	0.0	9.9	9.8
	1인당GNI(달러)	47,140	44,970	43,330	36,620	42,150	38,410	19,890	17,690	46,215	36,170	35,090	32,020
순위	13	4	98	71	107	44	24	110	3	2	77	65	
퇴출용이도	기간(년)	1.5	1.5	1.2	1.2	0.6	0.6	1.5	1.5	0.8	0.8	1.8	1.8
	비용(%)	7	7	8	8	4	4	4	4	4	4	22	22
	회수율(%)	81.5	75.9	53.8	53.4	92.7	92.6	82.3	81.2	90.7	88.8	61.1	61.8
	순위	15	18	36	29	1	1	13	11	3	4	30	25
종합순위	4	3	19	20	20	12	8	30	13	7	87	53	

주: 진입비용은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 퇴출비용은 퇴출기업의 부동산가치에서 퇴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회수율은 채권금액 1달러당 회수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2008, 2011).

제363조) 및 서면결의 방식 인정(상법 제380조), 이사회 구성인원 2명 이하의 규모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가 면제(상법 제383조) 등이다.

84) 법무부 보도자료(2009),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도입, 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2)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금융산업의 규제를 산업구조와 글로벌 감독규제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마련된 『진입규제 개선정책』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입규제를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금요건 등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진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던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문제점은 1997년 경제적수요심사(ENT)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금융회사의 부실사태를 경험한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신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IT기술이나 틈새시장의 형성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신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점,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금융산업이 외형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의를 저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기존의 “제한적 허용”에서 진입요건에 부합 시 “원칙적 자유로운 허용”으로 전환하며, 진입규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정의 재정비와 진입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아울러 퇴출규제는 부실 금융회사가 발생하는 경우 퇴출요건을 충실히 적용하여 부실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다.⁸⁵⁾

8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6. 26),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p. 17.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진입규제 개선정책 목표에 따라 진입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서는 개선이 있었지만,⁸⁶⁾ 진입규제의 재량적 또는 정책적 판단이나 규제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업에 대한 감독규제의 국제적 변화와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보험산업 진입규제는 규제목적의 초점을 보험계약자보호와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개선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진입규제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다. 지금의 보험감독 및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계약자의 편익제고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규제에 해당하는 진입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보험업의 공정경쟁 확보

보험업은 동질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업에 대해 감독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며, 이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공제 등 유사보험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2010년 현재로 국내의 보험업 영위회사로는 민영보험회사가 53개로 가장 많고 공제가 90개 이상이다.⁸⁷⁾ 보험료 규모로 보면 연간보험료는 225조 7,629억 원이며, 이중 민영보험이 59.5%를, 공영보험이 33.4%를 차지하고 있다.

86) 보험업의 진입규제 중 인적·물적요건이 완화되었다. 인적·물적 요건의 경우 일부 업무를 업무위탁하는 경우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하며, 허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진입허가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87) 2011년 기준, 이기형(2012),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주간이슈』, 제178호.

〈표 V-2〉 2010년 보험업 영위 현황

(단위: 개사, 억 원)

구분		회사 수	보유보험료	가입자 제한여부
민영보험 (59.5%)	생명보험	23	830,074	불특정
	손해보험	30	513,446	불특정
	소계	53	1,343,520	-
공영보험 (33.4%)	국민연금	1	245,602	전국민 사회보험
	국민건강	1	284,577	전국민 사회보험
	산재보험	1	45,993	근로자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1	84,232	공무원
	수출보험	1	4,848	수출입기업
	우체국	1	69,470	불특정
	사립학교	1	20,269	사립학교 교직원
	소계	7	754,991	-
공제사업 (7.0%)	농협	1	97,227	불특정
	수협	1	8,665	불특정
	새마을금고	1	13,716	불특정
	신협	1	5,533	불특정
	기타	8	33,977	업종에 따라 특정, 불특정함
	소계	12	159,118	-
보험업 전체		72	2,257,629	-

주: 국내의 공제는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경우 25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공정거래위원회(2008), 『손해보험산업과 경쟁정책』, p. 19.

자료: 보험개발원, 『2010년도 보험통계연감』에서 작성함.

공영보험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처럼 보험업법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특정 다수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공제사업과 공영보험인 우체국은 보험업법의 감독과 규제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다. 보험업 전체의 공정경쟁정책 측면에서 이런 불합리한 시장구조에 대해 한미 FTA가 타결 및 시행되면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도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었다.⁸⁸⁾ 그렇지만 여전히 불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88) 이기형(2011), 「한·미 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제158호.

보험사업을 영위중인 다수의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규모 공제사업의 증가는 보험업법의 진입규제가 미비한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소규모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료규모가 적고, 특정한 리스크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자본금요건,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신설하기 보다는 공제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보험업의 불공정경쟁 문제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의 적용사업자로 전환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는 70여 개 이상이 된다. 따라서 국내의 보험업에서도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에 대해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 보험업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영위가 가능한 회사형태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보험시장의 경쟁촉진

금융당국은 2000년 이후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퇴출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은 세부 상품별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 기능이 가능해져 다양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 퇴직연금시장, 부동산권원보험시장, 법률비용보험시장 등에서 다양한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가 진입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구조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다소 집중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표 V-3〉 참고), 기존 보험회사의 시장행태에서 있어서도 과점시장의 문제점 즉 시장의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이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 8월 자동차보험료 입찰시 가격담합, 2000년 11월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및 요율신설, 2002년 6개 손해보험회사 부당리베이

트 제공, 2007년 10개 손해보험회사 일반보험 가격담합, 2008년 단체보험과 퇴직보험 보험료결정 및 입찰담합, 2011년 10월 12개 생명보험회사 예정이율담합 및 리니언시, 2011년 10월 변액보험 담합과 리니언시 등을 들 수 있다.

〈표 V-3〉 보험산업 집중도의 주요국과 비교

(단위: %)

구분		2005	2007	2008	2009	2010
생명 보험	한국(CR3)	65.9	56.7	54.7	54.1	52.3
	미국(CR5)	31.8	33.2	34.8	36.8	41.6
	일본(CR3)	39.9	38.4	31.2	32.7	-
	독일(CR5)	33.7	-	-	37.7	48.5
손해 보험	한국(CR4)	71.3	70.1	68.5	68.8	69.9
	미국(CR5)	34.2	33.5	33.4	33.0	-
	일본(CR3)	60.9	62.3	60.1	61.8	-
	독일(CR5)	30.9	-	-	31.2	42.9

주: 일본의 2005년 실적은 2006년 실적임.

또한 공정경쟁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2008)는 손해보험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진입제한 규제를 들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내의 300억 원 자본금요건은 주요국에 비해 과도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물적 시설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시장에서 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에 적절한 기업의 수와 규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들이 공급하는 상품이 차별성을 갖도록 다양한 가격전략과 상품전략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험산업의 비용구조를 IT기술을 통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산업의 비밀유지와 다른 보험회사의 대응조치에 따른 시차(retaliation lag)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을 볼 때 과점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진입규제를 비롯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진입규제의 개선 시사점

가. 개선 동인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규제는 감독당국의 경쟁촉진과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2000년 이후에 종목별 자본금제도와 보험가격자유화를 병행하여 시행했다. 이런 진입규제의 변화는 세부종목별 시장과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진입규제의 완화로 집중도가 완화되고 경쟁적 시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의 경쟁행동을 분석한 결과 독점적 경쟁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장구조와 행동은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01년 종목별 진입 허용 이후 신규 시장진입자는 2010년에 설립된 IBK연금보험회사 뿐이다. 현재의 시장구조는 과거 부실 보험회사 퇴출 이후 진입한 회사들이 경쟁적인 행동을 보인 결과이지만 경쟁의 진전에 따라 시장의 독점적 구조는 해소되어 미국, 일본, 독일 등과 유사한 구조로 변모되었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시장은 여전히 대형사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독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고, 보험종목별 시장의 구조에서 보면 생명보험산업에 비해 변화가 적다. 손해보험종목별 집중도를 보면 종목별 자본금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종목에서 HHI가 1,800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집중된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⁸⁹⁾ 물론 시장의 집중도만을 가지고 시장의 경쟁도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나, 시장 내 보험회사들이 담합행위를 보이는 등 비경쟁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6. 26),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p. 17.

〈표 V-4〉 외국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국가별	1999	2004	2006	2007	2008	증감률	
							10년간	5년간
생명 보험	미국	19.8	22.8	29.7	23.7	22.3	1.3	-0.6
	독일	17.2	11.2	21.9	22.8	24.3	3.9	21.4
	일본	8.9	25.1	25.8	24.8	20.1	9.5	-5.4
	한국	29.0	23.0	22.0	22.0	22.0	-3.0	-1.1
	캐나다	31.0	20.8	21.7	15.8	20.3	-4.6	-0.6
	이탈리아	2.3	23.7	28.5	37.7	31.2	33.6	7.1
손해 보험	미국	10.4	11.5	11.0	11.6	12.4	2.0	1.9
	독일	13.6	8.2	18.8	19.5	18.6	3.5	22.7
	일본	3.9	5.5	6.0	6.2	6.6	6.0	4.7
	한국	0.4	2.5	3.0	1.5	1.5	16.8	-12.0
	캐나다	22.6	41.5	38.4	37.8	37.5	5.8	-2.5
	이탈리아	5.6	33.1	25.9	34.8	33.2	21.9	0.1

자료: OECD(2010),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한편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통해 해당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정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국내 보험시장의 외국사의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4〉참조). 생명보험시장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국내와 보험료 규모가 유사한 캐나다, 이탈리아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 0.4%였으며, 2008년에도 1.5%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내시장에 법인 형태로 진입하기 보다는 지점형태로 진출하고 영위업종도 부동산권원보험, 법률비용보험, 모기지보증보험 등 특수한 영역에만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V-5〉 국내 보험회사 수의 국제 비교

(단위: 개사, %)

구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10년간	5년간
미국	전사	4,007	4,740	4,520	4,541	4,493	4,489	1.3	-1.4
	생보	1,320	1,166	1,111	1,074	1,019	995	-3.1	-3.9
	손보	3,309	3,405	3,239	3,288	3,299	3,326	0.1	-0.6
독일	전사	683	740	727	510	510	511	-3.2	-8.8
	생보	314	330	322	122	123	124	-9.8	-21.7
	손보	327	366	361	343	346	346	0.6	-1.4
일본	전사	109	86	86	86	94	97	-1.3	3.1
	생보	46	38	38	38	42	46	0.0	4.9
	손보	58	42	42	42	46	45	-2.8	1.7
한국	전사	46	50	51	51	50	52	1.4	1.0
	생보	29	23	22	22	22	22	-3.0	-1.1
	손보	16	20	22	22	22	23	4.1	3.6
캐나다	전사	430	459	455	459	461	444	0.4	-0.8
	생보	151	120	120	119	113	111	-3.4	-1.9
	손보	218	297	291	303	308	300	3.6	0.3
이탈리아	전사	250	246	245	247	243	247	-0.1	0.1
	생보	88	95	90	89	86	79	-1.2	-4.5
	손보	133	122	127	131	131	134	0.1	2.4

자료: OECD(2010),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외국사 국내지점은 제외된 것임).

결론적으로 국내의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유효경쟁을 제고하고자 했으나, 시장에서는 독점적 경쟁양태가 지속되고 있고 가격결정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담합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9년 상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IAIS가 정한 진입규제 핵심원칙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2008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유효경쟁과 경합적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V-6〉 ICP 4(진입 허가기준)과 국내기준의 비교

(단위: %)

ICP 표준내용		한국	개선 검토사항
법규 규정사항	제한된 보험사업 정의(소규모보험, 특수보험, 마이크로보험 등)	손생보 겸영제한	특수사업도입 및 규정화 필요
	비인가영업금지	규정 존재	-
	허용 법인형태	주식, 상호	진입형태 다양화
명확성 객관성 일관성	요건의 명확성, 공개적, 객관성 확보	규정 존재	일관성 미흡
	자본적정성 충족	허가자본, 감독자본	RBC 적용
	3년 사업계획, 재무계획	규정 존재	-
	임원, 대주주의 적격성	규정 존재	-
	지배구조	규정 존재	-
감독당국	합리적인 기간 내에 평가	예비, 본허가	-
	허가 거부사항 명시, 허가사업자의 영업제한	규정 존재	-

나. 보험종목 구분 명확화

IAIS가 정한 핵심원칙에서 정한 법규기준에 의하면 진입요건은 명확해야 하고 그 규정이 공개적이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진입기준은 보험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뒤에 보험업을 다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정의하고, 감독규정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⁹⁰⁾ 심지어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과거 감독기관이 내린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진입이 제한되고 있고, 보험업법에는 어떤 근거도 없이 행정적으로 보증보험의

90) 보험업법 제2조(정의) 1호에서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사회보험 제외)”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다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2호에서 보험업을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의 진화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상품과 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에서 19개 보험상품을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의 고시내용은 보험업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별표 1>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보험업구분을 주요국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표 V-7>).

또한 보험업 진입 면허도 상품종류에 따라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이러한 정의는 보험업의 종목별 진입을 허용한 체계에 비추어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단일면허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현실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할 실익이 적은 상품과 업의 정의는 삭제하고 개별보험종목을 인가단위로 열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영위종목의 제한은 미국 뉴욕주나 독일과 같이 개별종목을 명시하고 겸영종목도 개별종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업의 진입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4조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항만 규정하고 상품의 종류는 삭제하며,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서 허가종목단위별 자본금과 기금을 명시하고 그 종목에 대한 설명(감독규정 별표 1)을 시행령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세부종목의 구분도 리스크의 진화나 현재의 영업환경 등 국내보험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하여 전문화된 시장의 발전을 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7〉 보험업의 구분과 종목구분의 국제 비교

한국(20종목)		뉴욕주 (31종목)	독일 (25종목)	일본 (2종목)		
보험업법	시행령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	생명보험	생명보험, 변액보험	생명보험업	
	연금보험	-	연금보험*	퇴직연금, 톤틴		
	기타	-	-	결혼출생보험, 기금운용, 자본상환		
손해보험업	화재	-	화재	화재(자연재해), 기타자연재해	손해보험업	
	해상	-	해상 및 운송, 선주책임	선박, 운송		
	자동차	-	충돌, 차량(항공기)	차량, 철도		
	보증	-	보증, 신용, 금융보증, 실업신용, 모기지보증	신용보험(도산, 수출, 할부, 저당, 농업), 보증		
	재보험	-	재보험	-		
	기타	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배상, 선박배상, 항공기배상, 일반배상
		기술	-	보일러기계		-
		권리보험	-	권리		-
		도난	-	도난		-
		유리	-	유리		-
		동물	-	동물		-
		원자력	-	-		-
		비용	-	법률비용*, 실업비용, 소득보상*		실업, 금융손실, 법률비용
날씨		-	-	-		
-	-	재산, 누수, 상품보상, 잔존가치, 서비스계약 보상, 엘리베이터	항공기보험, 여행보험			
제3보험업	상해	-	상해건강보험	상해보험	생보로 규정, 겸영허용	
	질병	-		질병보험		
	간병	-		-		
	기타	-		-		

주: 1) 뉴욕주에서 생명보험을 인가받은 회사는 “*”종목 영위가 가능함.
 2) 독일의 기타금융손실보험은 소득보상, 날씨보험, 보장손실, 기업휴지, 컨틴전시, 가치손실보
 험, 임차비손실보험 등이 해당됨.

다. 다양한 형태의 보험회사 진입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로써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험회사가 보험산업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여 위험의 전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가하는데 높은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처에서 공제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기관의 수입보험료는 2010년의 경우 15조 9,118억 원으로 민영보험시장의 11.8%나 되며(〈표 V-2〉참조), 공제기관의 수는 60여 개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까지만 해도 특수한 목적 하에서 만들어졌지만, 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보험업의 근간을 왜곡할 정도로 많은 수가 설립되었다.⁹¹⁾ 이는 보험업을 규율하는 보험업법이 이를 포괄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에서처럼 보험업법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진입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표 V-8〉 주요국과 국내의 보험회사 진입 형태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	일본
법적 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캡티브*	주식회사 상호회사 공영보험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특수 형태	-	금융보증, 상호교환보험회사, 공제, 보험교환소	공제	소액단기보험업 (공제)

주: *캡티브보험회사는 뉴욕주를 비롯한 버몬트, 하와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네바다, 켄터키, 아리조나, 델라웨어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91) 국내 공제기관의 수를 보면 1950년 이전에는 수협과 교육시설재난공제 2개만 존재했고, 1960년대에는 농협 등 4개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2개 공제만 신설되었다.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 8개 공제가 만들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9개 공제, 2000년대에는 23개의 공제가 만들어졌다. 즉 현재 60여 개 공제 중에서 1990년대 이후에 32개가 만들어진 것이다. 오영수(2011), p. 37.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그대로 두고 특수한 형태의 보험회사인 캡티브, 소규모 보험회사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캡티브보험회사⁹²⁾는 모그룹의 보험물건을 인수하기 위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동일한 위험의 경쟁을 통해 평균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상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기업의 창업이 용이하지만 보험업은 규모가 큰 회사와 적은 회사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어 소규모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제기관을 보험업법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보험가입 금액 1천만 엔 이하, 보험기간 2년 이내로 영업하는 보험회사로 진입규제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IV. 주요국의 진입퇴출규제 주요 내용 2. 일본 참조). 국내에서도 상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보험업법에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90년대에 증가한 공제기관을 흡수하여 전문화된 보험시장을 개척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정책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형과 지배구조를 갖는 보험회사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재는 단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중 하나의 보험회사만 가능한 2개의 사업모형(2×1)이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를 추가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캡티브의 법적형태에서 일반보험회사와 소규모 보험회사의 조합인 6개의 사업모형(3×2)이 가능하게 된다.

92) 뉴욕주의 경우 캡티브보험회사는 그룹캡티브, 순수캡티브가 가능하며 감독당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캡티브사 설립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모두 25만 달러 이상의 잉여금이 필요하며 주식회사는 이중 1만 달러는 자본금이어야 한다(뉴욕주 보험법 제70절 captive insurance company).

라. 진입허가 신청서류의 간소화

국내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업법과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진입허가서류로 정관,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방법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들고 있다(보험업법 제5조). 또한 시행령 제9조에서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6조의 허가요건인 자본금요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보험시장 진입허가서류를 주요국에서의 진입허가서류와 비교하는 경우 많은 차이가 있다. 2011년 이전 국내 진입허가서류의 내용은 현재의 일본의 경우와 유사했지만, 2011년 기초서류 중 종목별 사업방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는 미국 뉴욕주와 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보험업 진입 시 필요서류는 상법에서 정한 법인설립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험업법에서는 미국과 유럽처럼 진입허가 제출서류를 사업인가신청서나 정관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상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취급종목의 종목만 열거하고 종목별 사업방법서는 제외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9〉 진입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	일본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 • 정관,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포함) •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취급종목, 재보험, 최저보증기금자산구성, 3년 예상대차대조표) • 기초서류(사망, 대체형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신청서 • 전종목 기초서류
허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허가, 본허가로 구분('03년 도입) • 공고 필요, 공청회 	구분 없음	구분 없음	구분 없음
면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허가, 본허가로 나누어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판단기준 없음, 거부사유 존재	주주 및 구성원의 적격성 심사, ENT 금지	요건 및 서류에 대한 적합성 심사

마. 자본금요건의 완화 검토

국내의 납입자본금(기금)의 수준은 과거 자기자본규제와 적기시정조치가 없었던 때에 대주주의 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상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자본금요건은 건전성감독체제에 부합하지 못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 및 금융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못한 점이 존재한다. 먼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이미 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보험회사는 적정한 지급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태이므로, 사전적으로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여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국가 및 금융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2009년 5월에 상법 제329조제1항(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을 폐지하였고, 2012. 4. 15부터는 무액면주식의 발행⁹³⁾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인

93)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

회사의 설립도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추가하여 금융위의 정책 방향도 국가의 정책과 보조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자본금을 완화하고 진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발표⁹⁴⁾하였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과 금융정책의 발표 이후 진입절차의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진입규제의 큰 요건인 자본금요건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내의 자본금요건은 미국 뉴욕주, 독일(유럽), 일본과 비교하는 경우 자본금 수준, 회사형태, 회사규모별 차등적용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먼저 국내 필요 자본금 수준은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1,370배이지만 미국은 생명보험 143배, 손해보험은 380배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두 국민 1인당 총소득 대비 자본금 수준은 69배,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두 308배 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자본금 수준(생명보험)은 미국 뉴욕주의 9.6배, 독일의 19.8배, 일본의 4.5배 높은 수준이다.

둘째, 미국 뉴욕주와 독일의 경우 상호회사에 대한 기금요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많은 공제 등 유사보험이 보험산업 내로 들어오는 것을 힘들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최근 일본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구분 없이 동일한 자본금(기금)을 적용함으로 인해 공제조합이 신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고 자본금도 1/100 이하 수준으로 낮추었다.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94) 1. 진입퇴출규제개선 기본원칙 참조.

〈표 V-10〉 주요국의 자본금요건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유럽)	일본	
종목	11개 종목	31개 종목	25개 종목	손보, 생보	
요건	자본금, 기금	자본금, 기금, 공탁	최저보증기금	자본금, 기금	
법적 형태	주식 회사	최대 3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자본금 250만 달러, 잉여금 425만 달러 • 손보: 자본금 1,160만 달러, 잉여금 63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300만 유로 • 손보: 300만 유로 	10억 엔 이상
	상호 회사	주식회사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자본금 65만 달러, 잉여금 20만 달러 • 손보: 자본금 935만 달러, 잉여금 600만 달러 	주식회사의 1/4	10억 엔 이상
특수 형태	-	금융보증, 권원보험, 모기지보증, 캡티브, 교환보험회사	공제: 주식회사의 1/4	소액단기보험업: 0.1억 엔	
비 교	생보	1,371	143	69	308 (소액업 3.1)
	손보	1,371	380	69	308 (소액업 3.1)

주: 1) 각 국가별 자본금은 전 종목을 전부 취급한 것을 가정함.
 2) 비교 수치는 각 국가의 자본금을 2012년 1월 20일 환율적용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1인당 GNI로 나눈 것임(자본금/GNI).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의 자본금요건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에 대해 공정위는 91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신규진입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면서 과도한 자본금요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현재 필요 자본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⁹⁵⁾ 따라서 국내의 자본금 수준을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5) 공정거래위원회(2008), p. 65.

바. 허가요건의 객관화 추진

IAIS의 보험업 진입허가기준(ICP 4)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보험업 진입허가요건(보험업법 제6조)의 명확성을 평가하면 자본금요건과 대주주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요건과 인적·물적 요건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⁹⁶⁾는 규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량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재량적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의 경우 보험감독규정 제2-6조 제2항에서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지급여력 100% 이상 유지가능성, 자금조달 가능성,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어 재량적인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또는 체크항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어 인적·물적설비 요건도 투명성확보를 통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적요건(보험업법 제65조제1항제2호)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⁹⁷⁾고 되어있어 예전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었

96) 공정거래위원회(2008), p. 66.

97)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1.손해사정업무, 2.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보험금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

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물적요건으로 “사무실공간을 확보할 것(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으로 규정한 것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공간의 확보 관련 사항은 감독당국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은행법⁹⁸⁾처럼 사무실확보요건을 물적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에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처럼 정전이나 전산설비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관리의 보완설비 확충을 요구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3. 퇴출규제의 개선 시사점

가. 개선 동인

우리나라의 퇴출분야 기업활동용이도 순위는 2011년 기준으로 8위로 평가되고 있다(〈표 V-1〉 참조). 물론 이것이 보험시장에서의 퇴출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지만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보험시장의 퇴출은 IMF 구제금융 이후 경영의 부실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발적인 퇴출도 일어나고 있다. 자발적인 퇴출은 2003년에 알리안츠손해보험회사가 LIG손보에 전부계약이전을 하고 퇴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퇴출규제는 부실보험회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제도가 마련되

한 업무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98)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출에 대해서는 전 금융산업을 포괄하여 적용하는 금융산업구조조정법이 운영되고 있고, 예금자보호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퇴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보다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퇴출규제를 IAIS의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계약이전과 규정의 명확성 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표 V-11〉 참조).

〈표 V-11〉 ICP 퇴출규제 기준과 비교

퇴출규제의 ICP 표준내용		한국	비 고
계약이전	전부 또는 일부이전 인가 계약자보호여부 확인	전부이전만 가능	일부이전 가능토록 보완
적기시정 조치	예방적, 보정적 조치 권한확보 (비인가사업자 포함)	존재함	-
	집행권한 확보: 사업제한, 재무보강, 계약이전과 면허취소	존재함	-
청산	청산 및 퇴출절차를 법규에 명확히 규정	규정 존재하지만 혼란	퇴출절차별로 구분하여 규정
	보험사업 불가능시점 법규명시	금산법 명시	-

나. 계약이전조건 명확화 필요

자발적인 퇴출이나 비자발적인 퇴출 시 보험계약의 이전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 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140조). 그러나 IMF 구제금융 이후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전 방식으로 상당부분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고금리계약의 부담은 인수한 보험회사에게 전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부실생명보험회사 등이 파산처리 시 예정이율 등 보험조건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III-17〉 참조).

보험계약의 이전은 전부이전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계약의 이전은 부실회사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종목을 중단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과 미국처럼 보험계약의 일부이전과 전부이전을 모두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부이전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보험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가 일부사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종목의 보유계약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부실회사가 관리를 계속하여 전체 사업의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전한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 등을 감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보험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 관련 영업을 중단하고 보유계약을 타사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140조의 계약이전을 전부 또는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실보험회사의 파산처리 시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예금보험금 지급액을 경감하고 보험계약자들의 시장규율이 작동되어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보험회사의 재산처분 순서 마련

보험회사의 퇴출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산배분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구분하여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적립된 금액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선하여 자산을 취득하고(법 제32조), 예탁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가진다(법 제33조). 그리고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다른 채권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뉴욕주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로 구분하여 재산배분순서를 제시하고 있다(보험법 제7434조, 제7435조). 손해보험회사(property & casualty insurer)의 자산배분우선순위 중 1순위(class 1)는 갹생 및 청산, 자산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 비용, 2순위는 연방 및 주정부 지방정부 채권, 제3자 보험금청구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기금관련비용이며, 3순위는 2순위에서 제외된 연방정부의 청구권이고, 4순위는 개인당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임금, 5순위는 주 및 지방정부의 2등급 이외의 청구권, 6순위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적인 채권, 7순위는 8순위와 9순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 8순위 후순위채권, 9순위 주주이다. 이에 생명보험은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⁹⁹⁾

국내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5,000만 원을 보호받고 있으나 향후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파산과 청산 시에 보유계약 채권액의 회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같은 재산배분 우선순서를 청산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퇴출관련 법규의 투명성 확보

보험업의 퇴출과 관련된 법규는 상법과 보험업법, 금산법으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각기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보험회사 운영의 근거법인 보험업법은 퇴출과 관련한 규정을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범주에는 보험회사의 일부 업무범위의 퇴출에서부터 전

99) 뉴욕주 생명보험회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class 1)는 갹생 및 청산, 자산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 비용 및 보증기구비용, 2순위는 개인당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임금, 3순위는 지급불능으로 확정된 이후 90일 이전의 통상의 업무과정동안 공급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 4순위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기금적립협정계약의 청구권 및 보증기구의 모든 청구권, 5순위는 연방 및 지방정부에 벌금, 몰수권 등, 6순위는 일반채권자 청구권, 7순위는 후순위채권, 8순위는 주주(법 제7435조).

체의 퇴출에 이르는 규정이 포함된다. 현재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보면 제8장에서 해산과 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퇴출과 전부퇴출을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 독일은 기존 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이나 영업양도, 자산위탁 등과 같은 퇴출에 해당하는 부분,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와 규제, 보험회사의 청산으로 나누어 부문별 절차와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사업양도·업무와 재산관리의 위탁(보험업법 제7장), 해산·합병·분할·청산(보험업법 제8장)으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합병·자산취득·주식취득(71절), 재건·청산·보전·해산(74절)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계약이전과 자산과 업무의 양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편에서 규정하고, 회사의 감독편에서 청산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차기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경우 국내의 퇴출관련 규정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현재의 보험업법 제8장을 계약이전, 사업양도, 합병에 대해 8.1장으로 규정하고 해산과 청산을 8.2장으로 기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규제는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제도적 측면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 보험종목별 진입 허용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모형, 틈새시장에 특화된 전문화된 단종보험회사(mono-line insurer)의 시장진입이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은 경쟁도가 증가하여 온라인채널에 따른 보험료 감소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은 개선되고 시장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권원보험이나 법률비용보험회사 등의 파급은 거의 미미하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 간 특정 보험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증가하였지만 시장전체의 경쟁도를 측정하여 보면 여전히 독점적 구조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의 시장행동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공정위로부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독과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진입규제와 가격 및 상품규제가 동시에 완화됨에 따라 경쟁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익성도 다른 금융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었지만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과점적 구조의 변화가 없었고, 시장행동에서 경쟁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격과 상품 측면에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자본금요건 등이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2008년 진입규제의 개선안으로 진입은 용이하게 하고 퇴출은 신속하게 하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규제와 퇴출규제는 부실보험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이후 정비되거나 논의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보험감독체제인 리스크중심감독에도 접목되지 못하는 진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 진입규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최근 상법개정을 반영하여 국가정책과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며,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제고함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 우선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종목의 구분 등 관련법규를 명확히 하고, 주요국에서는 캡티브나 공제, 상호교환보험회사 등 다양한 보험회사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마련하며, 종목별 사업방법서 등을 제외하여 진입서류를 간소화하며, 자본금요건은 국내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퇴출규제는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IMF 구제금융 이후 많은 부실보험회사가 정리되면서 비교적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도적 정비가 되지 못해 관련 법규가 혼재되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퇴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계약이전, 사업양도, 합병과 인수, 청산과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험계약이전의 경우, 현재는 전부이전만 허용되나 파산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도 일부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는 보험종목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여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일부이전은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퇴출보험회사의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출보험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의 처분순서를 청산부분에서 미국 뉴욕주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12), 『IAIS 보험핵심원칙 I』, 금융인쇄공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김동희(2008), 『보험시장 진입규제에 관한 법적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덕·한유선(2007), 「외국 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산업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 김재홍(2002),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 김준경 외(2004), 『금융통합화시대의 금융규제·감독선진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김현수(2006), 『보험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소.
- 류근옥(1999), 「합병·인수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및 부실정리와 이에 따른 회사의 효율성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관리연구』, 제11권 제2호.
- 박종복(2010),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 법무부 보도자료(2009),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도입, 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 보험개발원(각 연호), 『보험통계연감』.
- 오영수 외 2인(20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보험연구원(각 월호), 『보험동향』.
- 성대규(2004), 『한국보험업법』.
- 오영수(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방안』, 보험연구원.
- 윤창현(2008),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완화의 효과 및 문제점」, 제2회 규제개혁포럼.
- 이기형(2011), 「한·미 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제158호.
- _____(2012),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제178호.
- 이성남·김건(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 이순재(2011),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전후의 손해보험산업 시장구조 및 경쟁도 변화분석」, 『보험학회지』, 제88집.
- 정보름(2008), 『손해보험산업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 최정표(2003), 『산업조직경제학』, 서울: 형설출판사.
- 한병덕(2009), 「시장진입장벽의 발생원인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9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http://www.insis.or.kr>).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http://www.klia.or.kr>).
- 金融庁(각 연도), 『金融庁の1年平成21事務年度版』(<http://www.fsa.go.jp>).
-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2006), 『EU 保険關係指令の現状』.
- 松澤登(2010), “生命保險會社の國際破たんの檢討”, 『保險學雜誌』.
- 杉下智子(2010), “生命保險會社の更生手續と保護機構による契約者保護—大和生命の事例と保護機構による承繼等”, 『生命保險論集』(Vol.171).
- AXCO(2011), “Insurance Market Information: Life &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
- _____(2011), *Global Statistic*, SNL Financial.
- Barros, Pedro Pita(1994), “Entry Liberalization and Market Conduct in Insurance”, Universidade Nova de Lisboa.
- _____(1995), “Conduct Effects of Gradual Entry Liberalization in Insurance”,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8: pp. 45~60.
- Carlton and Perloff(2005),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Pearson.
- Cooke, John A and Harold D. Skipper(2008), “An Evaluation Final Report on

- the Sector Inquiry into Business Insurance in the territory of the EFTA States”.
- Doron Ziv-Av(2006), “Competition versus Regulation In the Insurance Market: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Policy and Institutes”, University of Hamburg.
- EFTA Surveillance Authority(July 2008), “Final Report on the Sector Inquiry into Business Insurance in the territory of the EFTA States”.
- GDV(2011), *Statistical Yearbook of German Insurance 2011*.
- Grace, Martin F. et al.(2002), “Managing the Cost of Property-Casualty Insurer Insolvencies in the U.S.”, Georgia State University.
- Hammond, J.D. and Arnold F. Shapiro(1985), “An Evaluation Final Report on the Sector Inquiry into Business Insurance in the territory of the EFTA States”.
- IAIS(2007), “Report on Insurance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IAIS Member Jurisdictions”.
- Jedlicka, L. and Jumah, A.(2006), “The Austrian Insurance Industry: A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Analysis”, *Economic Series* No.189,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 McAfee, R. Preston, and Mialon, Hugo M. and Williams Michael A.(2003), “Economic and Antitrust Barriers to Entry”,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OECD(2008),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99-2008*.
- _____(2010),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 Tyler, Ralph S.(2009), “Regulatory Restructuring: Enhancing Consumer Financial Products Regulation.”, NAIC.
- Vollbrecht, Jorg(2000),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OECD Countries”, OECD.
- World Bank(2008-2011), *Doing Business*.

Yu, Lei and Browne Mark J. (2009),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Market Entry and Exit: 1994-2006”,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Directive 2001/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01 on the reorganization and winding-up of insurance undertakings.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http://www.naic.org/industry_ucaa.htm)

<http://www.doingbusiness.org>

부 록

1.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변천 추이

구분	개정일	개정 내용
보험업법 제정	1962.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은 재경부장관의 면허 필요 • 자본금 또는 기금의 총액 5억 환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서 그 1/2 이상을 납입해야 보험사업 가능
제1차 개정	1962.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자본금이 5억 환에서 생명보험 5천만 원, 손해보험 1억 원으로 조정
제2차 개정	1971.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보험을 보험사업 범위에 포함 • 최저자본금을 인보험 2억 원, 손해보험 3억 원 이상으로 조정 • 인보험 사업자는 인보험의 재보험, 손해보험사업자는 상해보험 영위가능
제3차 개정	197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보험모집단속법, 대한재보험공사법을 통폐합 • 인보험사업자와 손해보험사업자의 겸영범위 확대, 재경부장관이 보험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보험 추가
제4차 개정	198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자의 증자를 제한
제5차 개정	198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자본금을 인보험 100억 원, 손해보험 300억 원으로 상향조정 • 보험사업의 조건부허가, 제한적 허가제도 도입 •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이와 특수 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업자 주주제한 근거 마련 • 보험사업기금제도 폐지 및 보험보증기금제도 도입 • 한국보험공사는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제7차 개정	1995.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사무소 설치 시 허가제도 도입 • 무허가영업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 •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 이전, 폐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생명보험지급여력제도 도입
제8차 개정	1997.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을 인보험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인상 • 신설보험회사의 설립비용 및 초기사업비의 이연상각을 제한 •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제한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집단 또는 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업자 주주 제한제도 2003년 3월까지 적용 • 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재경원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업무 영위가능 근거 마련
제9차 개정	1997.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
제11차 개정	1998.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증기금제도의 관리운영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 • 사업영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재경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사업의 일부정지명령권 및 재경원장관에 허가취소요청권 부여 •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은 재경원장관의 인가, 일부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제14차 개정	1999.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주재사무소 설치시 허가제 폐지 • 재경부장관의 자본금 증액, 증액제한명령권 삭제 • 임원의 자격기준제 폐지 •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의 사업폐지 또는 해산 시 신고, 신고 후 사업허가의 당연효력상실 조항 삭제
제16차 개정	1999.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제17차 개정	2000.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 허가요건 등 허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제5조의 3 신설) • 보험사업 중 일부만을 영위 시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제도 도입(제6조제1항)
제19차 개정 (전문개정)	2003.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2/3으로 인하(제9조제2항)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 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제127조, 제128조)
제20차 개정 (일부개정)	2010.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허가요건 중 인적 물적 요건의 아웃소싱 허용
시행령개정	2011.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허가요건 중 기초서류를 종목별 사업방법서로 제한(시행령 제9조)

자료: 성대규(2004), 『한국보험업법』.

2. IAIS 보험핵심원칙(진입 및 퇴출)

가. 진입규제(ICP 4. Licensing)

보험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법인은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교부 요건 및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되어 있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면허 요건

4.1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지역은 어떤 사업체가 관할 지역에서 보험사업 실시를 인정하는 면허교부를 통해 관리한다.

4.2 보험 법령은

- 면허 교부가 필요한 규제대상인 보험사업의 정의를 포함하고
- 승인되지 않은 보험 사업을 금지하고
- 국내 보험 회사에 허용되는 법적 형태를 결정하고
- 면허를 발행하는 책임을 할당하고
- 외국 보험회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 및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4.3 다음과 같은 면허교부 요건 및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신청자의 이사회 멤버, 고위 관리자, 주요 주주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핵심경영자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합체로써 적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신청자가 자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신청자가 건전한 기업 또는 그룹 구조 및 효과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는 지배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신청자가 건전한 사업계획 및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감독자에 대한 요건

- 4.4 보험회사가 외국의 관할구역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국가의 관련 감독자는 면허발급 전에 해당국가의 감독관과 협의한다.
- 4.5 보험자가 진출할 국가의 감독자의 관할지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국경 간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할 국가의 관련 감독자는 그런 사업을 인가하기 전에 자국의 감독관과 협의한다.
- 4.6 감독자는 명확하게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 4.7 신청자가 면허교부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감독자는 면허를 발급을 거부한다.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 조건 또는 제약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 4.8 면허가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4.9 면허에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주주 등의 적격성(ICP 5. Suitability of Persons)

감독자는 보험자의 이사회 멤버, 고위 관리, 통제 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 주주(보험자의 주요 보유자)가 각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 5.1 법령은 적격성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2 감독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관리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가 적격이기 위하여,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정통성(integrity)이 있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주요 주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 건전성 및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 요구된다.
- 5.3 감독자는 처음과 그 이후의 감독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 경영자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주주의 적격성이 있다는 것을 보험자에게 요구한다. 적격성요건 및 필요한 심사 범위는 개인의 직무 및 책무에 따라 다르다.

5.4 감독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경영자,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 경영자 및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 또한 이사회 멤버, 고위경영자,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주주의 자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에게 통지할 것을 보험자에게 요구한다.

5.5 감독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경영자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또는 주요주주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6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이사회 멤버, 고위경영자,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주주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내외의 다른 기관과 정보를 교환한다.

다. 계약이전(ICP 6. Changes in Control and Portfolio transfer)

보험자의 중요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사람(법인 혹은 자연인)이 단독 또는 다른 관계자와 공동으로 직·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관련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이전 또는 보험회사의 합병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주요 소유자와 통제

6.1 보험자에 관련된 “지배권”은 법령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보험자나 중간 또는 최종 소유자의 발행 주식 또는 금융상품(강제전환 사채 등)에 대해 일정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량 또는 비율을 소유하는 것

- 전술의 주식 또는 금융상품에 부수하는 의결권
 - 이사회 및 기타 집행위원회의 이사 임명권 또는 해임권
- 6.2 감독자는 보험자 대해 일체의 지배권취득 또는 변경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감독자는 단독 또는 다른 관계자와 공동으로 직·간접을 불문하고 보험자에게 관련된 중요한 소유권 또는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법인 혹은 자연인)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6.3 감독자는 해당사람(법인 혹은 자연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한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설정된 지배수준을 넘는 중요한 증가에 대해 인가한다. 이것은 해당 보험회사 또는 그 중간 또는 최종소유자의 기타지분에도 적용된다. 미리 설정된 일정한 지배수준을 밑도는 중요한 감소가 생긴 경우 감독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한다.
- 6.4 위 기준 6.2 및 6.3에서 정한 요건은 보험회사의 중간 또는 최종소유자가 당해 보험회사의 설립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지배권의 취득 또는 변경에 적용된다. 이 경우 감독자는 그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인에 대한 감독자와 협력한다.
- 6.5 감독자는 지배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새로운 면허교부를 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6.6 감독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자의 주주, 기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일체의 사람에 대해 적절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 6.7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려고 예정소유자가 소유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손상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득신청을 기각한다. 감독자는 의도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6.8 보험회사의 지배권의 취득 또는 변경계획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감독자는 재정 및 금융 이외의 자원에 관한 요건을 설정한다.
- 6.9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변경은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감독자는 허가하기 전에 해당회사의 새로운 정관 또는 조직의 지배 구조에 관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포트폴리오 이전

6.10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은 특히 양수인 및 양도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감독자는 양수인 및 양도인 양자의 보험 계약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확인한다.

라. 퇴출규제(ICP 12. Winding-up and Exit from the Market Licensing)

법령은 보험 법인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련의 선택사항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은 경영파산을 정의하고 보험법인의 경영파산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보험법인의 청산절차의 경우 법적 구조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제공이 적시에 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12.1 보험자의 청산과 시장에서 철수 절차는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자격보호 우선권은 상위에 규정된다. 철수절차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의 적시 제공이 두절되는 것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12.2 법령은 보험자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를 규정해야 한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겨형, 정인영 2012. 8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 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 | |
|-----|--|
| 31호 |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 32호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 33호 |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저자약력

이 기 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정책실 실장)
(E-mail : kihlee@kiri.or.kr)

변 혜 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w.byun@kiri.or.kr)

정 인 영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essence4u@kiri.or.kr)

정책보고서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2년 9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 및
인쇄 KM 고려문화사

ISBN 978-89-5710-150-6

정가 10,000원